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변경 실시 협약

2016. 1. 14.

서울특별시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 〈 목 차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1
제 2 조 (정의) .....	1

##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1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	11
제 5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11
제 6 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	12
제 7 조 (출자자 등의 변경) .....	12
제 8 조 삭제 .....	12

## 제 3 장 실시절차

제 9 조 (협약의 효력) .....	12
제 10 조 삭제 .....	13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	13
제 12 조 (행정절차의 추진) .....	13

## 제 4 장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3 조 (총민간사업비) .....	13
제 14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13

##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5 조 (보상업무 및 비용처리) .....	15
제 16 조 (공사기간) .....	15
제 17 조 (공사의 착수) .....	15

제 18 조 (공정의 관리 및 보고) .....	16
제 19 조 (사업이행보증) .....	16
제 20 조 (이행지체) .....	16
제 21 조 (보험가입) .....	17
제 22 조 (공사의 도급) .....	17
제 23 조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 .....	18
제 24 조 (공사의 민원처리) .....	18
제 25 조 (안전관리) .....	18
제 26 조 (설계감리 및 공사책임감리) .....	18
제 28 조 (공사표지 등의 설치) .....	19
제 28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	19
제 29 조 (준공확인) .....	19

##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0 조 (운영기간) .....	20
제 31 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 확보) .....	21
제 32 조 (교통관리체계의 운영) .....	21
제 33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22
제 34 조 (운영비용) .....	22
제 35 조 (기타 수익성 사업) .....	23

## 제 7 장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제 36 조 (무상사용기간) .....	23
제 37 조 (추정통행량) .....	23
제 38 조 (통행료의 징수) .....	24
제 39 조 삭제 .....	24
제 40 조 (사업수익률) .....	24
제 41 조 (통행료의 산정) .....	24
제 42 조 삭제 .....	25

제 43 조 (통행료 수입보장금의 처리) .....	25
제 43 조의2 (사업수입의 처분) .....	26

## 제 8 장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 등

제 44 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 .....	27
제 45 조 (행정지원) .....	29

## 제 9 장 위험의 배분

제 46 조 (위험의 배분) .....	30
제 47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31
제 48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32
제 49 조 (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	33
제 50 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통지) .....	35
제 51 조 (불가항력 사유의 대책협의) .....	35

## 제 10 장 본 협약의 종료

제 52 조 (협약 종료의 일반적 사유 및 그 효과) .....	35
제 53 조 (협약 중도해지의 사유) .....	36
제 54 조 (매수청구권) .....	38
제 55 조 (협약 종료시의 효과) .....	38
제 56 조 (해지시 지급금) .....	38
제 57 조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	39

## 제 11 장 분쟁의 해결

제 58 조 (분쟁의 해결) .....	40
-----------------------	----

## 제 12 장 비밀유지

제 59 조 (비밀유지) .....	40
---------------------	----

## 제 13 장 기 타

제 60 조 (자금의 차입) .....	41
제 60 조의2 삭제 .....	41
제 61 조 (협약 변경의 통지) .....	42
제 62 조 (행정처분의 통지) .....	42
제 63 조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거당권 설정) .....	42
제 64 조 (기타 서울특별시의 협조) .....	42
제 65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	42
제 66 조 (협약의 변경) .....	43
제 66 조의2 (변경실시협약의 효력) .....	43
제 67 조 (문서의 우선순위) .....	43
제 68 조 (권리의무의 귀속) .....	44
제 69 조 (권리의무의 양도) .....	44
제 70 조 (경과조치) .....	45
제 71 조 (서면통지) .....	45

## 〈 부 록 〉

부록 I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내역 .....	47
부록 II 추정통행량 .....	48
부록 III (삭제) .....	49
부록 IV 추정통행료수입 .....	50
부록 V (삭제) .....	51
부록 VI 출자자 및 지분율 .....	52
부록 VII (삭제) .....	53
부록 VIII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 .....	54
부록 IX 해지시지급금 .....	55

# 변경실시협약

서울특별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구 우면산개발주식회사)는,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따라 1998년 5월 19일 당초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8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99년 3월 31일 전문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1999년 7월 9일 고시된 '99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2003년 4월 1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협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2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2008년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18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재구조화에 합의하여 변경실시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4일 다음과 같이 변경 협약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① 본 협약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우면산터널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협약 제14조 제3항 등에 의거하여 그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구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9번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418번지
  2. 연장 : 2,960m
  3. 본선 차로수 : 왕복 4차로

### 제 2 조 (정의)

- 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민간투자법에 따른다.
  1. 감리자 : 본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와 공사책임감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선

정하고 사업시행자와 설계감리 및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감리전문회사를 의미한다.

2.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를 의미한다.
3. 건설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6369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611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한다.
6. 공사기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최초 공사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도로 전체에 대한 최종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7. 공사도급계약 : 당초 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간에 체결된 본 도로와 관련한 공사를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8. 공사비 :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기존실시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본 사업 건설을 위한 도로공사비, 교통부속시설 및 도로부대시설 공사비를 의미한다.
9.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도로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본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본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의미한다.
10. 교통부속시설 : 본 도로에 설치되는 과적차량단속시설, 도로표지판 등 안내시설, 교통안전시설, 무인전화시설 등 본 도로의 운영 및 그 기능발휘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보조기능을 갖는 시설을 의미한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1202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 11-1. 기존실시협약 : 당초 협약, 2003년 4월 18일 실시협약, 2005년 3월 2일 변경실시협약과 2008년 12월 18일 변경실시협약을 의미한다.



## 12. 삭제

12-1. 누적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어느 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부록 VIII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서 기재된 각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13. 당초 협약 : 1998년 5월 19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촉진법령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우면산터널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의미한다.

## 14. 삭제

15.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나 연기금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16. 도로공사비 : 본 사업 중 본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비 가운데 교통부속시설 및 도로부대시설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의미한다.

17. 도로부대시설 : 본 도로에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명, 전기, 터널설비 및 광통신관로 등 본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18.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 본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 중 관리소 및 영업소 공사비, 전기시설 공사비, 광통신로 공사비 등 부대시설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19.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0. 물가변동비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시점부터 준공시까지의 물가가 변동되어 생기는 사업비의 변경분을 의미한다.

21. 물량변동비 : 실시설계 완료 후 준공시까지 제14조에 규정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물량이 변동되어 생기는 사업비의 변경분을 의미한다.

22. 삭제

23.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12248호(2014.1.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한다.

24.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358호(2014.5.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2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공고하는 당해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한다.

26.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의미한다.

27.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419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을 의미한다.

28. 본 도로 :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도로부대시설 및 교통부속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9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418번지 구간까지의 터널본선 및 그 연결도로로 구성되는 총연장 2,960m의 도로시설을 의미한다.

29. 본 도로 부지 : 본 도로의 통과지역으로서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의미한다.

30.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특정된 본 도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한다.

31. 본 협약 : 본 변경실시협약을 의미한다.

32. 본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32-1. 분기 : 1년을 3개월 단위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1분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일이 속하는 분기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로 하며, 본 협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는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본 협약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3. 불가항력 : 본 협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본 협약 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본 협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본 협약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본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 및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의미한다.

34.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 1997.12.8.자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의미한다.

35.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5-1 사업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본 협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본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6. 사업수익률 :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통행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36-1. 사업수입 : 본 협약 체결일 이후 통행료수입,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수익성 사업으로 수령한 수입,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 기타 사업시행자가 수령한 모든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의미하며, 다음의 금액을 제외하며, 처분가능사업수입과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으로 구분된다. 단, 제41조(통행료의 산정) 제3항, 제45조(행정지원)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에 반환한 금액(당해 금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이자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을 사업수입에서 공제한다.

가. 본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서울특별시에 이전되어야 하거나 소멸되어야 하는 자산(관리운영권 포함)을 제외하고, 본 협약 체결일의 직전일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자산(본 협약 체결일 직전일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채권으로 본 협약 체결일 이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채권을 포함)으로서 본 협약 체결일 이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확인 받은 자산

나. 위 가목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손익

다. 처분가능사업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손익

라. 제34조(운영비용) 제2항, 제45조(행정지원) 제2항과 제49조(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금액

마. 제44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자금제공금액으로서 법인세와 차입승인 대상채무의 이자 및 수수료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

바. 제41조(통행료의 산정) 제2항, 제45조(행정지원) 제5항과 제49조(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4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금액

37.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우면산인프라웨어주식회사를 의미한다.

38.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민국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한다.

39. 서울특별시 : 본 협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의미한다.

39-1. 삭제

4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의 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41. 소비자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본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 41-1. 수입보장금: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발생한 수입보장금을 의미한다.
- 42.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 4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대한민국 법률 제12254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의미한다.
- 44. 시설사업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259호(1997.8.11.)에 의한 우면산터널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한다.
- 45.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당초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1999. 6. 19.자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한다.
- 46. 예비비 : 물가변동비를 의미한다.
- 46-1.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 : 부록 VIII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서 기재된 본 협약 체결일 이후 각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을 의미하되, 본 협약에 따라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이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이후 잔존 금액을 의미한다.
- 47.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 : 민자유치촉진법, 동법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본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법인으로서 당초협약에 의거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 48.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본 사업 전구간에 대한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실제로 본 도로 전구간을 개통하고 통행료의 징수 등 그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한다.
- 49. 운영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도로와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 49-1. 삭제

50.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1. 자금차입계약(들) :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0조(자금의 차입)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51-1. 자금재조달 : 자금차입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1-2. 자금제공금액 : 서울특별시가 본 협약 제44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51의3. 삭제

#### 52. 삭제

53. 전문기관 : 대한민국에서 재무타당성, 회계자문, 기업가치평가, 금융자문 등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수시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54. 제반공급시설 : 본 도로 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관, 송수관, 송유관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의미한다.

55. 제세공과금 : 본 도로 및 그 부대시설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56.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의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57. 준공전 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으로부터 본 도로에 대한 준공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본 도로의 사용을 위한 인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 57-1. 차입승인대상채무 :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원리금, 수수료 기타 채무 중 서울특별시가 제60조(자금의 차입) 제3항에 따른 자금차입계약 승인시 차입승인대상채무로 지정한 채무의 원리금,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 57-2. 처분가능사업수입 :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어느 분기의 사업수입 중 당해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며, 제43조의2(사업수입의 처분) 제2항에 따라 다른 분기에 수령한 사업수입으로서 당해 분기의 사업수입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57-3.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 :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어느 분기의 사업수입 중 예정 처분가능사업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제43조의2(사업수입의 처분) 제2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수령한 사업수입이 다른 분기의 사업수입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제34조(운영비용) 제2항, 제45조(행정지원) 제2항 또는 제49조(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서울특별시가 제공할 자금이 아닌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으로 충당된 경우 동 금액만큼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8.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본 도로의 완공을 위한 사업비에 서울특별시에 상환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의미한다.
59.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에 건설기간 중 이자와 예비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60. 삭제
61. 삭제
62. 추정통행량 : 부록II에서 명시한 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연차별 총량을 의미한다.

63. 추정통행료수입 : 부록Ⅳ에 명시된 각 사업연도 동안 통행료 징수로 얻을 추정 수입을 의미한다.

64.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자들을 의미한다.

65.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 상의 사용료로서의 통행료를 의미한다.

65의2. 삭제

66. 통행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67. 회사채유통수익률 : 본 협약에 따른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이고, 잔존 만기가 3년인 공모 무보증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되며, 후자에 있어서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된다.

② 본 협약에서 명시된 모든 계약, 협약 및 서류들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에서 명시된 모든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은 본 협약 체결일 이후 그의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

③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자, 대주단자금차입계약상 채권자, 사업시행자, 시공사, 서울특별시장, 우면산인프라웨어주식회사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본 협약 당사자 및 제3자 등은 그의 적법한 승계인(상호 변경의 경우를 포함)을 포함한다.

## 제 2 장 기본약정



###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과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운영개시일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부여하여 본 협약에서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 ①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3조에서 규정한 관리운영권에 의거하여 본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설정·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제1호에 규정된 본 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본 도로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의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무상사용
  4. 관리운영권에 의한 본 도로의 유지·보수, 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
- ② 본 협약,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제 5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 ① 본 도로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 ② 사업시행자의 본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제30조에서 정한 본 도로의 운영기간 및 제36조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소멸된다.

## 제 7 조 (출자자 등의 변경)

- ① 본 협약 체결이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전체출자 지분중 5%이상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및 당해 출자자는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의하여 출자자 또는 출자자가 가지는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변경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출자지분 중 5%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록 VI (출자자 및 지분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출자자와 출자지분이 변경함을 승인한다.

## 제 8 조 삭제

# 제 3 장 실시절차

## 제 9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0 조 삭제

##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대주단의 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2 조 (행정절차의 추진)

- ①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②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서울특별시의 인·허가 및 승인신청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추진하되, 서울특별시는 그 인·허가나 승인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제 4 장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 제 13 조 (총민간사업비)

총민간사업비는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1997.8.11.) 불변가격 기준 금 1,401.8억원으로 한다.

## 제 14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를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제3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본 협약에 규정된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②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실시계획 승인 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단가작성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1997.8.11.)로 하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④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의 제·개정, 정부나 서울특별시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제세공과금의 부과 등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의 변경내용, 부과된 제세공과금의 액수 등 그 변경집행 내역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사업비 중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⑥ 총민간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익 또는 손실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제공금액 지급과 병행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해당사유를 해소가 가능한지를 병행 검토하여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 제 15 조 (보상업무 및 비용처리)

- ① 서울특별시가 기투자한 보상비 87.25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상환의무는 본 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기존실시협약에 따른 수입보장금에서 위 금액만큼과 상계되어 본 협약 체결일에 소멸된다.
- ②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영업소 및 관리사무소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 용지 매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한다.
- ③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의 매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지장물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 등은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기로 한다.
- ④ 제14조 제3항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용지매입이 불가피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담 하에 용지매입업무 및 용지매입보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 제 16 조 (공사기간)

- ① 본 도로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50개월로 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그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유,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기타 민원 등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17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도로 공사를 착수하여 실시계획 및 기존실시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도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및 보상지연이나 설계변경 등 공사의 착수를 연기하여야 할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착수일을 결정한다.

- ② 착공계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 착수일 전까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본 도로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2항의 착공계와 함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8 조 (공정의 관리 및 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감리자가 확인한 본 도로 공사의 전체 공정과 당해 사업년도 예정공정표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기존실시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기존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대보증서 또는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서울특별시장이 기존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 제 20 조 (이행지체)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기존실시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도로의 준공기일(기존실시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

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기를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준공하여야 할 시기의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시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를 포함한 금액에서 위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체상금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6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지체상금은 연장된 공사기한 이후부터 산정한다.
- ③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기타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은 이행지체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 기타 손해는 총민간사업비 산정에 반영하여 최초통행료 산정 시에 반영한다.
- ④ 제1항의 지체상금이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를 포함한 금액의 10%를 초과하고,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 21 조 (보험가입)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 22 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자자들을 시공자로 하여 공동도급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가 있는 후 15일 이내에 이를 승인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도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

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성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불노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 23 조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 제 24 조 (공사의 민원처리)

- ① 본 도로의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일체의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책임 하에 직접 또는 유관부처와 협조를 거쳐 적기에 처리한다.

### 제 25 조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장은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26 조 (설계감리 및 공사책임감리)

- ①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와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설계감리와 공사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②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민간투자법 및 기존실시협약에 따른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③ 서울특별시장은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거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매분기별 감리비를 지급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도급자로 하여금 설계감리 및 공사책임감리와 관련된 기존실시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감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와 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7 조 (공사표지 등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공사안내 표지판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본 도로의 공사와 관련하여 입간판 및 표지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 28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본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할 제반공급시설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하되, 수요자와 사업시행자간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 29 조 (준공확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6개월 전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준공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리자의 예비준공검사를 거친 후 본 도로의 준공 3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의 예비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예비준공확인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동 미비사항을 완결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완공 후 감리자가 확인한 본 도로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준공확인필증 교부 이전에 본 도로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준공하는 경우에도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기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후 본 사업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운영개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권의 설정 및 운영개시일, 최초 통행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 규정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도로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 6 장 관 리 · 운 영 에 관 한 사 항

### 제 30 조 (운영기간)

운영기간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제36조의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관리운영권을 보유한다.

### 제 31 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 확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 운영개시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도 말까지 다음 사업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3자에게 동 유지·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고, 제3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계약의 주요조건 등을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주요시설물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에게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사업시행자의 운영비용에 포함하여 처분가능사업수입으로 지급한다.

### 제 32 조 (교통관리체계의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입체적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순찰차량 등의 지원을 서울특별시의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도로의 교통관리체계를 서울특별시 도로와 연계시킬 수 있으며, 이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의 부담으로 한다.

### 제 33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①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본 도로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은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기관에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 34 조 (운영비용)

- ① 운영비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1997.8.11.) 불변가격 기준 금 1,345.6억원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이 소요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제44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 제2항 및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으로 당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할 수 있다.
  - 1.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의 요구사항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나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 2. 본 도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책임으로 귀속될 민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증가한 경우 그 금액
  - 3.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나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제49조(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와 그 처리)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금액
  - 4.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 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 ③ 운영기간 중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의2. 삭제

- ④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회계감사비 및 제31조 제3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비 및 긴급유지보수비는 처분가능사업수입에서 충당된다.
- ⑤ 사업시행자는 효율성과 창의성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본 도로를 관리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처분가능사업수입으로 지출하되, 실제 운영비용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로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 제 35 조 (기타 수익성 사업)

사업시행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무상사용기간 중 본 도로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7 장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 제 36 조 (무상사용기간)

- ①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으로서, 민간투자법 등 관련규정과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한다.
- ② 본 도로의 조기준공 시에는 준공확인을 거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고 운영개시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준공예정일까지 본 도로 사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은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본 도로의 조기운영이 가능하게 될 경우, 그 통행료는 제41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최초통행료 수준으로 운영토록 한다.

### 제 37 조 (추정통행량)

기존실시협약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 및 통행료 산정 시 적용된 본 도로의 통행량 및 통

행료수입은 본 협약 부록II로 첨부한 연도별 추정통행량 및 본 협약 부록IV로 첨부한 추정통행료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제 38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통행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간에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 제 39 조 삭제

### 제 40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2011.1.3. 체결한 합의서의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한 8.14%로 한다.

### 제 41 조 (통행료의 산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하며, 본 협약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행료를 조정하지 아니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법령(서울특별시의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할인통행료, 특정대상에 대한 통행료감면, 통행료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서울특별시가 요구한 통행료의 할인, 감면이나 조정 등을 시행한 이후에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 및 그 이후 매 분기의 실제 사업수입이 해당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해당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절차는 제44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 제2항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가 위 금액의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해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

는 날까지 (가)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 대상채무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에 연일퍼센트(1%)를 더한 비율로, (나)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 대상채무 이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로 일할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가) 통행료의 할인, 감면이나 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감소된 사업수입의 금액이 (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금액보다 작음을 입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통행료의 할인, 감면이나 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감소된 사업수입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구체적인 계산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금액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날부터 위 반환기일까지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본 항에 따른 금액의 반환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한 금액에 대해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서울특별시에 실제 반환하는 날까지 (가)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에 연일퍼센트(1%)를 더한 비율로, (나)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 이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로 일할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어느 분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청구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분기에 지급 받은 금액은 당해 분기의 실제 사업수입 계산시 제외하되, 제43조의2(사업수입의 처분) 제2항에 따른 실제 사업수입의 산정이나 제43조의2(사업수입의 처분) 제7항에 따른 실제 사업수입의 누적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기간의 사업수입으로 간주한다.

## 제 42 조 삭제

## 제 43 조 (통행료 수입보장금의 처리)

본 협약 체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기존실시협약에 따른 수입보장금으로서 제15조(보상업무 및 비용처리) 제1항에 따라 상계되고 남은 수입보장금의 지급의무는 본 협약의

체결로 본 협약 체결일부터 소멸된다.

### 제 43 조의2 (사업수입의 처분)

- ① 사업시행자는 처분가능사업수입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 체결일 이후 특정 분기의 실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할 경우, 당해 분기 이후 수령하는 사업수입 중 위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 당해 분기에 발생한 사업수입으로 간주하고, 실제 수령한 분기의 사업수입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나) 당해 분기의 처분가능사업수입으로 간주하여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에서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수입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인세(주민세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법인세, 주민세나 가산세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를 지급하고 남은 금원으로 자금차입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으로 차입승인대상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분기의 사업수입, 처분가능사업수입,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과 차입승인대상채무 상환의 구체적인 내역을 서울특별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 제3항에 따라 차입승인대상채무 전액이 상환된 이후 어느 사업연도 동안의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에서 법인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액을 서울특별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체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에 연일퍼센트(1%)를 더한 비율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를 가산하여 서울특별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사업수입의 누적 합계액이 동 기간의 누적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에 사업수입으로 (가) 제34조 (운영비용) 제2항 및 제45조(행정지



원) 제2항에 따른 추가 비용의 지급, (나) 법인세의 지급과 차입승인대상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 (다) 제49조 (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가 부담할 금액에 충당한 금액이나 (라) 본 조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가) 그 미달된 금액과 (나) 그 사용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계산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에 본 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서울특별시가 당해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해 법인세 금액을 함께 지급하고, 지연하는 경우 제44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 8 장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 등

### 제 44 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체결함에 대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제공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 협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② 어느 분기 동안의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당해 분기 이전의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유보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이 당해 분기 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와 자금차입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차입승인대상채무의 이자와 수수료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미달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시까지 매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계산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 항에 따른 금액을 서울특별시에 청구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며, 사업시행자는 본 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을 법인세와 차입승인대상채무의 이자 및 수수료의 지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을 관리할 예금계좌(이하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관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처분승인대상사업

수입을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승인대상채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승인대상채무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아래 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래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각 기산하여 본 항에 따른 자금제공금액의 지급기한이 종료하는 날(그 이전에 본 항에 따른 자금제공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까지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로 일할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을 구체적인 계산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제53조(협약 중도해지의 사유) 또는 제54조(매수청구권)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제56조(해지시 지급금)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매가격과 별도로, (가) 당해 차입승인대상채무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과 (나) 서울특별시가 당해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게 될 법인세를 합한 금액(있는 경우)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사업시행자는 본 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을 법인세와 차입승인대상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3조(협약 중도해지의 사유)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 ⑤ 서울특별시가 지급한 자금제공금액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금제공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기관에게 자금제공금액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자금제공금액에 대한 검증결과 서울시가 초과하여 지급하여 정산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2분기에 관한 자금제공금액을 확정할 때(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증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에 정산한다.

- ⑥ 서울특별시는 본 조에 따른 자금제공금액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가) 지체한 금액(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제4항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에 연일퍼센트(1%)를 더한 비율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와 (나)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에 관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가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 45 조 (행정지원)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 인·허가 등 관련기관에 대한 제반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예술의 전당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되,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제34조(운영비용)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자금제공을 하거나 처분승인대상사업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을 위한 해외기자재 및 장비수입,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을 위한 현금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이를 위한 수입허가절차 및 인·허가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현금차관 도입여부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운영위험 보전 또는 운영이익 처리방안은 추후 협의하여 별도 협약으로 체결한다.
- ④ 서울특별시장은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본 도로와 직결되는 반포대로 및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신호체계를 합리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유관기관과 그 대책을 협의하도록 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본 도로의 건설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또는 경쟁이 될 수 있는 노선(당초 협약 체결일 현재 계획된 도로는 제외한다)을 설치하여 그러한 노선이 운영되는 날이 속한 분기 및 그 이후 매 분기의 실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경우, 해당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절차는 제44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 제2항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가 위 금액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해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가)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에 연일퍼센트(1%)를 더한 비율로, (나)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 이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위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가) 그러한 노선이 설치되어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감소된 사업수입의 금액이 (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금액보다 작음을 입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그러한 노선이 설치되어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감소된 사업수입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서울특별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구체적인 계산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금액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날부터 위 반환기일까지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본 항에 따른 금액의 반환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한 금액에 대해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서울특별시에게 실제 반환하는 날까지 (가)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에 연일퍼센트(1%)를 더한 비율로, (나)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 이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로 일할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위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어느 분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게 청구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분기에 지급 받은 금액은 당해 분기의 실제 사업수입 계산시 제외하되, 제43조의2(사업수입의 처분) 제2항에 따른 실제 사업수입의 산정이나 제43조의2(사업수입의 처분) 제7항에 따른 실제 사업수입의 누적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기간의 사업수입으로 간주한다.

## 제 9 장 위험의 배분

### 제 46 조 (위험의 배분)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하여 책임 있는 본 협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49조에 정한 본 협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본 협약 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 제 47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으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보수를 행하지 않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5. 삭제됨
  6.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7. 누적지체상금이 사업이행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의 증가, 사업수입의 감소,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실제 사업수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업수입보다 감소되는 경우, 감소된 사업수입만큼 당해 분기 이후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은 감액된다.
- ③ 민간투자법과 관련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협약에 따른 본 협약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포함하여 본

협약에서 서울특별시에게 부여된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다.

#### 제 48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본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4. 서울특별시의 보상업무 등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5. 본 협약 제41조(통행료의 산정)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방침 등(통행료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통행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6.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관계법령 또는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서울특별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운영기간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수입이 감소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수입에 포함된다.

## 제 49 조 (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본 협약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본 협약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본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협약 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한 위험물이나 유물 또는 기타 지장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3.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

③ 삭제

④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비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를, 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는 본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할 금액을 아래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거나 어느 분기의 처분승인 대상사업수입으로 당해 금액을 충당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44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 지급)에 따른 자금제공금액의 지급과 별도로, 불가항력 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수입의 손실이 발생하여 어느 분기의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가) 비정치적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당해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금액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를, (나) 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당해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에 미달된 금액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할 금액을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계산 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에게 청구하고, 서울특별시는 당해 분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서울특별시가 본 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가)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에 연일 퍼센트(1%)를 더한 비율로, (나)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는 자금차입계약상 차입승인대상채무 이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제외한다)로 일할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위 제2호에 따라 어느 분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특별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분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당해 분기의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은 감액된다.
5. 위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어느 분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게 청구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분기 지급 받은 금액은 당해 분기의 실제 사업수입 계산시 제외하되, 제43조의2(사업수입의 처분) 제2항에 따른 실제 사업수입의 산정이나 제43조의2(사업수입의 처분) 제7항에 따른 실제 사업수입의 누적 합계액



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기간의 사업수입으로 간주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처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의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⑥ 삭제

### 제 50 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된 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히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 51 조 (불가항력 사유의 대책협의)

- ① 서울특별시는 제50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 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 본 협약에 규정된 본 협약 당사자 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③ 본 협약 당사자간에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방안 또는 본 협약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3조 제5항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 제 10 장 본 협약의 종료

### 제 52 조 (협약 종료의 일반적 사유 및 그 효과)

- ① 본 협약은 제53조에 의하여 중도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본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서울특별시에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본 도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한다.

### 제 53 조 (협약 중도해지의 사유)

① 서울특별시에 의한 중도해지 - 제47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자금제공금액의 지급, 제34조(운영비용) 제2항이나 제45조(행정지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제49조(본 협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금액의 지급, 본 협약에 따른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받고도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본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 본 협약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유물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구간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본 협약 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한 중도해지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금융완결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120일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가. 동 사유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나. 동 사유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다. 동 사유가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본 협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본 협약 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 ④ 본 조에 따라 본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본 협약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 본 협약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일(“해지일”)에 발생한다.

## 제 54 조 (매수청구권)

- ① 본 협약 제53조에 정한 사유가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정한 매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별도로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②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를 인정한 경우, 매매가격은 매수청구의 사유에 따라 제56조(해지시지급금)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 제 55 조 (협약 종료시의 효과)

- ①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매수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매수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무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서울특별시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서울특별시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매수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관리운영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매수된 경우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이전한다.

## 제 56 조 (해지시 지급금)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의 해지시까지 발생한 자금제공금액과 별도로 부록Ⅸ (해지시지급금)에서 정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 57 조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①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수령한 어떠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게 해지일 현재까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차입승인 대상채무를 제외한다)를 서울특별시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 한다.

② 본 협약 당사자들은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합의 하여 확정하기로 하되,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들은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들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날로부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본 협약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위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통보한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위 해

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본 협약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③ 본 협약 당사자간에 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 본 협약 당사자는 각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협의하여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한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58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법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 제 11 장 분쟁의 해결

### 제 58 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협의를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본 협약 당사자 쌍방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분쟁 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합의관할은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 12 장 비밀유지

### 제 59 조 (비밀유지)

- ①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 공개 본 협약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 13 장 기타

### 제 60 조 (자금의 차입)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에 근거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에 자금차입을 하기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의 내용 중 차입승인대상채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으로 차입할 수 있는 차입승인대상채무의 대출원금 총액은 금[천이백십억]원(W[121,400,000,00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60 조의2 삭제

## 제 61 조 (협약 변경의 통지)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기간 중 대주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그 사유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주단의 대표자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대주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주단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제 62 조 (행정처분의 통지)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는 가능한 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위 처분의 통지와 동일한 시점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주단의 대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이 사전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 제 63 조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울특별시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이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대주단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한다.

## 제 64 조 (기타 서울특별시의 협조)

서울특별시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 경우 대주단은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한다.

## 제 65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며,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 66 조 (협약의 변경)

- ① 당초 협약 체결일 이후 본 협약 체결일 직전일까지 기존실시협약에 명시된 모든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이 개정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이 제정된 경우에는 기존실시협약 제66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협약 체결일 현재의 본 협약상 명시된 모든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이 개정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이 제정되더라도 그러한 개정, 신설 내용은 본 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개정, 신설 내용이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 따른 본 협약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 본 협약 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협약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들은 협약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장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된 본 협약 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자금재조달은 본 협약 당사자들의 합의로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재정으로 차입 승인대상채무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자금차입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차입승인대상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66 조의2 (변경실시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체결된 기존실시협약 중 본 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은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 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 이전의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록 VI에 따른 출자자 변경의 효력은 출자자변경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른 거래가 실질적으로 종결된 시점에 발생한다.

## 제 67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본 협약 당사자 간의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해석된다.
  1. 본 협약
  2. 민간투자법
  3. 민간투자법시행령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68 조 (권리의무의 귀속)**

- ① 사업시행자가 그 법인설립절차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에 기한 모든 행위를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본 협약에 기하여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에게 행한 모든 행위는 사업시행자의 각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시행자가 그 법인설립절차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해 본 협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에게 귀속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동 법인이 본 협약상의 본 사업시행자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법적 절차(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제출 등)를 이행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는 별도의 조치없이 그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승인한다.

**제 69 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로서 대주단에게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제 70 조 (경과조치)

관계법규 및 서울특별시의 자치법규 등 제반 행정사항이 본 사업 완료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법령 등 개선된 행정사항이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 제 71 조 (서면통지)

① 각 본 협약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의 수취 확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② 각 본 협약 당사자에 대한 문서의 통지나 송달은 아래의 주소로 이루어진다.

1.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지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참조 : 도로계획과

전화 : (02) 2133-8071~4

팩스 : (02) 2133-0763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로 369

참조 : 경영기획팀

전화 : (02)526-8104

팩스 : (02)574-9201

③ 본 협약 당사자는 주소의 변경을 상대방 본 협약 당사자에 통지하며 이러한 변경 통지는 통지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아래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 1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석 (인)

[부록 1]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내역  
(1997년 8월 11일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억원)

□ 세부내역		
1. 조사비	.....	1.6
2. 설계비	.....	21.6
3. 공사비	.....	1,158.4
4. 보상비	.....	114.5
5. 부대비	.....	53.2
① 책임감리비	26.33	
② 공사보험료	10.22	
③ 대출관리수수료	0.28	
④ 건설이행보증보험료	16.37	
6. 운영설비비	.....	25.5
7. 제세공과금	.....	11.0
8. 영업준비금	.....	15.9
① 창업비	0.17	
② 개업비	13.56	
③ 신주발행비	2.19	
9. 물가변동비	.....	208.6
10. 건설이자	.....	180.3

□ 총민간사업비(1~8) : 1,401.8

□ 총민간투자비(1~10) : 1,790.7

□ 운영비용 : 1,345.6

[부록 II]

추 정 통 행 량

(단위:대/일, 양방향)

년도	소형			중형		대형	합계	적용통행량
	승용차	소형버스	소형화물	대형버스	중형화물	대형화물		
2004년	34,602	8,812	2,662	3,907	1,762		51,745	34,673
2005년	35,416	8,985	2,722	3,960	1,783		52,866	35,424
2006년	36,250	9,162	2,783	4,014	1,804		54,013	36,193
2007년	37,103	9,342	2,846	4,069	1,826		55,186	36,979
2008년	37,976	9,525	2,908	4,126	1,849		56,384	37,782
2009년	38,870	9,711	2,972	4,184	1,872		57,609	38,603
2010년	39,784	9,902	3,033	4,240	1,900		58,859	39,440
2011년	40,721	10,097	3,095	4,298	1,929		60,140	40,299
2012년	41,679	10,295	3,158	4,357	1,958		61,447	41,174
2013년	42,660	10,498	3,223	4,419	1,988		62,788	42,073
2014년	43,664	10,702	3,288	4,481	2,018		64,153	42,988
2015년	44,691	10,913	3,355	4,541	2,049		65,549	43,923
2016년	45,743	11,129	3,424	4,603	2,080		66,979	44,881
2017년	46,819	11,347	3,494	4,667	2,111		68,438	45,859
2018년	47,921	11,568	3,565	4,731	2,144		69,929	46,858
2019년	49,049	11,794	3,637	4,798	2,177		71,455	47,880
2020년	50,203	12,028	3,711	4,863	2,210		73,015	48,926
2021년	50,953	12,219	3,771	4,910	2,234		74,087	49,644
2022년	51,715	12,414	3,833	4,960	2,260		75,182	50,378
2023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24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25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26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27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28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29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30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31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32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33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2034년	52,288	12,563	3,881	4,991	2,277		76,000	50,926

[부록 Ⅲ]

적용통행료 수준

- 삭제 -

[부록 IV]

추정통행료수입

(단위 : 억원)

년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년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2004년	183	241	2019년	214	507
2005년	183	250	2020년	210	518
2006년	180	256	2021년	205	526
2007년	176	261	2022년	200	534
2008년	173	267	2023년	195	540
2009년	170	273	2024년	187	540
2010년	209	348	2025년	180	540
2011년	206	356	2026년	173	540
2012년	202	364	2027년	166	540
2013년	198	372	2028년	160	540
2014년	195	380	2029년	154	540
2015년	230	465	2030년	148	540
2016년	226	476	2031년	142	540
2017년	222	486	2032년	137	540
2018년	218	497	2033년	134	540
			합계	5,576	13,320

※ 불변가격은 1997년 8월 11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4% 반영

※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부록 V]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

- 삭 제 -

[부록 VI]

출자자 및 지분율

출 자 자	지 분 율	감자전 출자금(억원)	감자 후 출자금(억원)
파인스트리트우면산터널전문 사모투자신탁1호	49%	130.34	56.84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36%	95.76	41.76
파인스트리트우면산터널전문 사모투자신탁2호	15%	39.90	17.40
계	100%	266.00	116.00

[부록 VII]

차종별 기준통행료

- 삭제 -

[부록 Ⅷ]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

(단위: 억원, 경상가)

구분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	누적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	구분		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	누적예정처분가능사업수입
2015년	1/4분기	-	-	2024년	1/4분기	37.50	872.50
	2/4분기	-	-		2/4분기	37.50	910.00
	3/4분기				3/4분기	37.50	947.50
	4/4분기				4/4분기	37.50	985.00
2016년	1/4분기	21.25	21.25	2025년	1/4분기	38.75	1,023.75
	2/4분기	21.25	42.50		2/4분기	38.75	1,062.50
	3/4분기	21.25	63.75		3/4분기	38.75	1,101.25
	4/4분기	21.25	85.00		4/4분기	38.75	1,140.00
2017년	1/4분기	21.25	106.25	2026년	1/4분기	38.75	1,178.75
	2/4분기	21.25	127.50		2/4분기	38.75	1,217.50
	3/4분기	21.25	148.75		3/4분기	38.75	1,256.25
	4/4분기	21.25	170.00		4/4분기	38.75	1,295.00
2018년	1/4분기	21.25	191.25	2027년	1/4분기	38.75	1,333.75
	2/4분기	21.25	212.50		2/4분기	38.75	1,372.50
	3/4분기	21.25	233.75		3/4분기	38.75	1,411.25
	4/4분기	21.25	255.00		4/4분기	38.75	1,450.00
2019년	1/4분기	25.00	280.00	2028년	1/4분기	38.75	1,488.75
	2/4분기	25.00	305.00		2/4분기	38.75	1,527.50
	3/4분기	25.00	330.00		3/4분기	38.75	1,566.25
	4/4분기	25.00	355.00		4/4분기	38.75	1,605.00
2020년	1/4분기	25.00	380.00	2029년	1/4분기	38.75	1,643.75
	2/4분기	25.00	405.00		2/4분기	38.75	1,682.50
	3/4분기	25.00	430.00		3/4분기	38.75	1,721.25
	4/4분기	25.00	455.00		4/4분기	38.75	1,760.00
2021년	1/4분기	31.00	486.00	2030년	1/4분기	38.75	1,798.75
	2/4분기	31.00	517.00		2/4분기	38.75	1,837.50
	3/4분기	31.00	548.00		3/4분기	38.75	1,876.25
	4/4분기	31.00	579.00		4/4분기	38.75	1,915.00
2022년	1/4분기	32.00	611.00	2031년	1/4분기	38.75	1,953.75
	2/4분기	32.00	643.00		2/4분기	38.75	1,992.50
	3/4분기	32.00	675.00		3/4분기	38.75	2,031.25
	4/4분기	32.00	707.00		4/4분기	38.75	2,070.00
2023년	1/4분기	32.00	739.00	2032년	1/4분기	38.75	2,108.75
	2/4분기	32.00	771.00		2/4분기	38.75	2,147.50
	3/4분기	32.00	803.00		3/4분기	38.75	2,186.25
	4/4분기	32.00	835.00		4/4분기	38.75	2,225.00
				2033년	1/4분기	33.00	2,258.00
					2/4분기	33.00	2,291.00
					3/4분기	33.00	2,324.00
					4/4분기	33.00	2,357.00

[부록Ⅸ]

해지시지급금

(단위:억원, 불변가격 기준)

구분		①	②	③	④	구분		①	②	③	④
2015년	1/4분기	-	-	-	-	2024년	1/4분기	502.59	470.42	438.25	373.19
	2/4분기	-	-	-	-		2/4분기	498.88	467.52	435.47	372.76
	3/4분기	-	-	-	-		3/4분기	493.29	463.47	432.30	371.32
	4/4분기	490.28	425.43	360.58	230.87		4/4분기	486.48	456.89	427.31	368.14
2016년	1/4분기	486.69	422.66	358.62	231.82	2025년	1/4분기	512.12	483.31	454.50	398.17
	2/4분기	481.34	419.44	356.27	231.20		2/4분기	504.40	475.79	447.81	391.83
	3/4분기	475.50	413.26	352.27	229.66		3/4분기	494.89	467.77	440.64	385.79
	4/4분기	466.70	406.68	346.66	226.61		4/4분기	484.17	457.95	431.73	379.29
2017년	1/4분기	462.99	403.75	344.52	226.05	2026년	1/4분기	464.69	440.94	413.81	362.36
	2/4분기	456.39	399.20	340.81	225.22		2/4분기	447.51	423.99	397.73	348.49
	3/4분기	449.36	391.87	335.55	222.92		3/4분기	430.25	406.49	381.15	333.64
	4/4분기	440.72	384.19	328.81	218.05		4/4분기	411.29	388.44	363.56	317.86
2018년	1/4분기	439.81	384.98	330.14	220.48	2027년	1/4분기	424.13	402.07	379.02	335.88
	2/4분기	437.36	383.11	328.87	221.50		2/4분기	403.56	382.32	360.61	318.60
	3/4분기	433.38	380.88	327.27	221.16		3/4분기	382.59	362.21	341.84	301.09
	4/4분기	429.00	376.06	324.23	220.56		4/4분기	361.21	341.74	322.27	283.34
2019년	1/4분기	480.70	428.62	377.62	275.62	2028년	1/4분기	357.74	339.02	319.89	282.86
	2/4분기	471.29	421.18	371.06	270.83		2/4분기	338.77	320.83	302.90	267.03
	3/4분기	461.40	413.27	364.10	265.75		3/4분기	318.67	301.93	284.44	250.98
	4/4분기	451.02	402.84	354.67	259.34		4/4분기	299.00	282.39	266.14	232.92
2020년	1/4분기	487.63	440.27	393.93	300.23	2029년	1/4분기	288.21	272.77	257.33	228.51
	2/4분기	479.59	433.11	387.63	295.66		2/4분기	269.13	253.56	238.65	210.11
	3/4분기	470.00	424.45	379.87	289.75		3/4분기	247.57	233.56	219.86	193.37
	4/4분기	458.89	415.28	370.71	283.49		4/4분기	225.68	212.34	199.56	174.58
2021년	1/4분기	496.78	453.99	411.19	325.61	2030년	1/4분기	208.36	196.42	184.47	160.58
	2/4분기	488.52	446.59	404.67	320.82		2/4분기	182.15	171.07	159.99	137.84
	3/4분기	478.69	437.68	396.68	315.56		3/4분기	153.68	143.51	133.34	113.00
	4/4분기	468.20	428.17	388.14	308.07		4/4분기	124.61	115.29	106.58	88.13
2022년	1/4분기	506.93	467.74	428.55	350.16	2031년	1/4분기	140.01	132.55	124.15	106.41
	2/4분기	497.91	459.61	421.31	345.54		2/4분기	113.98	107.27	99.73	84.65
	3/4분기	488.12	450.76	413.40	339.49		3/4분기	87.16	81.25	74.60	61.30
	4/4분기	477.53	440.37	404.79	332.85		4/4분기	60.95	55.23	49.52	38.09
2023년	1/4분기	505.22	470.25	435.27	363.76	2032년	1/4분기	76.44	72.14	67.29	57.06
	2/4분기	490.67	455.57	421.33	351.79		2/4분기	51.65	47.27	43.77	35.89
	3/4분기	475.02	440.60	407.69	339.62		3/4분기	26.63	23.64	20.64	15.31
	4/4분기	458.31	425.36	392.42	325.80		4/4분기	17.91	15.89	13.88	10.30
					2033년	1/4분기	13.69	12.15	10.61	7.87	
						2/4분기	9.31	8.26	7.22	5.35	
						3/4분기	4.75	4.21	3.68	2.73	
						4/4분기	0.00	0.00	0.00	0.00	

※ 불변가격은 1997년 8월 11일 기준

※ 분기말 기준임(분기사이일 경우 보간법으로 산정함).

1.본 협약이 제53조 제2항(제53조 제3항 제3호 가목 포함) 및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지된 경우, ①에 기재된 금액에 불변가 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2.본 협약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제53조 제3항(제5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 나목 제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②에 기재된 금액에 불변가 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3.본 협약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제53조 제3항(제53조 제3항 제3호 가목, 나목 제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③에 기재된 금액에 불변가 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4.본 협약이 제53조 제1항(제53조 제3항 제3호 나목 포함)에 따라 해지된 경우, ④에 기재된 금액에 불변가 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용 마 터 널 민 간 투 자 사 업

# 실 시 협 약 서(변경)

2018. 6. 8.

서 울 특 별 시

용 마 터 널 주 식 회 사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1
제 2 조 (정의) .....	1

## 제 2 장 기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1
제 4 조 (사업시설의 준공 및 귀속) .....	12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	12
제 6 조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	13
제 7 조 (출자자의 지분 변경) .....	13

##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실시계획) .....	14
제 9 조 (행정절차) .....	14
제 10 조 (설계내용관련 보완사항의 처리) .....	15
제 11 조 (점유사용권) .....	15
제 12 조 (유물 및 위험물) .....	15
제 13 조 (지장물) .....	16
제 14 조 (민원처리) .....	16
제 15 조 (공사의 도급) .....	17
제 16 조 (공사의 착수) .....	18
제 17 조 (공정관리) .....	18
제 18 조 (기성검사) .....	19



제 19 조 (안전관리) .....	19
제 20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	19
제 21 조 (설계감리) .....	19
제 22 조 (공사감리) .....	20
제 23 조 (준공검사) .....	20
제 24조 (지체상금) .....	21
제 25 조 (사업이행보증) .....	22

#### 제 4 장 총사업비 및 통행료

제 26 조 (총사업비) .....	22
제 27 조 (통행료의 징수) .....	25
제 28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	25
제 29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	26
제 30 조 (사업수익률) .....	26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26
제 32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	27
제 33 조 (통행료 징수 방법) .....	28

#### 제 5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	28
제 35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	29
제 36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30
제 37 조 (운영비용) .....	30
제 38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	31

## 제 6 장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제 39 조 (통행료수입 환수) .....	31
제 40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	32
제 41 조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미개통) .....	33
제 42 조 (재정지원의 절차) .....	33
제 43 조 (서울특별시의 비재정적 지원) .....	35
제 44 조 (자금차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	35

##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45 조 (위험배분의 원칙) .....	36
제 4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37
제 47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38
제 48 조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	39
제 49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41

##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50 조 (무상사용기간 만료) .....	42
제 51 조 (협약의 해지) .....	43
제 52 조 (매수청구권) .....	45
제 53 조 (해지시지급금) .....	46
제 54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	47
제 55 조 (협약 종료의 효과) .....	49
제 56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50

## 제 9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57 조 (양도) .....	50
제 5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51

## 제 10 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제 59 조 (준거법) .....	52
제 60 조 (분쟁의 해결) .....	52
제 61 조 (분쟁금액) .....	52
제 62 조 (중재) .....	52
제 63 조 (합의관할) .....	53

##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64 조 (협약의 효력) .....	53
제 65 조 (해석) .....	54
제 66 조 (문서의 우선 순위) .....	54
제 67 조 (협약의 변경) .....	55
제 68 조 (협약의 수익자) .....	56
제 69 조 (협약준수의무 및 면책항변의 배제) .....	56
제 70 조 (일부무효) .....	56
제 71 조 (비밀유지) .....	56
제 7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	57
제 73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	57
제 74 조 (권한의 위임) .....	58

제 75 조 (통지) .....	58
제 76 조 (본 협약의 승계) .....	59
제 77 조 (언어) .....	59

## 부 록

1. 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 .....	62
2. 총(민간)사업비 .....	63
3. 추정통행량 .....	64
4. 차종별 기준통행료 .....	65
5. 추정 통행료수입 .....	66
6. 운영비용 .....	67
7.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	68
8. 보험내역 .....	69
9. 자금투입계획 .....	70
10. 재무모델 .....	71

# 실시협약(변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용마터널 주식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정의된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8월 12일 “용마터널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이하 “기존협약”)를 체결하였는 바, 각 당사자(아래 정의됨)는 기존협약의 체결이후, 일부 개정된 민간투자법(2009. 4. 1. 개정 법률 제9556호), 동법시행령(2009. 4. 21. 개정 대통령령 제21434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2009. 3. 27.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57호)에 따른 변동사항과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여건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기존협약에 반영하여 2009년 11월 12일 변경실시협약(이하 “기존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자금재조달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변경실시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2018년 6월 8일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이하 “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감리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2. “건설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586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80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5. “공사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7. “공사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로서,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않는 한, 부록 2(총(민간)사업비)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8. “공사착수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9.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등 제반 법률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10.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권리로서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금융완결”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최초인출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12. “기본적 기능충족”이란 본 사업시설과 동종의 시설에 대하여 건설산업일반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준통행료”라 함은 제29조에 정한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말한다.
14.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15. “담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6. “당사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7. “대리은행”이라 함은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인출 및 상환, 자금차입계약의 사후관리 기타 자금차입계약의 당사자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8. “대주단”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 또는 연기금, 군인공제회 등을 말한다.
19. “대체사업자”라 함은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0. “도로부대시설”이라 함은 본 도로에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및 광통신관로 등 본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

21.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제52조,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본 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말하며, “매수”라 함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매수청구인정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매수를 인정하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
23. “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4.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 함은 본 협약의 해지에 있어서 부록 7 (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해지일 현재의 가치를 말한다.
25.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77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26.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928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말하며, 그 개정된 시행령을 포함한다.
2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2-5호(2002년 5월 10일자)로 공고한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개정된 계획을 포함한다.
28. <삭제>
29. “본 도로”라 함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총연장 3,566m(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4~6차로 용마터널, 지하차도, 교량 및 영업소 도로를 말한다.



30.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1.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된 모든 토지나 지역을 말한다.
32.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도로와 도로부대시설을 말한다.
33. “본 협약”이라 함은 본 실시협약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34. “분기”라 함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35.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의미하며, 제48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한다.
36.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라 함은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37.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라 함은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38.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9.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말한다.
40. “사업시행자”라 함은 본 협약의 당사자인 용마터널 주식회사를 말한다.
41. “사업연도”라 함은 운영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최종 사업연도는 운영기간 최종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운영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2.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2002년 3월 4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용마터널건설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를 말한다.
43. “서울특별시”라 함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44.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3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출된 것과 가장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된다.
45.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는 일자 또는 통행료 등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자에 고시된 소비자물가지수를, 2001년 5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환산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한다.

46.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608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48. “실시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과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49. “운영개시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의 징수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50. “운영기간”이라 함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1. “운영비용”라 함은 제37조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52.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53. “유물”이란 대한민국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부지나 본 사업시설 내, 그 위나 아래 또는 그 근처에 존재하는 고고학적, 역사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유물을 말한다.
54.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5. “잉여수익금”이라 함은 특정 사업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과 당해 사업연도의 환수기준통행료수입과의 차액에서 제세공과금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6. “자금차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57.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사이에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58. “적정가치”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총사업비를 해지일의 가격으로 환산(각 지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각 지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9. “전문기관”이라 함은 수시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정되어 회계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60. “제반공급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에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 및 송유관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61.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 61의2.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이라 함은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통행료수입 발생시 동 초과수입 발생분에 투입되는 인건비, 초과수요처리에 해당하는 영업비, 유지관리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의 합계를 말한다.

62.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이 되는 날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연장된 날을 포함한다.
63. “준공일”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이 실제 준공된 날로서 준공확인필증상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64. “준공전사용인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인가받는 것을 말한다.
65. “준공확인필증”이라 함은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6.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의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로서 유물과 위험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67. “착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개시하기로 예정된 날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연장된 날을 포함한다.
68.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제26조에 따라 결정될 총(민간)사업비를 말한다.
69. “총선순위채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타인자본(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국내외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조달한 금액을 포함하며, 투자적격등급이라 함은 BBB-의 등급을 말함)으로서 해지일 현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 총액(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서 자금

차입계약에 정한 정상이자율을 공제한 금액과 후순위차입금은 총선순위 채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0. “추정통행량”이라 함은 부록 3(추정통행량)에 기재된 추정통행량을 말한다.
71. “추정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동안 통행료 징수로 얻은 추정 수입으로서 부록 5(추정통행료수입)에 기재된 바와 같다.
72. “출자자”라 함은 부록 1(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에 출자자로 기재된 자 및 기타 수시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게 될 자를 말한다.
73. “통행료”라 함은 본 협약과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통행차량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통행료를 말한다.
74. “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동안 통행료의 징수로 얻은 실제 수입을 말한다.
75. “해지사유발생통지”라 함은 제51조 제5발생통지”라 통지를 말한다.
76. “해지지지금금”이라 함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77. “해지일”이라 함은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날을 말하며, 매수청구인정일을 포함한다.
78. “해지통지”라 함은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79.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추정통행료수입의 100%를 말한다. 다만, 암사대교 구간의 완공 및 운영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환수기준통행료수입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0. “회사채유통수익률”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른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이고, 잔존 만기가 3년인 공모 무보증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되며, 후자에 있어서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된다.
81. “후순위차입금”이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지급불능 등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순위차입금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으로부터 당해 채무를 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 제 2 장 기 본 약 정

###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권리를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부지와 본 사업시설의 무상

사용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4.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영위

- ②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 4 조 (사업시설의 준공 및 귀속)

- ① 사업시행자는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은 아래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하는 즉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위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서울특별시에 귀속됨과 관련하여 관련 세법의 적용 또는 개정으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당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은, 달리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본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통행료징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2.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통행료징수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 제 6 조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출자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법인의 설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 7 조 (출자자의 지분 변경)

- ① 출자자 및 그 출자예정비율은 부록 1(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에 기재된 바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전까지 전체 출자지분 중 5%이상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출자자간 합병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출자자간의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역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대주단에 게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 제 8 조 (실시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공법변경 등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동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 9 조 (행정절차)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며,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제 10 조 (설계내용관련 보완사항의 처리)

환기시설, 갭문형식, 방화문 형식 등을 포함한 설계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심의과정에서의 지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총사업비를 증가시키지않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 기본적인충족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 11 조 (점유사용권)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 기관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제세공과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 등을 처리하기로 한다.

#### 제 12 조 (유물 및 위험물)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에 통지하며, 유물이 발견된 동일한 위치와 조건대로 유물을 보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 즉

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유물을 발굴하거나 위험물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본 사업부지내 출입을 허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 제 13 조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장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이설 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간중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지장물의 이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비용의 처리방법 및 공사기간의 연장 등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4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은 서울특별시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단, 서울특별시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총사업비를 증가시킴 없이 처리한다.

## 제 15 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002년 9월 11일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47-15)에 의한 적격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 방법 및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감리자는 위 하수급인이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 과정에서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의 기성부분 중 체불된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제 16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착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계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또는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예정일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착공예정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러한 사유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착공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 17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 일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에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의 전체 공정과 당해 연도 예정공정표 및 당해 연도 시공부분이 표시된 노선도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매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누계 공정이 실시계획에 정한 공정계획에 대비하여 90% 미만인 경우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

고 정상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한다.

## 제 18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로부터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 19 조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 20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본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할 제반공급시설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상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운영 및 수익 방법 등에 관해 사전에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정하기로 한다.

## 제 21 조 (설계감리)

-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설계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

를 서울특별시에게 통보하고, 동 설계감리자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설계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 제 22 조 (공사감리)

-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거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매분기별 감리비를 지급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에게 감리업무현황에 대한 정기보고와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품질 및 안전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자로 하여금 감리업무와 관련된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제 23 조 (준공검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6개월 전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준공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리자의 예비준공검사를 거친 후 본 사업시설의 준공 3개월 전에 서울특



별시에 본 사업의 예비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각 단계에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동 미비사항을 완결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준공확인필증 교부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되,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간은 운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 24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의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준공예정일의 익일부터 준공일까지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당 지체상금은 총사업비에서 서

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기집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 25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상당하는 보증금(“사업이행보증금”이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갈음될 수 있음)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그 발급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시설의 전체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설기간 중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단, 제51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제외)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제52조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이행보증금(혹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 4 장 총사업비 및 통행료

### 제 26 조 (총사업비)

- ①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금1,181억원(2001년 5월 1일 불

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 2(총(민간)사업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가.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공사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 설계감리계약 및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2.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3.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4.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5.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6. 본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③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현재 산출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2001년 5월 1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다.
- ④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 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는 제42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재정지원금의 지급과 병행하여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당해 총사업비 변경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거나 총사업비를 절감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한 경우 이를 이유로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 ⑦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 ⑧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최초통행료 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 ⑨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출자자로 하여금 부록 9(자금투입계획) 및 부록 10(재무모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7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투자한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는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전부가 준공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인가를 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징수할 통행료를 위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8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 ① 최초통행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 및 제30조의 사업수익률에 따라 산출된 제29조의 차종별 기준통행료(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이하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기준통행료를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최초 통행료를 결정한다. 다만, 최초 통행료가 기준

통행료 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결정되는 경우 그 절상(하)된 부분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차기 통행료 조정시 반영한다.

- ③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통행료는 제1항의 기준통행료에 운영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적용(연간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의 변동분을 적용한다)하여 결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최초통행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1. 통행료
2. 통행료의 산출기초자료
3. 통행료의 징수방법
4.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5.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 29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차종별 기준통행료는 부록 4(차종별 기준통행료)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제 30 조 (사업수익률)

기준통행료 산정을 위하여 적용될 실질사업수익률은 연 6.25%로 한다.

####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

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분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 제 32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하고, 동 손실 또는 비용 중 서울특별시의 부담분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삭제>

3.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의 협의 기간 동안 통행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기관에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요청하며,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통행료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3의 전문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3의 전문기관이 위와 같이 통행료의 산정을 의뢰 받은 후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통행료의 산정결과를 당사자 모두에게 문서로 통보토록 하며,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 33 조 (통행료 징수 방법)

- ① 통행료의 징수방식은 유인식통행료징수방식과 전자요금징수방식(ETCS)을 혼용하기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 5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34 조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시설물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위 제3항의 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보수를 서울특별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⑤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 받아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5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입체적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도로의 교통관리체계를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다른 구간과 연계할 수 있으며, 이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목적, 이용에 따른 편

익,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추가 협약토록 한다.

### 제 36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의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시설에 관한 전년도의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교통량 현황 및 본 사업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 37 조 (운영비용)

-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847억원으로 한다.
  - ② 부록 6(운영비용)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한 경우 이외에는 통행료의 조정,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서울특별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 6(운영비용)에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

감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비용이 증감하고 서울특별시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3.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감분
- ④ 사업기간 동안 법인의 소득에 관한 세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부록6 (운영비용) 및 부록 10(재무모델)에 반영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통행료 산정이나 조정시 그와 같은 세율의 변동을 반영하거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이 감소되더라도 그를 이유로 통행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감소액의 환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 38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익은 다음 연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

## 제 6 장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 제 39 조 (통행료수입 환수)

- ① 추정통행료수입은 부록 5(추정통행료수입)에 기재된 바와 같다.
- ② <삭 제>
- ③ 무상사용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잉여수익금의 50%를 서울특별시로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충당.
  2. 통행료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 ④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된 통행료수입현황 등에 관한 자료(통행료 수입 환수에 관한 내역 포함)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교통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 도로나 대체 교통수단이 신설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서울특별시에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본 도로에 연결된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신규 연결도로의 개설 등으로 본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른 증가된 통행료수입의 환수는 본조 제3항에 따른다.

#### 제 40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해 경차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나, 본 협약 체결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한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감면하게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본 도로를 통행한 감면대상차량의 실적치를 토대로 그 감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제42조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르거나 당사자들 상호 합의 하에 통행료로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단, 제42조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르는 경우, 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한 경차통행료 감면이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통행료감면의 경우에는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통행료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되,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입과 본 조에 의한 보전금의 합은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41 조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미개통)

- ①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기로 한 암사대교(6차로) 구간이 무상사용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완공 및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완공 및 운영까지의 기간 동안의 통행료 보장 및 환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각 사업연도의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부족 금액에 관하여는 재정지원을 한다.
- ③ <삭 제>
- ④ 각 사업연도의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수입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위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42 조 (재정지원의 절차)

- 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본 협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정지원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재정지원 소요금액을 확정하며, 동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유 및 자금계획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서울특별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행여부 및 방침을 결정한 후 동 방침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정지원을 실행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지급기한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한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요청일이 속한 연도의 차기연도 개시일을 이자기산일로 하여 실제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시기 경과일 다음 날로부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건설기간중 총사업비변경으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운영개시일 이후에 지급될 경우, 동 지급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급금이 서울특별시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제 43 조 (서울특별시의 비재정적 지원)

- 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 체결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 자본 및 원금의 대외송금액이 자유롭게 외국환으로 환전되고 국외의 은행계좌로 송금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설계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제반절차 등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수입허가 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 등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제 44 조 (자금차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될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다는 사실과 그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등록된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③ 당사자가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1. 공사기간
  - 2. 통행료 산정 및 조정기준
  - 3.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 4. 사업수익률
  - 5.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사업시행자의 자본증자의 경우 그 납입 시기와 납입금액
  - 6.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매수청구권
  - 7. 사업시행자의 변경

## 제 7 장 위험의 배분

### 제 45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48조에 정한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



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 제 4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으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내에 보수를 행하지 않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계약(들)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

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누적지체상금이 사업이행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수입손실이나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7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본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4. 서울특별시의 보상업무 등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5. 본 협약 제4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방침 등(통행료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통행

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6.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서울특별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건설기간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운영기간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제 48 조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협약 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한 위험물이나 유물 또는 기타 지장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3.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

③ 건설기간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80%의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나. 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직·간접비용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도로의 통행료 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부보한 보험이나 책임있는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비용은 제외된다.

④ 운영기간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 사업시설의 제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본조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여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족 금액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본조 제5항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본 협약 제42조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처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의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운영자금의 부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용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제 49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①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상대방

에게 그에 대한 서면 통지(“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수령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통지(“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를 한다.
- ③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그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분쟁은 제61조 내지 제63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제3항에 따라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내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 제 8 장   협약의 종료

### 제 50 조 (무상사용기간 만료)

- ① 본 협약은, 제51조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서울특별시는 관

런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②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3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에 인계한다.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만료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1 조 (협약의 해지)

① 서울특별시에 의한 중도해지 - 제46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③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유물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구간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당사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한 중도해지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금융완결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중도해지되고 120일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가. 동 사유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나. 동 사유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다. 동 사유가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④ 본 조에 따라 당사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⑤ 당사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 기간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일(“해지일”)에 발생한다.

## 제 52 조 (매수청구권)

① 본 협약 제51조에 정한 사유가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매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별도로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가액(“매수가액”)은 가액산정 당시의 잔여 무상사

용기간 기대수익을 사업수익율로 현재가치화한 금액(단,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으로 한다. 잔여기간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는 본 협약 부록 7(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 제 53 조 (해지시지급금)

① 본 협약이 제51조 제1항(제51조 제3항 제3호 나목 포함)에 따라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본 조의 해석에 있어서 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의미함)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 협약이 제51조 제2항(제51조 제3항 제3호 가목 포함) 및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본 협약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제51조 제3항(제51조 제3항 제3호 가목, 나목 제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본 협약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제51조 제3항(제5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 나목 제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⑤ 중도해지사유가 매수청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지급금과 제52조에 정한 매수가액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 제 54 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①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수령한 어떠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게 해지일 현재까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서울특별시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한다.

- ② 당사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합의 하여 확정하기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날로부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위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통보한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위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③ 당사자간에 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협의 하여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결정한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61조 내지 제6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중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하되,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서 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법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단, 상계후 지급될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이 총선  
순위채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 제 55 조 (협약 종료의 효과)

- ① 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매수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매수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  
분)은 즉시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  
며, 무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서울특별시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서울특별시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  
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  
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  
산을 취득, 인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매수  
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관리운영  
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매수  
된 경우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를 수행하고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이전한다.

## 제 56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는 종료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 9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 제 57 조 (양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을 위하여 대주단에게 본 협약 및 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사업시행자의 동산, 부동산, 금전채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 제 5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① 서울특별시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대체사업자(“대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대주단(또는 대리은행)은 서면 통지로 예비대체사업자(“예비대체사업자”)를 서울특별시에 추천(“추천통지”)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는 추천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필요한 경우 예비대체사업자 포함)에게 예비대체사업자 추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수용한 예비대체사업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지받은 날, 운영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지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운영권이 등록된 날(이하 양날을 각각 “대체일”이라 한다)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승계하며, 대체일 이후에는 대체사업자를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대체사업자는 그 대체사업자가 대체일 현재 존재했던 본 협약의 해지 사유 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합의하기로 한다.

## 제 10 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 제 59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제 60 조 (분쟁의 해결)

- ①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분쟁을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제61조 내지 제63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 61 조 (분쟁금액)

- ①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금액은 그 분쟁이 그 금액을 수령할 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율로 계산되는 이자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 제 62 조 (중재)

-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③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가능한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최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 ④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제 63 조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 11 장 기타 사항

### 제 64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 제 65 조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서,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며 그 개정을 포함한다.
- ②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③ 본 협약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본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 ⑤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제 66 조 (문서의 우선 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간에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본 협약

이 우선하며, 본 협약의 해석상 모호함이나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해석된다.

1.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제 67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별도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투자법의 취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성의 확보 및 본 협약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68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당사자 및 그 적법한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및 그 적법한 승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제 69 조 (협약준수의무 및 면책항변의 배제)

- ① 당사자는 본 협약이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며, 본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서울특별시는 자신이나 그 자산에 대한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있어서 본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의무에 관하여 주권면책의 항변을 하지 않기로 한다.

## 제 70 조 (일부무효)

본 협약의 일부 조항이 특정 관할의 법률에 위법, 무효이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관할의 법률에 따른 그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협약의 나머지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71 조 (비밀유지)

- ① 당사자들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보

의 공개는 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공개일에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된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 7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당사자간의 기타 약정, 또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 **제 73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제 74 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는 본 도로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감리업무
2. 제26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의 승인
4. 기타 본 협약 내용상 위임된 사항

## 제 75 조 (통지)

①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통지나 문서의 송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주소 또는 5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변경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지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참조 : 도로계획과

전화 : 02) 2133-8074

팩스 : 02) 2133-0763

E-Mail : yurilee6@seoul.go.kr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용마터널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226(아천동)

참조 : 관리·운영총괄

전화 : 031) 556-5078

팩스 : 031) 556-5080

E-Mail : yoon0732@hanmail.net

- ② 본 협약에 따른 통지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접 당해 주소에 도달된 때에, 모사전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발송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협약에 따른 통지의 효력은 도달된 때에 발생된다. 다만, 통지가 도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니거나 영업시간 이후에 도달된 경우 그 통지의 효력은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 제 76 조 (본 협약의 승계)

<삭제>

#### 제 77 조 (언 어)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자신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 사업시행자


용마터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진    섭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용마터널 주식회사의 출자자들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법인이사 KB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현 

SK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재 현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롯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석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중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승 

부록 1

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

출 자 자	지 분 율	비 고
발해인프라투자회사	60.0%	
SK건설주식회사	12.4%	
대림산업주식회사	9.6%	
롯데건설주식회사	9.6%	
동부건설주식회사	6.0%	
원하종합건설주식회사	2.4%	
합 계	100%	

부록 2

총 (민 간) 사 업 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1. 조 사 비	-	
2. 설 계 비	25	
3. 공 사 비	1,041	
4. 보 상 비	-	
5. 부 대 비	65	
1) 설 계 감 리 비	1	
2) 시 공 감 리 비	24	
3) 공 사 보 험 료	10	
4) 사업이행보증보험	2	
5) 사후환경영향평가비	1	
6) 환경영향평가용역비	0.43	M/F, C/F
7)교통수요 재분석비	0.25	
8) 금융부대비용	27	
6. 운 영 설 비 비	21	
7. 제 세 공 과 금	-	
8. 영 업 준 비 금	29	
<b>합 계</b>	<b>1,181</b>	

※ 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록 3

추 정 통 행 량

(단위 : 대/일, 양방향)

년 도	소 형	중 형	대 형	합 계
2014	21,200	1,061	101	22,362
2015	25,548	1,276	124	26,948
2016	29,274	1,460	143	30,877
2017	32,853	1,641	157	34,651
2018	36,347	1,819	178	38,344
2019	36,662	1,833	178	38,673
2020	36,975	1,856	178	39,009
2021	37,295	1,870	178	39,343
2022	37,622	1,884	178	39,684
2023	37,941	1,905	185	40,031
2024	38,226	1,912	185	40,323
2025	38,503	1,927	185	40,615
2026	38,780	1,941	185	40,906
2027	39,058	1,955	185	41,198
2028	39,334	1,969	192	41,495
2029	39,620	1,983	192	41,795
2030	39,903	1,997	192	42,092
2031	40,195	2,012	192	42,399
2032	40,480	2,033	192	42,705
2033	40,770	2,040	199	43,009
2034	41,069	2,054	199	43,322
2035	41,360	2,075	199	43,634
2036	41,666	2,083	199	43,948
2037	41,972	2,097	199	44,268
2038	42,263	2,118	206	44,587
2039	42,569	2,132	206	44,907
2040	42,882	2,146	206	45,234
2041	43,187	2,168	206	45,561
2042	43,507	2,175	206	45,888
2043	43,813	2,189	213	46,215
2044	43,813	2,189	213	46,215

※ 소형차 1,028원(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기준, VAT 포함) 징수시 통행량

부록 4

차종별 기준통행료

구 분	차 종	통 행 료
소 형	승용차 소형버스 (16인 이하) 소형화물 (2.5톤 미만)	1,000원
중 형	대형버스 (17인승 이상) 중형화물 (2.5톤 이상~10톤 이하)	1,700원
대 형	대형화물 (10톤 초과)	2,200원

※ 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 요금부과 기준 = 소형 : 중형 : 대형 = 1.0 : 1.7 : 2.2

### 추정 통행료 수입

(단위 : 억원)

년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년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2014	9	13	2030	145	339
2015	95	142	2031	146	351
2016	108	167	2032	147	365
2017	122	193	2033	148	378
2018	133	217	2034	149	392
2019	133	225	2035	150	407
2020	134	234	2036	151	422
2021	136	243	2037	153	438
2022	137	252	2038	154	455
2023	138	262	2039	155	472
2024	139	272	2040	156	489
2025	140	282	2041	157	508
2026	141	292	2042	158	526
2027	142	303	2043	159	546
2028	143	315	2044	141	499
2029	144	327	합 계	4,264	10,326

※ 불변가격은 2001년 5월 1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율 3% 반영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부록 6

운 영 비 용

(단위 : 억원)

년도	불변가격		계
	운영비용	법인세	
2014	3	-	3
2015	20	-	20
2016	22	-	22
2017	21	-	21
2018	22	-	22
2019	23	-	23
2020	21	1	22
2021	24	8	32
2022	25	9	34
2023	21	9	30
2024	41	11	52
2025	22	11	33
2026	24	11	36
2027	48	12	60
2028	27	8	34
2029	25	13	38
2030	23	15	38
2031	25	16	41
2032	28	17	44
2033	27	16	43
2034	41	17	58
2035	25	19	44
2036	26	19	45
2037	25	19	45
2038	29	21	50
2039	27	22	49
2040	26	24	49
2041	27	25	52
2042	62	25	87
2043	28	17	45
2044	38	45	83
합 계	847	407	1,254

※ 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법인세는 22% 적용(주민세 포함)

##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년도	현금유출				현금유입		
	총사업비	운영비	현금유출계	현재가치	통행료수입	현금유입계	현재가치
합계	1,181	1,254	2,434	796	4,264	4,264	796
2003	0		0	0			
2004	16		16	13			
2005	8		8	6			
2006	3		3	2			
2007	3		3	2			
2008	3		3	2			
2009	31		31	18			
2010	76		76	42			
2011	247		247	129			
2012	317		317	156			
2013	317		317	147			
2014	161	3	164	72	9	9	4
2015		20	20	8	95	95	39
2016		22	22	8	108	108	42
2017		21	21	8	122	122	44
2018		22	22	8	133	133	45
2019		23	23	7	133	133	43
2020		22	22	7	134	134	41
2021		32	32	9	136	136	39
2022		34	34	9	137	137	37
2023		30	30	8	138	138	35
2024		52	52	12	139	139	33
2025		33	33	7	140	140	31
2026		36	36	7	141	141	30
2027		60	60	12	142	142	28
2028		34	34	6	143	143	27
2029		38	38	7	144	144	25
2030		38	38	6	145	145	24
2031		41	41	6	146	146	23
2032		44	44	6	147	147	22
2033		43	43	6	148	148	20
2034		58	58	8	149	149	19
2035		44	44	5	150	150	18
2036		45	45	5	151	151	17
2037		45	45	5	153	153	17
2038		50	50	5	154	154	16
2039		49	49	5	155	155	15
2040		49	49	4	156	156	14
2041		52	52	4	157	157	13
2042		87	87	7	158	158	13
2043		45	45	3	159	159	12
2044		83	83	6	141	141	10



## 보 험 내 역

### 1. 공사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포함) 2) 예정이익상실보험	
보 험 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본공사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등에 입은 재물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미숙련, 부주의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비,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분화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도괴, 지반침하, 붕괴, 시공 및 재질 결함 등 2) 예정이익상실보험	전위험 담보
담보지역	건설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공사 착공시점 ~ 공사 완공시점	
보험금액	1) 건설공사보험 - 재물손해 : 공사금액+운영설비비+시공감리비 - 제3자 배상책임보험 : 10억원 2) 예정이익상실보험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 상실분	

### 2. 운영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2) 영업배상책임보험(C.G.L) 3) 기업휴지보험(B.I)	
보 험 목적물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완성토목공사물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C.G.L)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B.I)	
보상내용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미숙련, 부주의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비,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분화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도괴, 지반침하, 붕괴, 시공 및 재질 결함 등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 배상책임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B.I)	전위험 담보
담보지역	사업구간 및 주변	
보험기간	운영기간	
보험금액	1) 완성토목공사물 : 공사금액 2) 영업배상책임보험 : 10억원 연간 총보상한도액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부록 9

자 금 투 입 계 획

(단위 : 억 원)

구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후순위차입금	타인자본
200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	0		
	소계	0	0		
2004	1분기	6	6		
	2분기	10	10		
	3분기	1	1		
	4분기	1	1		
	소계	17	17		
2005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6	6		
	4분기	1	1		
	소계	9	9		
2006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1	1		
	4분기	1	1		
	소계	4	4		
2007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1	1		
	4분기	1	1		
	소계	3	3		
2008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1	1		
	4분기	1	1		
	소계	4	4		
2009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7	7		
	4분기	30	30		
	소계	40	40		
2010	1분기	19	19		
	2분기	10	10		
	3분기	15	15		
	4분기	57	32	25	0
	소계	101	76	25	0
2011	1분기	79	26	53	0
	2분기	81	27	54	0
	3분기	84	28	56	0
	4분기	108	36	72	0
	소계	351	117	234	0
2012	1분기	128	10	21	96
	2분기	115			115
	3분기	119			119
	4분기	127			127
	소계	488	10	21	457
2013	1분기	139			139
	2분기	140			140
	3분기	137			137
	4분기	115			115
	소계	532			532
2014	1분기	108			108
	2분기	115			115
	3분기	77			77
	4분기	37			37
	소계	336			336
합계		1,884	280	280	1,324

## 재 무 모 델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전자파일을 CD-ROM으로 별첨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 간 투 자 사 업

실 시 협 약

2014. 12. 24

서 울 특 별 시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1
제 2 조 (정의) .....	1

##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2
제 4 조 (사업시설의 준공 및 귀속) .....	12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	13
제 6 조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	13
제 7 조 (출자자의 지분 변경 등) .....	13

##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실시계획) .....	15
제 9 조 (행정절차) .....	15
제 10 조 (점유사용권) .....	15
제 11 조 (유물 및 위험물) .....	16
제 12 조 (지장물) .....	16
제 13 조 (민원처리) .....	17
제 14 조 (공사의 도급) .....	17
제 15 조 (공사의 착수) .....	18
제 16 조 (공정관리) .....	18
제 17 조 (기성검사) .....	19
제 18 조 (안전관리) .....	19
제 19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	19
제 20 조 (공사감리) .....	19

제 21 조 (부분 준공) .....	20
제 22 조 (준공검사) .....	21
제 23조 (지체상금) .....	21
제 24 조 (사업이행보증) .....	22

#### 제 4 장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및 통행료

제 25 조 (총사업비) .....	23
제 26 조 (건설분담금) .....	25
제 26-1조(공유이익의 사용) .....	26
제 27 조 (총민간사업비) .....	26
제 28 조 (통행료의 징수) .....	26
제 29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	27
제 30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	28
제 31 조 (사업수익률) .....	28
제 32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28
제 33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	29
제 34 조 (통행료 징수 방법) .....	30

#### 제 5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	30
제 36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	31
제 37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31
제 38 조 (운영비용) .....	32
제 39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	33

## 제 6 장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제 40 조 (통행료수입 상한 및 환수) .....	33
제 41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	34
제 42 조 <삭제> .....	34
제 43 조 <삭제> .....	34
제 44 조 (재정지원의 절차) .....	34
제 45 조 (서울특별시의 비재정적 지원) .....	35
제 46 조 (자금차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	36

##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47 조 (위험배분의 원칙) .....	37
제 4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37
제 49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38
제 50 조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	39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41

##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52 조 (무상사용기간 만료) .....	42
제 53 조 (협약의 해지) .....	43
제 54조 (매수청구권) .....	45
제 55 조 (해지시지급금) .....	45
제 56 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	46
제 57 조 (협약 종료의 효과) .....	48
제 58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49

## 제 9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59 조 (양도) .....	49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50

## 제 10 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제 61 조 (준거법) .....	51
제 62 조 (분쟁의 해결) .....	51
제 63 조 (분쟁금액) .....	51
제 64 조 (중재) .....	51
제 65 조 (합의관할) .....	52

##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66 조 (협약의 효력) .....	52
제 67 조 (해석) .....	53
제 68 조 (문서의 우선 순위) .....	53
제 69 조 (협약의 변경) .....	54
제 70 조 (협약의 수익자) .....	54
제 71 조 (협약준수의무 및 면책항변의 배제) .....	54
제 72 조 (일부무효) .....	55
제 73 조 (비밀유지) .....	55
제 7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	56
제 75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	56
제 76 조 (권한의 위임) .....	56
제 77 조 (통지) .....	56
제 78 조 (언어) .....	57



## 부 록

1. 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 .....	59
2. 총사업비 .....	60
3.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	61
4. 총민간사업비 .....	62
5. 추정통행량 .....	63
6. 추정통행량(영업소별) .....	64
7. 차종별 기준통행료 .....	65
8. 추정통행료수입 .....	66
9. 운영비용 .....	67
9-1. 항목별 운영비용 .....	68
10. 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	69
11. 보험내역 .....	70
12. 자금투입계획 .....	71
13. <삭제> .....	72
14. 통행료수입의 상한액 .....	73
15. 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 .....	74

# 변경 실시 협약

서울특별시와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 12.4km)과 관련하여, 2002년 6월 27일 체결되고 2006년 6월 22일과 2009년 4월 15일 각 변경된 실시협약(이하 “기존협약”이라 한다)을 방재/환기/전기시설 및 사당IC교 등의 설계변경과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한 공기연장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24일 다음과 같이 변경 협약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감리자”라 함은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감리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 함은 본 도로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가 계획하고 있는 총연장 22.9km의 도시고속도로(4공구 내지 8공구)를 말한다.
5. “건설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586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7. “건설분담금”이라 함은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달리 변경되지 않는 한, 그 금액 및 지급일정 등은 부록 3 (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정한 바와 같다.
8.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11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9. “공사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11. “공사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로서,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않는 한, 부록 2 (총사업비)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12. “공사착수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등 제반 법률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17.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권리로서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8. “관악교차로”라 함은 사업제안서에 관악IC로 기재된 교차로를 말한다.
19. “금융완결”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최초인출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20. “기준통행료”라 함은 제30조에 정한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말한다.
21.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2. “담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3. “당사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24. “대리은행”이라 함은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인출 및 상환, 자금차입계약의 사후관리 기타 자금차입계약의 당사자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5. “대주단”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 또는 연기금 등을 말한다.
26. “대체사업자”라 함은 제60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7. “도로부대시설”이라 함은 본 도로에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및 광통신관로 등 본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
28.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제54조,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본 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말하며, “매수”라 함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매수청구인정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매수를 인정하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
30. “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1.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 함은 본 협약의 해지에 있어서 부록 10 (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해지일 현재의 가치를 말한다.
32.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36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33.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09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말하며, 그 개정된 시행령을 포함한다.
3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1-2호(2001년 4월 7일자)로 공고한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개정된 계획을 포함한다.

35. <삭제>
36. <삭제>
37. “본 도로”라 함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실시계획으로 특정된 총연장 12.4km(금천영업소에서 선암영업소까지 사이의 구간)의 도시고속도로(5, 6, 7공구)를 말한다.
38.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9.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된 모든 토지나 지역을 말한다.
40.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도로와 도로부대시설을 말한다.
41. “본 협약”이라 함은 본 실시협약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42. “분기”라 함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43.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의미하며, 제50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한다.
44.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라 함은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45.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라 함은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46. “사당교차로”라 함은 사업제안서에 사당IC로 기재된 교차로를 말한다.
47.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8.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말한다.
49.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출자자들이 설립한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50. “사업연도”라 함은 운영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최종 사업연도는 운영기간 최종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운영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1.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2000년 2월 28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2001년 1월 19일자로 제출한 수정사업제안서를 말한다.
52. “서울특별시”라 함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53. “선암영업소”라 함은 사업제안서에 선암영업소로 기재된 영업소를 말한다.
54. “소비자물가변동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며, 당사자들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제63조 내지

제65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산출된 것과 가장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된다.

55.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5969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57. “금천영업소”라 함은 사업제안서에 시흥영업소로 기재된 영업소를 말한다.
58. “실시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과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59. “운영개시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의 징수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60. “운영기간”이라 함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1. “운영비용”라 함은 제38조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62.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63. “유물”이란 대한민국 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부지나 본 사업시설 내, 그 위나 아래 또는 그 근처에 존재하는 고고학적, 역사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유물을 말한다.



64.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65. <삭제>
66. “자금차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7.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사이에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 67-1. “재무적출자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로서, 본 사업의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순수출자자를 말한다.
- 67-2.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라 함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출자지분 변경 이외의 자금재조달 행위가 없는 경우를 말함)은 자금재조달 대상에서 제외한다.
68. “적정가치”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총민간사업비를 해지일의 가격으로 환산(각 지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각 지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민간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69. “전문기관”이라 함은 수시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정되어 회계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70. “제반공급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에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 및 송유관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71.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72.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공사착수일로부터 102개월이 되는 날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연장된 날을 포함한다.
73. “준공일”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이 실제 준공된 날로서 준공확인필증상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74. “준공전사용인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인가받는 것을 말한다.
75. “준공확인필증”이라 함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6.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의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로서 유물과 위험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77. “착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개시하기로 예정된 날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연장된 날을 포함한다.
78.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금액으로서 제 27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79.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될 금액을 말한다.
80. “총선순위채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타인자본(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국내외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조달한 금액을 포함하며, 투자적격등급이라 함은 BBB-의 등급을 말함)으로서 해지일 현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 총액 (조기상환 수수료를 포함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서 자금차입계약에 정한 정상이자율을 공제한 금액은 총선순위채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1. “추정통행량”이라 함은 부록 5 (추정통행량)에 기재된 추정통행량을 말한다.
82. “추정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동안 통행료 징수로 얻은 추정 수입으로서 부록 8 (추정통행료수입)에 기재된 바와 같다.
83. “출자자”라 함은 부록 1(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에 출자자로 기재된 자, 기타 수시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게 될 자를 말한다.
84. “통행료”라 함은 본 협약과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통행차량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통행료를 말한다.
85. “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동안 통행료의 징수로 얻은 실제 수입을 말한다.
- 85-1. “통행료수입의 상한”이라 함은 사업수익률이 8.48%에 이르는 경우의 통행료수입으로 부록 14(통행료수입의 상한액)에 기재된 바와 같다.
86. “해지사유발생통지”라 함은 제53조 제5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87. “해지시지급금”이라 함은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88. “해지일”이라 함은 제53조 제5항에서 정한 날을 말하며, 매수청구인정일

을 포함한다.

89. “해지통지”라 함은 제53조 제5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90. <삭제>

91. <삭제>

92. <삭제>

93. “회사채유통수익률”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른 이차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이고, 잔존 만기가 3년인 공모 무보증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되며, 후자에 있어서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된다.

## 제 2 장 기 본 약 정

###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부지와 본 사업시설의 무상 사용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4.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영위

②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 4 조 (사업시설의 준공 및 귀속)

① 사업시행자는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은 아래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② 서울특별시는 준공확인필증(부분준공에 따른 준공확인필증 포함)을 발급

하는 즉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은, 달리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본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통행료징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2.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통행료징수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 제 6 조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출자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법인의 설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 7 조 (출자자의 지분 변경 등)

- ① 출자자 및 그 출자예정비율은 부록 1(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에 기재된 바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전까지 전체출자지분중 5%이상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출자자간 합병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출자자간의 합병에 의한 지분을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역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대주단에 게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사업시행자는 본 변경협약 체결이후 사업시행법인의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동 등 자금재조달을 시행할 경우, 민간투자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시행하고, 주무관청측 공유이익(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측정은 자금재조달 승인시점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기로 한다)은 통행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 제 8 조 (실시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공법변경 등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동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 9 조 (행정절차)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며,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제 10 조 (점유사용권)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제세공과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 등을 처리하기로 한다.



## 제 11 조 (유물 및 위험물)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에 통지하며, 유물이 발견된 동일한 위치와 조건대로 유물을 보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유물을 발굴하거나 위험물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본 사업부지내 출입을 허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 제 12 조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장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이설 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간중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지장물의 이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비용의 처리방법 및 공사기간의 연장 등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3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은 서울특별시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단, 서울특별시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 및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총사업비를 증가시킴 없이 처리한다.

### 제 14 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002년 3월 16일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47-14)에 의한 적격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 방법 및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감리자는 위 하수급인이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 과정에서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의 기성부분 중 체불된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제 15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착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계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또는 제2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예정일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착공예정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러한 사유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착공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 16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 일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에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의 전체 공정과 당해 연도 예정공정표 및 당해 연도 시공부분이 표시된 노선도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매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누계 공정이 실시계획에 정한 공정계획에 대비하여 90% 미만인 경우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정상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한다.

### 제 17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로부터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 18 조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 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유지보수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 19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본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할 제반공급시설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상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운영 및 수익 방법 등에 관해 사전에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정하기로 한다.

### 제 20 조 (공사감리)

-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

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거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매분기별 감리비를 지급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에게 감리업무현황에 대한 정기보고와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품질 및 안전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자로 하여금 감리업무와 관련된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제 21 조 (부분 준공)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시설의 전체 준공 이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의 준공 부분에 대하여 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부분준공에 따른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부분준공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간은 운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통행료수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이나 지급예정된 건설분담금과의 상계, 최초통행료 결정시 반영 등 부분준공에 따른 통행료수입의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22 조 (준공검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6개월 전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준공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리자의 예비준공검사를 거친 후 본 사업시설의 준공 3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의 예비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각 단계에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동 미비사항을 완결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준공확인필증 교부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되,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통행료 징수하는 기간은 운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 23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의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준공예정일의 익일부터 준공일까지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당 지체상금은 총사업비에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기집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 24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상당하는 보증금("사업이행보증금"이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갈음될 수 있음)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그 발급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시설의 전체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거나 제53조 제2항 내지 제4항(단, 제53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제외)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제54조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이행보증금(혹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 4 장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및 통행료

### 제 25 조 (총사업비)

- ①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금 7,928억원(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 2(총사업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 ②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1.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가.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공사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라. 광역상수도 인접구간의 발파공법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2.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3.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4.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5.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6. 본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현재 산출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2000년 11월 24일로 하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④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 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재정지원금의 지급, 통행료의 조정,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당해 총사업비 변경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거나 총사업비를 절감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한 경우 이를 이유로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 ⑦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 ⑧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건설분담금 지급시 이를 감안하여 지급하거나 최초통행료 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제 26 조 (건설분담금)**

- ① 서울특별시는, 제25조 제1항에 정한 총사업비(2000년 11월 24일 기준 금7,928억원)가 변경되지 않는 한, 건설분담금으로 금2,686억원(2000년 11월 24일 기준)을 부록 3 (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 지급하여야 할 건설분담금을 당해 분기 종료일 직전 월의 말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사업시행자는 위 건설분담금 지급기일의 30일 이전까지 서울특별시에 예정된 건설분담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다만, 실제 공정율이 계획된 공정율보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실제 공정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설분담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 ③ 위 제2항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공사착수일로부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누계 공정이 실시계획에 정한 공정계획에 대비하여 90% 미만인 경우 그 후 예정된 건설분담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그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는 부진공정이 만회되었음이 확인된 분기의 차분기분 건설분담금 지급시 동 지급연기된 건설분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④ 서울특별시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건설분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당해 분기 종료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로 계산되는 이자를 지급한다.

- ⑤ 건설분담금 지급일정과 제②항 단서조항에 따른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분담금 또는 최초통행료 산정시 그 효과를 정산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 제 26-1 조 (공유이익의 사용)

채무적출자자 영입과 자본구조변경 등의 자금재조달로 인한 서울시 공유이익 금액 527억원(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의 정산반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차 협약변경 시 관악IC 지하화에 따른 증액 공사비 : 471억원
2. 제1호의 공사비 증가로 인한 운영기간 완성토목공사물 보험료 28억원 증액에 따른 건설분담금 차감액 11억원
3. 금번 협약변경 시 방재·전기설비 등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공사비(160억원) 중 감액 : 45억원

#### 제 27 조 (총민간사업비)

- ①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에서 건설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총민간사업비”)을 자기자본 혹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자기자본 선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25조 제1항에 정한 총사업비(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금 7,928억원)와 제26조 제1항에 정한 건설분담금(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금2,686억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총민간사업비는 금5,242억원(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 4 (총민간사업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제 28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투자한 총민간사업비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

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는 제29조 내지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전부가 준공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인가를 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징수할 통행료를 위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되,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9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 ① 최초통행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 및 제31조의 사업수익률에 따라 산출된 제30조의 차종별 기준통행료(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이하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기준통행료를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최초 통행료를 결정한다. 다만, 최초 통행료가 기준 통행료 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결정되는 경우 그 절상(하)된 부분은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차기 통행료 조정시 반영한다.
- ③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통행료는 제1항의 기준통행료에 운영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누적적용(연간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의 변동율을 적용한다)하여 결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최초통행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1. 통행료
2. 통행료의 산출기초자료

3. 통행료의 징수방법
4.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5.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 30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차종별 기준통행료는 부록 7(차종별 기준통행료)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제 31 조 (사업수익률)

기준통행료 산정을 위하여 적용될 세후실질사업수익률은 연 6.57%로 한다.

### 제 32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 제 33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하고, 동 손실 또는 비용 중 서울특별시의 부담분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삭제>

3. <삭제>

4.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본 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 및 본 도로와 유사한 위치 및 운영조건을 가진 여타 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감안하되, 본 협약 체결 당시 본 도로가 가지는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 운영자금의 부족 및 본 도로의 통행료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 않아야 한다.

2.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무상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하며,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운영자금의 부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의 협의 기간 동안 통행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기관에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요청하며,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통행료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3의 전문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3의 전문기관이 위와 같이 통행료의 산정을 의뢰 받은 후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통행료의 산정결과를 당사자 모두에게 문서로 통보토록 하며,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 34 조 (통행료 징수 방법)

- ① 통행료의 징수방식은 유인식통행료징수방식과 전자요금징수방식(ETCS)을 혼용하기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 5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35 조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시설물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위 제3항의 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보수를 서울특별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⑤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 받아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6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입체적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도로의 교통관리체계를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다른 구간과 연계할 수 있으며, 이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목적, 이용에 따른 편익,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추가 협약토록 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를 직접 설치하여 시행한다.

### 제 37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의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시설에 관한 전년도의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교통량 현황 및 본 사업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 38 조 (운영비용)

-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금3,529억원으로 한다.

- ② 부록 9 (운영비용)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한 경우 이외에는 통행료의 인상,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sup>1)</sup> 및 서울특별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 9 (운영비용)에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2.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서울특별시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 3.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감분

- ③의2. 사업시행자의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세법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

---

1) 본 협약 제50조 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사자에게 통행료의 조정,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통행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⑤ 환기시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반영이 유보된 터널설비보수비와 전력비 등 환기시설 관련 운영비용 항목은 설계변경 완료 후 재산정하고,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운영비용을 최초통행료 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 제 39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익금은 다음 연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

## 제 6 장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 제 40 조 (통행료수입의 상한 및 환수)

운영기간 중 매년도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을 검토한 결과, 통행료수입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은 경우 매 일년 단위로 부록 14 (통행료수입의 상한액)의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1.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시기가 도래한 금액에 충당
2. 통행료 인하
3. 무상사용기간 단축
4. 서울특별시로의 환수

#### 제 41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본 협약 체결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해 본 협약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된 통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적으로 감면하게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실제 본 도로를 통행한 감면 대상차량의 실적치를 토대로 그 감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통행료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되, 당사자들은 이와 병행하여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부족액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재정지원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에 있어서는 제33조 제2항 각 호의 방식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보전한다. 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통행료수입 감소분을 보전한다.

#### 제 42 조 <삭제>

#### 제 43 조 <삭제>

#### 제 44 조 (재정지원의 절차)

- 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본 협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정지원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재정지원 소요금액을 확정하며, 동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유 및 자금계획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

고, 서울특별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행여부 및 방침을 결정한 후 동 방침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정지원을 실행하기로 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정한 지급기한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한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요청일이 속한 연도의 차기연도 개시일을 이자기산일로 하여 실제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시기 경과일 다음 날로부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는 건설분담금 또는 건설기간 중 총사업비변경으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운영개시일 이후에 지급될 경우, 동 지급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급금이 서울특별시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45 조 (서울특별시의 비재정적 지원)**

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 체결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② <삭제>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

요한 인·허가 등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수입허가 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 등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제 46 조 (자금차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될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다는 사실과 그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등록된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③ 당사자가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1. 공사기간
  - 2. 통행료 산정 및 조정기준
  - 3.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 4. 사업수익률
  - 5.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사업시행자의 자본증자의 경우 그 납

- 입시기와 납입금액
- 6.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매수청구권
- 7. 사업시행자의 변경

## 제 7 장 위험의 배분

### 제 47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50조에 정한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 제 4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 사업시설에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보수를 행하지

않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계약(들)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누적지체상금이 사업이행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 49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본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삭제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4. 서울특별시의 보상업무 등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5. 본 협약 제4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방침 등(통행료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통행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6.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서울특별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운영기간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제 50 조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삭제>
  3.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



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협약 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한 위험물이나 유물 또는 기타 지장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 전반의 파업
3.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

③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80%의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나. 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④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사유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한다.
2. 본 사업시설의 제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본조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본조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처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융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①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서면 통지("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한다.

②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수령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통지("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를 한다.

- ③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그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분쟁은 제63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제3항에 따라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 ⑤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내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 제 8 장    협약의 종료

### 제 52 조    (무상사용기간 만료)

- ① 본 협약은, 제53조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 ②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3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에 인계한다.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3 조 (협약의 해지)

① 서울특별시에 의한 중도해지 - 제4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

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유물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구간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당사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한 중도해지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금융완결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중도해지되고 120일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가. 동 사유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나. 동 사유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다. 동 사유가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 ④ 본 조에 따라 당사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⑤ 당사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일(“해지일”)에 발생한다.

#### 제 54조 (매수청구권)

- ① 본 협약 제53조에 정한 사유가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매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별도로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②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가액(“매수가액”)은 가액산정 당시의 잔여 무상사용기간 기대수익을 사업수익율로 현재가치화한 금액(단,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으로 한다. 잔여기간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는 본 협약 부록 10(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 제 55 조 (해지시지급금)

- ① 본 협약이 제53조 제1항(제53조 제3항 제3호 나목 포함)에 따라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본 조의 해석에 있어서 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의미함)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본 협약이 제53조 제2항(제53조 제3항 제3호 가목 포함) 및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본 협약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제53조 제3항(제53조 제3항 제3호 가목, 나목 제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④ 본 협약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제53조 제3항(제5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 나목 제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 제 56 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 ①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수령한 어떠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게 해지일 현재까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서울특별시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한다.
- ② 당사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날로부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위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통보한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위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③ 당사자간에 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협의하여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한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63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 중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하되,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서 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범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단, 상계 후 지급될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이 총선순위채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 제 57 조 (협약 종료의 효과)

- ①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매수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매수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무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서울특별시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서울특별시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매수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관리운영 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매수된 경우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이전한다.

### 제 58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는 종료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 9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 제 59 조 (양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을 위하여 대주단에게 본 협약 및 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사업시행자의 동산, 부동산, 금전채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① 서울특별시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대체사업자(“대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대주단(또는 대리은행)은 서면 통지로 예비대체사업자(“예비대체사업자”)를 서울특별시에 추천(“추천통지”)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는 추천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필요한 경우 예비대체사업자 포함)에게 예비대체사업자 추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수용한 예비대체사업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지받은 날, 운영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지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운영권이 등록된 날(이하 양날을 각각 “대체일”이라 한다)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승계하며, 대체일 이후에는 대체사업자를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대체사업자는 그 대체사업자가 대체일 현재 존재했던 본 협약의 해지 사유 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합의하기로 한다.

## 제 10 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 제 61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제 62 조 (분쟁의 해결)

- ①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분쟁을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제63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 63 조 (분쟁금액)

- ①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금액은 그 분쟁이 그 금액을 수령할 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 유통수익율로 계산되는 이자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 제 64 조 (중재)

-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③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가능한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최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 ④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제 65 조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 11 장 기타 사항

#### 제 66 조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의 효력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 ② 기존협약의 내용 중 본 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본 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 제 67 조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서,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며 그 개정을 포함한다.
- ②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③ 본 협약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본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 ⑤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제 68 조 (문서의 우선 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해석된다.
  1.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2. 본 협약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제 69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별도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투자법의 취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성의 확보 및 본 협약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70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당사자 및 그 적법한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및 그 적법한 승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제 71 조 (협약준수의무 및 면책항변의 배제)

- ① 당사자는 본 협약이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며,

본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서울특별시는 자신이나 그 자산에 대한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있어서 본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의무에 관하여 주권면책의 항변을 하지 않기로 한다.

## 제 72 조 (일부무효)

본 협약의 일부 조항이 특정 관할의 법률에 위법, 무효이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관할의 법률에 따른 그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협약의 나머지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73 조 (비밀유지)

- ① 당사자들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 2. 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공개일에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 3.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된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 7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당사자간의 기타 약정, 또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 제 75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제 76 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는 본 도로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감리업무
2.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의 승인
4. 기타 본 협약 내용상 위임된 사항

#### 제 77 조 (통지)

①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통지나 문서의 송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의 주소 또는 5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변경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지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참조 : 민자사업팀 주무관

전화 : 02) 2133-8073

팩스 : 02) 2133-0736

E-Mail : kjungsik@seoul.go.kr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방배동 원일빌딩 3층)

참조 : 경영관리팀장

전화 : 02) 6205-3600

팩스 : 02) 6205-3610

E-Mail : ocjgf@doosan.com

- ② 본 협약에 따른 통지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접 당해 주소에 도달된 때에, 모사전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발송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협약에 따른 통지의 효력은 도달된 때에 발생된다. 다만, 통지가 도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니거나 영업시간 이후에 도달된 경우 그 통지의 효력은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 제 78 조 (언 어)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서 울 특 별 시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인)

강 남 순 환 도 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조 계 성 (인)

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

출 자 자	지 분 율	비 고
한국인프라이호투자회사	76.5%	
한국산업은행	13.5%	
두산건설주식회사	2.87%	
대림산업주식회사	1.15%	
롯데건설주식회사	1.15%	
지에스건설주식회사	1.15%	
현대건설주식회사	1.15%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1.15%	
금호산업주식회사	0.57%	
동부건설주식회사	0.57%	
주식회사파라다이스글로벌	0.24%	
합 계	100%	

## 총 사 업 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1. 조 사 비	-	
2. 설 계 비	159	
3. 공 사 비	7,181	
4. 보 상 비	-	
5. 부 대 비	399	
1) 시 공 감 리 비	132	
2) 설 계 감 리 비	3	
3) 공 사 보 험 료	87	
4) 사업이행보증보험	13	
5) 금융부대비용	164	
6. 운 영 설 비 비	72	
7. 제 세 공 과 금	32	
8. 영 업 준 비 금	85	
<b>합 계</b>	<b>7,928</b>	

※ 2000년 11월 24일 기준 불변가격

※ 공사비는 터널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암버력 유용에 따른 공제금액을 반영

###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불 변 가 격	경 상 가 격
2001년	소 계	88	91
2002년	소 계	29	30
2007년	소 계	19	24
2008년	소 계	85	109
2009년	소 계	291	382
2010년	소 계	290	390
2011년	소 계	500	706
2012년	소 계	457	659
2013년	1 분기	106	153
	2 분기	63	92
	3 분기	-	-
	4 분기	415	609
	소 계	584	854
2014년	1 분기	-	-
	2 분기	-	-
	3 분기	-	-
	4 분기	49	75
	소 계	49	75
2015년	1 분기	49	76
	2 분기	49	76
	3 분기	49	77
	4 분기	49	78
	소 계	196	307
2016년	1 분기	49	79
	2 분기	49	80
	소 계	98	159
합 계		2,686	3,786

※ 불변가격은 2000년 11월 24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2013년 2분기까지는 물가상승률 실적치, 2013년 3분기부터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4% 반영

※ 실제 건설분담금은 지급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 소비자 물가변동율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

부록 4

총 민 간 사 업 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1. 조 사 비	-	
2. 설 계 비	-	
3. 공 사 비	4,689	
4. 보 상 비	-	
5. 부 대 비	396	
1) 시 공 감 리 비	132	
2) 설 계 감 리 비	-	
3) 공 사 보 험 료	87	
4) 사업이행보증보험	13	
5) 금융부대비용	164	
6. 운 영 설 비 비	72	
7. 체 세 공 과 금	-	
8. 영 업 준 비 금	85	
합 계	5,242	

※ 2000년 11월 24일 기준 불변가격

## 추 정 통 행 량

(단위:대/일, 양방향)

년 도	소 형			중 형		합 계
	승용차	소형버스	소형화물	대형버스	중형화물	
2016	99,810	6,542	7,925	2,264	6,264	122,805
2017	106,088	6,950	8,420	2,406	6,629	130,493
2018	112,773	7,385	8,946	2,556	7,014	138,674
2019	133,209	8,718	10,562	3,018	8,248	163,755
2020	141,629	9,264	11,223	3,206	8,730	174,052
2021	142,465	9,279	11,303	3,224	8,760	175,031
2022	143,307	9,293	11,384	3,242	8,790	176,016
2023	144,155	9,308	11,465	3,260	8,820	177,008
2024	145,007	9,323	11,546	3,279	8,850	178,005
2025	145,865	9,338	11,628	3,297	8,882	179,010
2026	146,727	9,353	11,711	3,315	8,912	180,018
2027	147,594	9,368	11,795	3,333	8,943	181,033
2028	148,467	9,383	11,879	3,352	8,974	182,055
2029	149,345	9,398	11,963	3,370	9,005	183,081
2030	150,229	9,412	12,048	3,388	9,037	184,114
2031	150,695	9,418	12,080	3,378	9,041	184,612
2032	151,165	9,423	12,112	3,367	9,046	185,113
2033	151,634	9,429	12,143	3,357	9,050	185,613
2034	152,107	9,435	12,174	3,346	9,054	186,116
2035	152,579	9,440	12,206	3,337	9,059	186,621
2036	153,055	9,446	12,238	3,326	9,063	187,128
2037	153,531	9,451	12,270	3,316	9,069	187,637
2038	154,008	9,457	12,302	3,305	9,073	188,145
2039	154,487	9,462	12,334	3,295	9,077	188,655
2040	154,968	9,468	12,366	3,285	9,082	189,169
2041	155,222	9,460	12,383	3,289	9,073	189,427
2042	155,222	9,460	12,383	3,289	9,073	189,427
2043	155,222	9,460	12,383	3,289	9,073	189,427
2044	155,222	9,460	12,383	3,289	9,073	189,427
2045	155,222	9,460	12,383	3,289	9,073	189,427
2046	155,222	9,460	12,383	3,289	9,073	189,427

※ 소형차 1,113원(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VAT 포함) 징수시 통행량



### 추 정 통 행 량 (영업소별)

(단위:대/일, 양방향)

년도	통 행 량		년도	통 행 량	
	금 천	선 암		금 천	선 암
2016	70,400	52,405	2032	103,134	81,979
2017	74,191	56,302	2033	103,431	82,182
2018	78,185	60,489	2034	103,728	82,388
2019	91,549	72,206	2035	104,028	82,593
2020	96,477	77,575	2036	104,328	82,800
2021	97,066	77,965	2037	104,630	83,007
2022	97,659	78,357	2038	104,931	83,214
2023	98,257	78,751	2039	105,234	83,421
2024	98,857	79,148	2040	105,539	83,630
2025	99,462	79,548	2041	105,706	83,721
2026	100,070	79,948	2042	105,706	83,721
2027	100,683	80,350	2043	105,706	83,721
2028	101,299	80,756	2044	105,706	83,721
2029	101,919	81,162	2045	105,706	83,721
2030	102,542	81,572	2046	105,706	83,721
2031	102,837	81,775			

※ 소형차 1,113원(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VAT 포함) 징수시 통행량

차종별 기준통행료

구 분	차 종	분류기준	통 행 료
경 차	-	배기량 1,000cc미만차량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1,113원
소 형	승용차		1,113원
	소형버스(16인 이하) 소형화물(2.5톤 미만)	2축 차량 윤폭 : 279.4mm이하	
중 형	대형버스(17인승 이상) 중형화물(2.5톤이상~10톤이하)	2축 차량 윤폭 : 279.4mm초과	1,892원

※ 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 요금부과 기준 = 소형 : 중형 = 1.0 : 1.7

추정 통행료수입

(단위 : 억원)

년 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년 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2016	295	467	2032	715	2,129
2017	505	834	2033	717	2,220
2018	537	922	2034	719	2,315
2019	634	1,133	2035	721	2,414
2020	674	1,252	2036	723	2,517
2021	677	1,309	2037	725	2,624
2022	681	1,369	2038	727	2,736
2023	685	1,432	2039	728	2,853
2024	689	1,497	2040	730	2,975
2025	692	1,566	2041	731	3,098
2026	696	1,638	2042	731	3,222
2027	700	1,713	2043	731	3,351
2028	704	1,791	2044	731	3,485
2029	708	1,873	2045	731	3,624
2030	712	1,959	2046	278	1,435
2031	714	2,042	<b>합계</b>	<b>20,741</b>	<b>63,795</b>

※ 불변가격은 2000년 11월 24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2013년 2분기까지는 물가상승을 실적치, 2013년 3분기부터는 연평균 물가상승율 4% 반영

※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 운 영 비 용

(단위:억원)

년 도	불 변 가 격		
	운영비용	법 인 세	계
2016	72		72
2017	104		104
2018	102		102
2019	102		102
2020	122		122
2021	107		107
2022	115	17	132
2023	105	39	144
2024	106	47	153
2025	133	52	185
2026	114	58	172
2027	107	66	173
2028	107	73	180
2029	107	81	188
2030	158	86	244
2031	123	91	214
2032	108	99	207
2033	107	105	212
2034	108	109	217
2035	144	111	255
2036	121	113	234
2037	108	118	226
2038	118	122	230
2039	108	121	229
2040	135	122	257
2041	116	122	238
2042	110	124	234
2043	110	125	234
2044	109	125	235
2045	172	120	292
2046	71	92	163
합계	3,529	2,334	5,862

※ 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 법인세 등은 24.2% 적용

※ 운영비용은 제38조 제5항에 따라 환기시설 설계변경 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함.

## 항목별 운영비용

(단위:억원, 불변가격)

년도	합계	인건비	경비	유지관리비							전력비	보험료	유형자산취득
				소계	구조물점검비	상시보수비	교량보수비	터널보수비	포장보수비	등기구교체비			
계	3,529	532	296	504	136	54	41	92	69	112	1,326	540	331
1년	72	14	7	5	3	0		1		2	27	11	8
2년	104	19	10	7	3	0		1		4	44	17	6
3년	102	17	10	8	3	1		1		4	44	17	6
4년	102	17	10	8	2	2	0	1		4	44	17	6
5년	122	17	10	7	2	2	0	1		4	44	17	26
6년	107	17	10	10	3	2	0	1	0	4	44	18	9
7년	115	17	10	10	2	2	0	2	0	4	44	18	16
8년	105	17	10	10	1	2	1	2	1	4	44	18	6
9년	106	17	10	11	3	2	1	2	0	4	44	18	6
10년	133	17	10	18	10	2	1	2	0	4	44	18	26
11년	114	17	10	16	7	2	1	2	0	4	44	18	9
12년	107	17	10	11	2	2	1	2	1	4	44	18	6
13년	107	17	10	12	3	2	1	2	0	4	44	18	6
14년	107	17	10	11	2	2	1	2	0	4	44	18	6
15년	158	18	10	33	9	2	1	11	5	4	44	18	35
16년	123	18	10	24	6	2	1	8	3	4	44	18	9
17년	108	18	10	12	3	2	1	2	1	4	44	18	6
18년	107	18	10	12	2	2	2	2	0	4	44	18	6
19년	108	18	10	12	3	2	2	2	0	4	44	18	6
20년	144	18	10	28	10	2	2	10	0	4	44	18	26
21년	121	18	10	23	8	2	2	7	0	4	44	18	9
22년	108	18	10	12	2	2	2	2	1	4	44	18	6
23년	118	18	10	13	3	2	2	2	0	4	44	18	16
24년	108	18	10	12	2	2	2	2	0	4	44	18	6
25년	135	18	10	20	10	2	2	2	0	4	44	18	26
26년	116	18	10	17	7	2	2	2	0	4	44	18	9
27년	110	18	10	14	3	2	3	2	1	4	44	18	6
28년	110	18	10	13	2	2	3	2	0	4	44	18	6
29년	109	18	10	14	3	2	3	2	0	4	44	18	6
30년	172	18	10	65	11	2	3	11	34	4	44	18	16
31년	71	7	4	37	6	1	1	7	21	1	17	7	-

※ 실시협약 제38조 제5항에 따라 반영이 유보된 환기시설 관련 운영비용 항목은 환기시설 설계변경 완료 후 재산정하여 최초통행료 산정시 반영

## 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년 도	현금 유 출				현금 유 입			
	① 총사 업비	② 운영 비용	현금유출계 (①+②)	현재 가치	③통행료 수 입	④건설 분담금	현금유입계 (③+④)	현재 가치
합계	7,928	5,862	13,791	4,541	20,741	2,686	23,427	4,541
2001	88		88	82		88	88	82
2002	95		95	83		29	29	25
2003	12		12	10				
2004	12		12	9				
2005	12		12	9				
2006	12		12	8				
2007	81		81	51		19	19	12
2008	322		322	192		85	85	51
2009	641		641	359		291	291	163
2010	965		965	508		290	290	153
2011	1,092		1,092	539		500	500	247
2012	939		939	435		457	457	212
2013	550		550	239		584	584	253
2014	1,175		1,175	479		49	49	20
2015	1,601		1,601	613		196	196	75
2016	331	72	403	145	295	98	393	141
2017		104	104	35	505		505	170
2018		102	102	32	537		537	170
2019		102	102	30	634		634	188
2020		122	122	34	674		674	187
2021		107	107	28	677		677	177
2022		132	132	32	681		681	167
2023		144	144	33	685		685	157
2024		153	153	33	689		689	148
2025		185	185	37	692		692	140
2026		172	172	33	696		696	132
2027		173	173	31	700		700	125
2028		180	180	30	704		704	118
2029		188	188	29	708		708	111
2030		244	244	36	712		712	105
2031		214	214	29	714		714	99
2032		207	207	27	715		715	93
2033		212	212	26	717		717	87
2034		217	217	25	719		719	82
2035		255	255	27	721		721	77
2036		234	234	24	723		723	73
2037		226	226	21	725		725	68
2038		236	236	21	727		727	64
2039		230	230	19	728		728	61
2040		257	257	20	730		730	57
2041		238	238	17	731		731	54
2042		234	234	16	731		731	50
2043		234	234	15	731		731	47
2044		235	235	14	731		731	44
2045		292	292	17	731		731	41
2046		163	163	9	278		278	15
통행료	소형차 1,113 원/대 (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기준, VAT포함)				실질수익률		6.57 %	

## 보 험 내 역

### 1. 공사기간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포함) 2) 예정이익상실보험	
보 험 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본공사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등에 입은 재물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미숙련, 부주의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비,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분화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도괴, 지반침하, 붕괴, 시공 및 재질 결함 등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전위험 담 보
담보지역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공사 착수시점 ~ 공사 완공시점	
보험금액	1) 건설공사보험 : - 재물손해 : 공사금액 - 제3자 배상책임보험 : 2억원/사고당 보상한도액 2) A.L.O.P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 상실분	

### 2. 운영기간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2) 영업배상책임보험(C.G.L) 3) 기업휴지보험(L.O.P)	
보 험 목적물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완성토목공사물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C.G.L)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L.O.P)	
보상내용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미숙련, 부주의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비,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분화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도괴, 지반침하, 붕괴, 시공 및 재질결함 등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 배상책임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L.O.P)	
담보지역	강남순환고속도로 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운영기간	
보험금액	1) 완성토목공사물 : 공사금액 2) C.G.L : 5억원 연간 총보상한도액 3) L.O.P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 자 금 투 입 계 획

(단위:억 원)

구 분		총투자비	자기자본	후순위채	타인자본	건설분담금	
						불변금액	
2001년	소계	91				91	88
2002년	소계	101	71			30	29
2003년	소계	13	13				
2004년	소계	14	14				
2005년	소계	14	14				
2006년	소계	14	14				
2007년	소계	99	75			24	19
2008년	소계	414	304			109	85
2009년	소계	843	402	15	44	382	291
2010년	소계	1,330	102	210	629	390	290
2011년	소계	1,639	101	208	624	706	500
2012년	소계	1,530	94	194	582	659	457
2013년	1 분기	213	7	13	40	153	106
	2 분기	202	12	25	74	92	63
	3 분기	233	25	52	156	-	-
	4 분기	609	-	-	-	609	415
	소계	1,257	44	90	270	854	584
2014년	1 분기	164	43	37	85	-	-
	2 분기	480	52	107	321	-	-
	3 분기	547	59	122	366	-	-
	4 분기	628	59	123	370	75	49
	소계	1,819	213	389	1,142	75	49
2015년	1 분기	687	66	136	409	76	49
	2 분기	628	59	123	369	76	49
	3 분기	721	70	144	431	77	49
	4 분기	913	90	186	559	78	49
	소계	2,949	285	589	1,768	307	196
2016년	1 분기	560	52	105	324	79	49
	2 분기	197	2	-	115	80	49
	소계	757	54	105	439	159	98
합계		12,884	1,800	1,800	5,498	3,786	2,686



서울특별시 시행구간 미개통시 재정지원액

삭 제

## 통행료수입의 상한액

(단위 : 억원)

년 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년 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2016	295	467	2032	912	2,713
2017	505	834	2033	914	2,829
2018	537	922	2034	916	2,949
2019	807	1,443	2035	919	3,075
2020	858	1,595	2036	921	3,206
2021	863	1,668	2037	923	3,343
2022	867	1,744	2038	926	3,486
2023	872	1,824	2039	928	3,635
2024	877	1,908	2040	930	3,790
2025	882	1,995	2041	932	3,947
2026	887	2,086	2042	932	4,104
2027	892	2,182	2043	932	4,269
2028	897	2,282	2044	932	4,439
2029	902	2,386	2045	932	4,617
2030	907	2,496	2046	355	1,829
2031	909	2,602	<b>합계</b>	<b>26,058</b>	<b>80,655</b>

※ 불변가격은 2000년 11월 24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2013년 2분기까지는 물가상승을 실적치, 2013년 3분기부터는 연평균 물가상승율 4% 반영

※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의한 사업수익률이 8.48%가 되는 통행료수입단,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록8 추정 통행료수입의 100% 금액이 통행료수입의 상한액임.

※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운영비용, 통행료수입의 변동이 있을 경우 통행료수입의 상한액도 변경

## 운영종료 후 인계목록

### 1. 운영설비

(단위 : 백만원, 불변가격)

구분		내용 연수	수량	단가	교체율	교체액	운영 24년차	운영 30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고
1. 통행료징수 시스템							1,439.5			
계측 공구	계측기	5	1	45.0	100%	45.0	45.0		운영31년차	운영 26년차
	수리공구	2	6	0.3	100%	1.8	1.8		운영31년차	운영 29년차
							541.6			
ETCS 차선 설비	켄트리	5	12	6.4	100%	76.3	76.3		운영31년차	운영 26년차
	안테나	8	12	23.5	50%	141.2	141.2		운영32년차	
	차종분류장치	8	6	31.6	50%	94.9	94.9		운영32년차	
	Car Detector	8	6	19.2	50%	57.6	57.6		운영32년차	
	위반차량 촬영장치	8	6	28.9	50%	86.8	86.8		운영32년차	
	차선 제어기	8	6	18.1	50%	54.2	54.2		운영32년차	
	운전자 표시기	8	6	3.9	50%	11.6	11.6		운영32년차	
	휴대용 충전기	8	6	4.5	50%	13.6	13.6		운영32년차	
	전용차로 표지판	8	6	1.8	50%	5.4	5.4		운영32년차	
							415.5			
TCS 차선 설비	차종분류장치	8	14	30.4	50%	212.9	212.9		운영32년차	
	도주과적 차량촬영	8	14	28.9	50%	202.6	202.6		운영32년차	
							158.2			
TCS- BOOTH 설비	요금터미널	8	14	14.1	50%	98.4	98.4		운영32년차	
	영수증발행기	8	14	8.3	50%	58.0	58.0		운영32년차	
	차종분류표시등	8	14	0.2	50%	1.8	1.8		운영32년차	
							215.3			
TCS 영업소 설비	영업소컴퓨터	8	2	56.6	50%	56.6	56.6		운영32년차	
	영업소 네트워크	8	2	56.1	50%	56.1	56.1		운영32년차	

구 분			내용 연수	수량	단가	교제율	교제액	운영 24년차	운영 30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고
TCS 영업소설 비	운영 단말기	8	4	9.6	50%	19.2	19.2			운영32년차	
	네트워크 Interface	8	2	7.5	50%	7.5	7.5			운영32년차	
	프린터	8	2	3.8	50%	3.8	3.8			운영32년차	
	도주/과적/ 위반촬영컴퓨터	8	2	21.9	50%	21.9	21.9			운영32년차	
	무정전전원장치	8	2	32.9	50%	32.9	32.9			운영32년차	
	운영 및 모니터링 컴퓨터	8	2	4.5	50%	4.5	4.5			운영32년차	
	금액충전컴퓨터 단말기	8	2	4.5	50%	4.5	4.5			운영32년차	
	금액충전컴퓨터 영수증발행기	8	2	8.3	50%	8.3	8.3			운영32년차	
							62.1				
본사 설비	본사 영업소 컴퓨터 (통합외)	8	1	70.0	50%	35.0	35.0			운영32년차	
	보안 인증 Server	8	1	13.5	50%	6.8	6.8			운영32년차	
	OBU 발행기	8	1	6.8	50%	3.4	3.4			운영32년차	
	스마트카드 발행기	8	1	30.0	50%	15.0	15.0			운영32년차	
	프린터	8	1	3.7	50%	1.9	1.9			운영32년차	
2. 축중기			5	4	28.0	100%	112.0	-	112.0	운영35년차	
3. 비상전화			5	129	2.6	100%	334.5	-	334.5	운영35년차	
4. CCTV			5	122	12.0	66%	966.6		966.6	운영35년차	
5. 충격완화시설			5	27	6.6	100%	177.4		177.4	운영35년차	
6. 더블캡			5	1	11.2	100%	11.2	-	11.2	운영35년차	
7. 질차			5	2	24.0	100%	48.0	-	48.0	운영35년차	
8. 순찰자			5	1	18.3	100%	18.3	-	18.3	운영35년차	
9. 제설차(살포기포함)			5	1	83.0	100%	83.0	-	83.0	운영35년차	
10. 미니크레인			5	1	51.6	100%	51.6	-	51.6	운영35년차	
<b>운영설비 합계</b>								<b>1,439.5</b>	<b>1,802.6</b>		

※ 실시협약 재무모델의 운영설비비와 운영비용 중 유형자산 대체비에 반영된 자산 목록임

※ 운영 종료 전 실제 취득 및 대체한 자산을 기준으로 인계목록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2. 집기비품

(단위:백만원, 불변가격)

구분	내용연수	수량	단가	교체율	교체액	운영 26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고
책상(임원용)	5	2	0.80	100%	1.60	1.60	운영 31년차	
책상(양수)	5	5	0.45	100%	2.27	2.27	운영 31년차	
책상(편수)	5	30	0.20	100%	5.94	5.94	운영 31년차	
사이드장(임원용)	5	2	0.16	100%	0.32	0.32	운영 31년차	
옷장(임원용)	5	2	0.20	100%	0.40	0.40	운영 31년차	
의자(임원용)	5	2	0.30	100%	0.60	0.60	운영 31년차	
의자(관리직)	5	38	0.12	100%	4.56	4.56	운영 31년차	
회의탁자(대)	5	3	0.22	100%	0.66	0.66	운영 31년차	
회의탁자(소)	5	18	0.05	100%	0.81	0.81	운영 31년차	
파일박스(4단)	5	20	0.12	100%	2.40	2.40	운영 31년차	
파일박스(2단)	5	5	0.06	100%	0.30	0.30	운영 31년차	
캐비닛	5	20	0.17	100%	3.30	3.30	운영 31년차	
소파	5	4	0.30	100%	1.20	1.20	운영 31년차	
TV-VTR세트	5	6	0.76	100%	4.56	4.56	운영 31년차	
냉장고	5	2	0.55	100%	1.10	1.10	운영 31년차	
PC(586)	5	37	1.80	100%	66.60	66.60	운영 31년차	
프린터	5	4	2.00	100%	8.00	8.00	운영 31년차	
디지털복사기	5	2	19.00	100%	38.00	38.00	운영 31년차	
전화기	5	41	0.03	100%	1.23	1.23	운영 31년차	
키폰	5	3	0.58	100%	1.74	1.74	운영 31년차	
키폰전화기	5	10	0.12	100%	1.15	1.15	운영 31년차	
FAX	5	3	0.55	100%	1.65	1.65	운영 31년차	
FAX 테이블	5	3	0.05	100%	0.15	0.15	운영 31년차	
핸드폰	5	6	0.25	100%	1.50	1.50	운영 31년차	
카메라	5	4	0.18	100%	0.72	0.72	운영 31년차	
비디오카메라	5	2	0.70	100%	1.40	1.40	운영 31년차	
차량(3000CC급)	5	2	30.00	100%	60.00	60.00	운영 31년차	
식당	5	2	30.00	100%	60.00	60.00	운영 31년차	
동전계수기	5	5	3.00	100%	15.00	15.00	운영 31년차	
<b>집기비품 합계</b>					<b>287.16</b>	<b>287.16</b>		

※ 실시협약 재무모델의 개업비와 운영비용 중 유형자산 대체비에 반영된 자산 목록임

※ 운영 종료 전 실제 취득 및 대체한 자산을 기준으로 인계목록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014. 05. 09



서울특별시  
서울터널 주식회사

# 목 차

전 문	1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협약의 해석)	11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12
제 2 장 기본 약정	12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2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3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3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4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4
제 11 조 (협약의 성실히행)	14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4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4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15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6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6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6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7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17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17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18
제 19 조 (공사비)	18
제 20 조 (공사기간)	18
제 21 조 (공사의 착수)	19
제 22 조 (공정관리)	19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0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20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20
제 26 조 (위험물 및 저장물) .....	21
제 27 조 (문화재) .....	21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	22
제 29 조 (지체상금) .....	22
제 30 조 (보험가입) .....	23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	23
제 32 조 (기성검사) .....	24
제 33 조 (민원처리) .....	24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25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등) .....	25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등) .....	26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26
제 38 조 (조기준공) .....	27
제 39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28
<b>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b>	<b>28</b>
제 40 조 (운영비용) .....	28
제 41 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	29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29
제 43 조 (운영실적의 제출) .....	29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30
제 45 조 (경미한 사업) .....	30
<b>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b>	<b>30</b>
제 46 조 (사업수익률) .....	30
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	31
제 48 조 (통행료의 징수) .....	31
제 49 조 (통행료의 정산) .....	32
<b>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b>	<b>32</b>
제 50 조 (재정지원) .....	32
제 51 조 (행정적 지원) .....	33
제 52 조 (사업부지의 제공) .....	33
제 53 조 (보상업무) .....	34
제 54 조 (초과 통행료 수입 환수) .....	35
제 55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	35
제 56 조 (수요위험의 처리) .....	36



<b>제 9 장</b>	<b>위험분담에 관한 사항</b>	<b>36</b>
제 57 조	(위험배분의 원칙)	36
제 5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36
제 59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37
제 60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38
제 61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39
<b>제 10 장</b>	<b>협약의 종료</b>	<b>40</b>
제 62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40
제 63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40
제 64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42
제 65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43
제 66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43
제 67 조	(매수청구권)	44
제 68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44
<b>제 11 장</b>	<b>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b>	<b>45</b>
제 69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45
제 7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45
제 71 조	(출자지분의 변경)	45
제 72 조	(자금제조달의 절차)	46
제 73 조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46
<b>제 12 장</b>	<b>분쟁의 해결</b>	<b>47</b>
제 74 조	(분쟁의 해결)	47
제 75 조	(중재)	47
<b>제 13 장</b>	<b>기타 사항</b>	<b>48</b>
제 76 조	(협약의 변경)	48
제 77 조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권)	49
제 78 조	(협약의 수익자)	49
제 79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49
제 80 조	(일부무효)	49
제 81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49
제 82 조	(비밀유지)	50
제 83 조	(통지)	50
제 84 조	(언어)	51
제 85 조	(준거법)	51
제 86 조	(협약의 효력)	51

## [첨부자료]

별표1. 본 사업의 개요 .....	52
별표2. 출자자 구성 .....	54
별표3.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55
별표4.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	56
별표5.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	57
별표6. 보험내역 .....	58
별표7. 건설기간중 .....	58
별표8. 운영기간중 .....	59
별표9. 세전기준 .....	64
별표10. 세후기준 .....	65
별표11. 해지시 지급금 .....	66
별표12. 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 .....	71
별표13. 재무모델 .....	76

## 전 문

서울특별시(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 과 사업시행자는 BTO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서울제물포터널 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서울제물포터널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 를 2011년 01월 20일 수립·공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11년 06월 16일 서울터널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를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차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규모는 <별표1>(본 사업의 개요)와 같다.
  1. 명 칭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2. 사업구간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주요시설

- 가. 터 널 : 13,480m / 2차로, 981m / 1차로
- 나. 지하차도 : 1,360m / 2차로, 570m / 1차로
- 다. 유출입시설 : 2개소(신월JCT, 여의JCT)
- 라. 영업소 1개소

4. 제 원

- 가. 7.53km(왕복4차로), 설계속도 80km/h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용으로 충당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개 월 : 어느 역월의 특정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 2. 건설기간 :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3.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제11180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대체된 것을 포함한다.
- 4. 건설보조금 : 본 협약 제50조(재정지원)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건설이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6. 경미한 사업: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 및 본 협약 제45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7. 계열회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사감리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지정된 책임감리자(또는 동법 제22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공사기간: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공사비: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1. 공사착수일: 본 협약 제21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2. 관계기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3.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5. 교통량: 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총량을 말한다.

1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한민국 법률[제10665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말한다.
17.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0조 및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2011.1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58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18. 기본재무모델: 본 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9. 기준이자율: 그 산정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신용등급의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율을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잔존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율로 대체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율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12장 (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0. 기준재무모델: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제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 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1. 기준통행료: <별표8>(추정통행료수입)에 정한 기준통행료를 말한다.
22. 담보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3.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4. 문화재 : 대한민국 법률[제9401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5.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07년 3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 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별표13>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단, 최초 통행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 준공시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26.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제1028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하며, 그 수정·변경 대체된 것을 포함한다.
27.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제226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하며, 그 수정·변경 대체된 것을 포함한다.
2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29. 발굴조사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2.3.2. 문화재청고시 제2012-27호)에 따라 시굴조사에서 유적 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 면적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실시하는 정식발굴을 의미한다.
30. 법 령 :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31. 법령 등 :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한다.
32. 보조금 :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하나로서 법령 등 및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33. 본 도로 :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로서 제3차 제안공고에서 특정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으로 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구간 중 터널, Box 및 U-type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7.53km의 도로시설을 말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등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34. 본 사업 :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5. 본 사업부지 :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36. 본 사업수입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료수입과 부속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을 말한다.
37. 본 사업시설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제물포터널 시설(이하 “본 시설” 이라 한다)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8.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말한다.
39. 분 기 :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0. 불가항력 사유 :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본 협약 제6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41. 비교재무모델 :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42. 사업제안서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5월 23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43.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4. 사업수익률 : 본 협약 제46조(사업수익률)에서 정한 세전 실질수익률을 말한다.
45.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서울터널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46. 사업연도 :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연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7. 사업이행보증 :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48. 설계 :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한다.
49. 설계감리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각 호의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0. 설계감리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협약 제35조(공사책임감리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설계감리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51.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52.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2007년 3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53. 시공자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54. 시굴조사 : 문화재청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12.3.2. 문화재청 고시 제2012-27호)에 따라 사업부지내 유물 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실시하는 1차 확인조사를 말한다.
55. 실시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한다.
56. 실시설계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2조 및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11.1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58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57.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58.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도로에 대한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59.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60. 운영연도 : 운영기간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연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61.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동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의미한다.
62.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63. 인·허가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기타 관계기관 기타 제반공급을 제공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64. 일 또는 날 :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65. 자(者) :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66. 자금재조달(Refinancing) :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본다. 단,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출자지분 변경 이외의 자금재조달 행위가 없는 경우를 말함)은 자금재조달 대상에서 제외한다.

67. 자금차입: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8. 자금차입계약: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69. 자본금: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70. 재무모델: <별표13>(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
71. 제반공급: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72. 제3자 제안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78호(2011.01.20)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말한다.
73. 제세공과금: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74. 준공: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75.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착수일의 연기 또는 공사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시 그 연기된 공사착수일 또는 변경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76. 준공일: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77. 준공전 사용인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78. 준공확인필증: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79. 지방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제968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80. 지장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81. 채권금융기관 등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82. 총건설사업비 :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주무관청부담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83.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다
84.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85.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별표 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86. 최초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말한다.
87. 추정통행료수입 : <별표8>(추정통행료수입)에 명시된 특정 운영연도 통행료 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88.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본 협약 제71조(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89. 출자예정자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90. 통신감리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협약 제35조(공사책임감리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통신감리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91.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시설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를 말한다.

- 92. 통행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말한다.
- 93. 해지일 :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 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 94. 협약당사자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 95. 환수기준 통행료수입 : <별표8>(추정통행료수입)에 명시되어 있는 각 운영연도의 추정통행료 수입(해당 운영연도의 전년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함)의 100%를 말한다.

#### 제 4 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해석된다.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본 협약상 단수형태의 언급에는 복수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 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으로 해석한다.
- ⑤ “등” 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 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또는 별첨이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또는 부록을 의미한다.
-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자,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⑧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입 또는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⑨ 본 협약상 기간의 계산은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제3자 제안공고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터널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본 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부여 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서울특별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및 통행료의 부과 또는 징수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부대사업의 시행은 민간투자법·법시행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본 협약,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④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시까지 대출약정 체결에 의한 대출약정서 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② 서울제물포터널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 등 본 협약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등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0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히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4,546.57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793.96억원을 제외한 3,752.62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한국도로공사의 설계기준 포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5. 설계감리계약, 통신감리계약 및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된 금액이 본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공사비 변경(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는 제외)에 따른 감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세공과금이 증감되는 경우
  6. 운영설비비는 실시설계 완료 후 입찰을 통하여 계약된 금액이 본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감이 발생하는 경우
  7.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가 적용되어(위 한시적 규정이 연장되지 못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본 사업시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8.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민원발생,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금액을 최종 합산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되 실시협약에서 정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 단, 감액되는 공사비는 제1항의 총사업비 증가부분에 우선 사용하며, 그 잔액 상당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본 협약 제6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하되,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별표5>(건설보조금지급일정)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조정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통행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장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본 사업시설 건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업시행법인의 자기자본은 총민간투자비의 최소 2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단,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15% 이상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별표4>(약정 투자금 투입일정)와 같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제1항의 자기자본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의 자기자본은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표4>(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에 제3자 제안공고(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제안서 및 본 협약,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제안서는 본 협약 체결 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제 19 조 (공사비)**

공사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기준 3,789.97억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 ②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보고서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22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1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 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누계공정률이 누계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차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 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시정 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나 지장물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6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 27 조 (문화재)

-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달하고 이를 정산하여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처리한다. 다만,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었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58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문화재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6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④ 문화재의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6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건설사업비로 본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 제 30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별표6>(보험내역)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사업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익월 5일 이내)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 도서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58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제 32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3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 ②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결과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및 운영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고, 필요 시 그 처리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기로 한다.

- ⑤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등)**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 설계감리자 및 통신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각 감리자와 관련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각 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설계감리자 및 통신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등에 따른 각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 설계감리자 및 통신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를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를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감리자는 본 협약 제31조(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른 검사, 제32조(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36조(예비준공검사 등)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9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90일 전까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의 위반한 점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 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여야 한다.

### 제 38 조 (조기준공)

- ① 협약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준공), 준공일로부터 당초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주무관청은 조기준공의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시점을 앞당기거나(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이 앞당겨진 만큼 종료시점 역시 앞당겨짐)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기준공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통행료 징수, 수수료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9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전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전 사용인가를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 및 비용의 처리는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일부가 준공(부분준공)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0 조 (운영비용)**

-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분금 1,661.16억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9>(운영비용)와 같다.
- ②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별표9>(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시 법령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여부를 고려한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행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1 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동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등의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거나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적용될 규정(교통부속시설을 포함.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규정, 홍지문 터널 안전점검 편람, 유지보수작업 매뉴얼 등)에 준하여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주무관청은 그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 43 조 (운영실적의 제출)**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주무관청에게 본 도로에 대한 전년도 교통량현황 및 통행료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교통량현황 및 통행료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9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 등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제 45 조 (경미한 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45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 제 46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99%(세후 5.39%)로 하되, 제41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 ① 본 사업의 최초통행료는 사업시행자가 <별표8>(추정통행료수입)에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개시 직전일 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최초통행료를 결정을 위하여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통행료
  2. 통행료산출 기초자료
  3. 통행료 징수방법
  4.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등
  6.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

#### 제 48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②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한 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불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무관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통행료에 추가하여 유료도로법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

#### 제 49 조 (통행료의 정산)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가 고속도로 등 다른 유료도로와 접속되어 연계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교통관리체계, 통행료징수방식 등을 연계도로와 동등 수준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개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울러, 주무관청에서 통행료 체계의 연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통행료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본 도로와 연계된 도로구간과 통행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 등 연계도로의 운영권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통행료징수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한다.

###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 50 조 (재정지원)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530.34억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별표5>(건설보조금 지급일정)과 같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의한 건설보조금을 분기별로 <별표5>(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이 정한 일정에 따르되 공사수행 누계 실적공정률(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누계 실적공정의 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2007년 3월 1일부터 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말

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실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누계 실적공정률이 누계 계획공정률에 미달하여 예정된 건설보조금의 지급을 유보한 경우, 미달된 공정이 만회되었음이 확인된 분기의 건설보조금 지급시 유보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22조(공정관리)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적공정율과 관계없이 당해 분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건설보조금 전액(전분기미지급액 + 금분기지급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유보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 (행정적 지원)**

- ①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포함)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며,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52 조 (사업부지의 제공)**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보상일정 및 부지의 인도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부지를, 이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이의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본 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동안 제세공과금 및 담보권의 부담 없이 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 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이 없었던 경우 또는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본 사업부지를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제 53 조 (보상업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의 토지 등(토지, 물건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에 위탁하기로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 54 조 (초과 통행료 수입 환수)

- ① 각 운영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수입이, (가) 해당 연도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그 초과분(초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제외)을 공유하며, (나)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i)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00% 초과 120% 이하인 부분(해당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제외)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공유하고 (ii)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제외)은 주무관청에게 환급하되,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충당
  2. 통행료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단축
- ② 제1항에 의한 초과 통행료수입 환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된 운영수입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환수금액을 확정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동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주무관청에 환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환수금액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 55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본 협약 체결 이후 법령의 제·개정,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른 통행료 추가감면으로 인한 통행료 수입감소분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보조금,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보전한다. 단, 실제 통행료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의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6 조 (수요위험의 처리)**

- ①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②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경쟁 도로 건설 배제를 요청할 수 없다. 단, 제3연육교, 체물포길 지상부 차로축소 또는 서울시 지하도로(U-Smartway)가 건설된 이후에는 협약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본 협약에 반영하기로 한다.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7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5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7. 본 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3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 59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포함한다.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에도 보상업무 관련하여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협약 제6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의무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제 60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통행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착수가 방해를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복구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 위 ‘가’ 및 ‘나’ 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⑥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 61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 발생으로 인한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의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제 10 장   협약의 종료

### 제 62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 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3년,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12>(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 제 63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본 협약 제58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제58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는 이로 인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운 경우), 주무관청은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59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59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60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⑤ 본 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 제70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4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① 본 협약 제63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인수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63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한 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단, 본 협약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상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점 이후에 수리(대수선 포함) 또는 보수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수리 또는 보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제 65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1> (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표11>(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66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5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 ③ 협약당사자는 해지시지급금 시기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67 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 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 제 68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

### 제 69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이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 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 제 7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71 조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서울터널주식회사의 출자자(이하 예정출자자를 포함한다)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별표2> (출자자 구성)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이하 예정출자지분 포함한다)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또는 제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72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최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정부보조금 제외)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3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자금재조달 승인시점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세후 경상투자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세후 경상투자 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제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 제 12 장 분쟁의 해결

### 제 74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민간투자법 제44조의3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0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75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⑤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⑥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 75 조 (중재)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② 중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며,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상사중재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제 13 장 기타 사항

### 제 76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3연육교, 제물포길 지상부 차로축소 또는 서울시 지하도로(U-Smartway)가 건설된 이후에는 협약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본 협약에 반영하기로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 77 조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권)**

-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사전승인 없이 집행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안과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8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9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0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1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 제 82 조 (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제 83 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수신 : 서울시 도로계획과

전화 : 02-2133-8075

팩스 : 02-2133-0763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신 : 대림산업(주) SOC사업팀  
전화 : 02-2011-7643                                      팩스 : 02-2011-8042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4 조 (언어)**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모든 의사교환은 한국어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한글 이외에 다른 언어로도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85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86 조 (협약의 효력)**

- ① 제6조에 의한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②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터널주식회사

시 장                      박 원 순

대 표 이 사                      강 태 구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시 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신월IC)
  - 종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 ※ 여의도 종점부 출구 위치는 주민협의회 협의를 통해 정하여 추후 협약을 변경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부담
- 총연장 : 7.53km
- 주요시설물
  - 터 널 : 2차로 2개소 / 13,480m, 1차로 2개소 / 981m
  - 지하차도 : 2차로 4개소 / 1,360m, 1차로 2개소 / 570m
  - 출입시설 : JCT 2개소(신월JCT, 여의JCT)
  - 영업소 : 1개소(지하단층영업소)
- 성과요구수준
  - 본 도로에 교통체계효율화 법령 등 ITS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관리시스템 및 방재시스템의 교통자료는 서울 TOPIS 및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접된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와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남부순환로, 여의대로, 올림픽대로 등이 혼잡할 경우, VMS(가변정보표지판)를 통한 사용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시민의 편의 및 차량흐름의 원활을 위해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설치(ETCS, 전자지불 수단 포함)한다.
- 장대터널로 계획 및 설계시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에 따르며, 도심부터널을 고려한 안전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대터널에서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정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제시 및 설계에 반영한다.
- 터널 내 예상되는 사고를 구분하여 사고처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매뉴얼 작성 시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시안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주관하는 도로안전진단(RSA : Road Safety Audit)을 수행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서는 도로안전진단 시행과정을 관리·감독한다.

별표 2

출자자 구성

출 자 자	지 분 율	비 고
KIAMCO도로투자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50.00%	재무적출자자
아시아나아이디티(주)	0.75%	”
대림산업(주)	16.92%	건설출자자
현대건설(주)	5.75%	”
지에스건설(주)	5.65%	”
현대엠코(주)	5.20%	”
금호산업(주)	5.08%	”
롯데건설(주)	4.55%	”
동광건설(주)	3.10%	”
경남기업(주)	3.00%	”
합 계	100.00%	”



별표 3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조 사 비	10.71	10.71	-	-	-	-	-
2. 설 계 비	101.13	101.13	-	-	-	-	-
3. 공 사 비	3,789.97	-	349.81	892.54	905.04	919.45	723.13
4. 보 상 비	263.62	59.89	190.31	13.42	-	-	-
5. 부 대 비	240.66	82.01	12.04	58.10	30.99	31.47	26.05
6. 운영설비비	95.87	-	-	-	23.18	-	72.68
7. 제세공과금	0.14	0.14	-	-	-	-	-
8. 영업준비금	44.48	4.95	8.02	6.80	6.10	6.10	12.52
<b>총사업비</b>	<b>4,546.57</b>	<b>258.83</b>	<b>560.18</b>	<b>970.85</b>	<b>965.31</b>	<b>957.01</b>	<b>834.38</b>
건설보조금	530.34	-	-	106.07	141.42	141.42	141.42
보 상 비	263.62	59.89	190.31	13.42	-	-	-
<b>총민간사업비</b>	<b>3,752.62</b>	<b>198.94</b>	<b>369.87</b>	<b>851.37</b>	<b>823.89</b>	<b>815.59</b>	<b>692.96</b>

주)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별표 4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비		약정투자금 (자기자본)	타인자본		재 정 지원금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주주차입금	일반차입금		
2012년	1/4분기	-	-	-	-	-	
	2/4분기	-	-	-	-	-	
	3/4분기	164.95	158.81	158.81	-	6.14	
	4/4분기	158.80	89.70	89.70	-	69.09	
	소계	323.75	248.52	248.52	-	75.23	
2013년	1/4분기	115.74	41.54	41.54	-	74.19	
	2/4분기	185.25	109.17	109.17	-	76.07	
	3/4분기	164.95	114.82	114.82	-	50.13	
	4/4분기	257.67	213.48	213.48	-	44.18	
	소계	723.61	479.02	479.02	-	244.58	
2014년	1/4분기	298.76	288.78	177.71	111.07	-	9.99
	2/4분기	322.15	267.21	-	267.21	-	54.94
	3/4분기	304.31	256.70	-	256.70	-	47.60
	4/4분기	413.24	365.17	-	43.95	321.21	48.07
	소계	1,338.46	1,177.86	177.71	678.93	321.21	160.60
2015년	1/4분기	432.54	384.00	-	-	384.00	48.55
	2/4분기	411.78	362.75	-	-	362.75	49.02
	3/4분기	325.70	276.20	-	-	276.20	49.51
	4/4분기	325.37	275.38	-	-	275.38	49.99
	소계	1,495.40	1,298.33	-	-	1,298.33	197.07
2016년	1/4분기	290.74	240.25	-	-	240.25	50.49
	2/4분기	362.49	311.50	-	-	311.50	50.98
	3/4분기	462.60	411.11	-	-	411.11	51.49
	4/4분기	517.08	465.09	-	-	465.09	51.99
	소계	1,632.91	1,427.96	-	-	1,427.96	204.95
2017년	1/4분기	467.94	415.43	-	-	415.43	52.51
	2/4분기	473.27	420.24	-	-	420.24	53.02
	3/4분기	415.39	361.85	-	-	361.85	53.55
	4/4분기	259.84	205.77	-	-	205.77	54.07
	소계	1,616.44	1,403.29	-	-	1,403.29	213.15
<b>합 계</b>	<b>7,130.57</b>	<b>6,034.97</b>	<b>905.25</b>	<b>678.93</b>	<b>4,450.79</b>	<b>1,095.59</b>	

주1) 경상가격 기준(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4.0% 상승분으로 적용하여 산정)

주2) 약정투자금 투입은 실제공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3) 총투자비 및 재정지원금은 보상비 포함 금액임

별표 5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건설보조금		보 상 비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2012년	1/4분기	-	-	-	-
	2/4분기	-	-	-	-
	3/4분기	-	-	4.93	6.14
	4/4분기	-	-	54.96	69.09
	소 계	-	-	59.89	75.23
2013년	1/4분기	-	-	58.44	74.19
	2/4분기	-	-	59.34	76.07
	3/4분기	-	-	38.73	50.13
	4/4분기	-	-	33.80	44.18
	소 계	-	-	190.31	244.58
2014년	1/4분기	-	-	7.57	9.99
	2/4분기	35.36	47.14	5.85	7.80
	3/4분기	35.36	47.60	-	-
	4/4분기	35.36	48.07	-	-
	소 계	106.07	142.81	13.42	17.79
2015년	1/4분기	35.36	48.55	-	-
	2/4분기	35.36	49.02	-	-
	3/4분기	35.36	49.51	-	-
	4/4분기	35.36	49.99	-	-
	소 계	141.42	197.07	-	-
2016년	1/4분기	35.36	50.49	-	-
	2/4분기	35.36	50.98	-	-
	3/4분기	35.36	51.49	-	-
	4/4분기	35.36	51.99	-	-
	소 계	141.42	204.95	-	-
2017년	1/4분기	35.36	52.51	-	-
	2/4분기	35.36	53.02	-	-
	3/4분기	35.36	53.55	-	-
	4/4분기	35.36	54.07	-	-
	소 계	141.42	213.15	-	-
<b>합</b>	<b>계</b>	<b>530.34</b>	<b>757.99</b>	<b>263.62</b>	<b>337.61</b>

주1)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이며, 그 이후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4% 반영

주2) 실제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함

별표 6

보 험 내 역

1. 건설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포함) 2) 예정이익상실보험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보험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본공사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 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입는 각종 재정적 손실 담보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인직원의 재해보상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재해 : 화재, 폭발, 도난 등 - 자연재해 : 비, 홍수, 바람, 폭풍, 지진, 해일 등 - 기술적원인 재해 : 사태, 붕괴, 미숙련, 시공결함 등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적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담보지역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공사기간 담보	
부보금액	1) 건설공사보험 : 공사비, 운영설비비(유지관리 장비 제외) 2) 예정이익상실보험 : 운영초기 12개월간 고정비 + 지급이자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건설기간 중 법인의 인건비	

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령을 따르기로 함

2. 운영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완성공사물보험(C.C.A.R) 2) 영업배상책임보험(C.G.L) 3) 기업휴지보험(BI)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보험목적물	1) 완성공사물보험 : 완성공사물+운영설비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C.G.L)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BI)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인직원 재해보상	
보상내용	1) 완성공사물보험 - 인위적 재해 : 화재, 폭발, 도난 등 - 자연 재 해 : 비, 홍수, 바람, 폭풍, 지진, 해일 등 - 기술적 원인 재해 : 사태, 붕괴, 미숙련, 시공결함 등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 배상책임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BI)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적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등	
담보지역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운영 전기간	
부보금액	1) 완성공사물보험 : 공사비, 운영설비비(유지관리 장비 제외) 2)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 10억원 (한 사고당 및 총 보상한도) 3) 기업휴지보험 : 고정비(인건비+경비+유지관리비)와 지급이자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운영기간중 법인의 인건비	

별표 7

추정교통량

(단위 : 대/일)

년 도	추정교통량	년 도	추정교통량
2018년	59,653	2033년	62,004
2019년	60,169	2034년	61,628
2020년	60,686	2035년	61,253
2021년	61,202	2036년	60,878
2022년	61,718	2037년	60,878
2023년	62,234	2038년	60,878
2024년	62,751	2039년	60,878
2025년	63,267	2040년	60,878
2026년	63,783	2041년	60,878
2027년	63,577	2042년	60,878
2028년	63,371	2043년	60,878
2029년	63,166	2044년	60,878
2030년	62,960	2045년	60,878
2031년	62,754	2046년	60,878
2032년	62,379	2047년	60,878

별표 8

추정통행료수입

(단위 : 억원, 부가세제외)

년 도	추정통행료 수입		년 도	추정통행료 수입	
	불변수입	경상수입		불변수입	경상수입
2018년	347.13	552.14	2034년	358.62	1,068.39
2019년	350.13	579.19	2035년	356.44	1,104.36
2020년	353.14	607.54	2036년	354.25	1,141.50
2021년	356.14	637.21	2037년	354.25	1,187.16
2022년	359.14	668.29	2038년	354.25	1,234.65
2023년	362.15	700.83	2039년	354.25	1,284.04
2024년	365.15	734.92	2040년	354.25	1,335.40
2025년	368.16	770.60	2041년	354.25	1,388.81
2026년	371.16	807.96	2042년	354.25	1,444.37
2027년	369.96	837.56	2043년	354.25	1,502.14
2028년	368.76	868.24	2044년	354.25	1,562.23
2029년	367.57	900.05	2045년	354.25	1,624.72
2030년	366.37	933.00	2046년	354.25	1,689.70
2031년	365.17	967.14	2047년	354.25	1,757.29
2032년	362.99	999.82	합 계	10,760,04	31,922.79
2033년	360.81	1,033.56			

주) 1.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임  
 2. 통행료는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1,846원(VAT포함)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최초통행료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시 결정됨.  
 3. 면제 및 할인차량을 고려한 감면을 5.0%를 반영한 통행료수입임.  
 4. 국비지원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경우 통행료는 변경 가능함.

별표 9

운 영 비 용

(단위 : 억원)

년 도	법인세제외 운영비용	법인세	계	년 도	법인세제외 운영비용	법인세	계
2018년	43.45	-	43.45	2034년	38.30	43.15	81.45
2019년	38.07	-	38.07	2035년	40.03	50.28	90.31
2020년	40.88	-	40.88	2036년	98.86	52.60	151.46
2021년	39.63	-	39.63	2037년	43.58	41.29	84.87
2022년	45.06	-	45.06	2038년	215.93	55.50	271.42
2023년	44.18	-	44.18	2039년	37.69	25.43	63.12
2024년	80.44	-	80.44	2040년	51.69	58.59	110.27
2025년	39.26	-	39.26	2041년	37.61	55.91	93.52
2026년	40.91	-	40.91	2042년	46.29	59.79	106.08
2027년	42.76	16.73	59.48	2043년	69.43	59.01	128.44
2028년	79.35	21.82	101.18	2044년	37.40	53.37	90.77
2029년	39.57	17.64	57.21	2045년	75.57	61.33	136.89
2030년	44.28	30.89	75.17	2046년	37.26	61.32	98.59
2031년	75.39	34.99	110.38	2047년	39.50	120.59	160.09
2032년	44.65	39.64	84.29	합 계	1,661.16	1,001.70	2,662.86
2033년	54.15	41.84	95.99				

주)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항목별 운영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1. 인 건 비	354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2. 경 비	213	9	8	8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3. 유지관리비	847	18	14	17	16	22	21	18	17	18	20	56	17	19	17	23	33	17	19	75	23	158	17	31	17	23	49	17	19	17	19
- 점검비	60	2	0	2	0	2	0	2	0	2	0	8	0	2	0	2	8	0	2	0	2	8	0	2	0	2	9	0	2	0	2
① 터 널	58	2	-	2	-	2	-	2	-	2	-	8	-	2	-	2	8	-	2	-	2	8	-	2	-	2	9	-	2	-	2
② 전기설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③ ITS설비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유지보수비	457	5	3	4	5	9	10	5	5	5	9	37	6	6	6	10	13	6	6	64	10	138	6	18	6	10	29	6	6	6	6
① 상시보수비	195	3	3	4	5	9	10	5	5	5	9	16	5	5	5	9	9	5	5	5	8	15	5	5	5	8	9	5	5	5	5
② 연간보수비	18	-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③ 대수선비	235	2	-	-	-	-	-	-	-	-	-	20	-	-	-	-	3	-	-	58	-	122	-	12	-	-	19	-	-	-	-
④ 기 타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전 력 비	33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4. 보 험 료	87	5	5	4	4	4	4	4	4	4	3	3	3	3	3	3	3	2	2	2	2	3	2	2	2	2	2	2	2	2	2
5. 유형자산 대체구입	160	0	-	0	-	0	0	39	0	-	0	1	0	3	36	0	0	-	0	3	0	37	-	-	0	3	0	0	36	-	0
<b>합 계</b>	<b>1,661</b>	<b>43</b>	<b>38</b>	<b>41</b>	<b>40</b>	<b>45</b>	<b>44</b>	<b>80</b>	<b>39</b>	<b>41</b>	<b>43</b>	<b>79</b>	<b>40</b>	<b>44</b>	<b>75</b>	<b>45</b>	<b>54</b>	<b>38</b>	<b>40</b>	<b>99</b>	<b>44</b>	<b>216</b>	<b>38</b>	<b>52</b>	<b>38</b>	<b>46</b>	<b>69</b>	<b>37</b>	<b>76</b>	<b>37</b>	<b>39</b>

주)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법인세비용 제외

별표 10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1. 세전기준

(단위 : 억원)

년 도	현 금 유 출				현 금 유 입				순현금흐름 (⑦=⑥-③)
	총민간 사업비 ①	운영 비용 ②	현 금 유출계 (③=①+②)	현재 가치	본사업 수 입 ④	기타 ⑤	현 금 유입계 (⑥=④+⑤)	현재 가치	
합 계	3,753	1,661	5,414	2,637	10,760	-	10,760	2,637	5,346
2012년	199	-	199	142	-	-	-	-	(199)
2013년	370	-	370	249	-	-	-	-	(370)
2014년	851	-	851	540	-	-	-	-	(851)
2015년	824	-	824	493	-	-	-	-	(824)
2016년	816	-	816	460	-	-	-	-	(816)
2017년	693	-	693	369	-	-	-	-	(693)
2018년	-	43	43	22	347	-	347	174	304
2019년	-	38	38	18	350	-	350	166	312
2020년	-	41	41	18	353	-	353	158	312
2021년	-	40	40	17	356	-	356	150	317
2022년	-	45	45	18	359	-	359	143	314
2023년	-	44	44	17	362	-	362	136	318
2024년	-	80	80	29	365	-	365	129	285
2025년	-	39	39	13	368	-	368	123	329
2026년	-	41	41	13	371	-	371	117	330
2027년	-	43	43	13	370	-	370	110	327
2028년	-	79	79	22	369	-	369	104	289
2029년	-	40	40	10	368	-	368	97	328
2030년	-	44	44	11	366	-	366	92	322
2031년	-	75	75	18	365	-	365	86	290
2032년	-	45	45	10	363	-	363	81	318
2033년	-	54	54	11	361	-	361	76	307
2034년	-	38	38	8	359	-	359	71	320
2035년	-	40	40	7	356	-	356	67	316
2036년	-	99	99	17	354	-	354	63	255
2037년	-	44	44	7	354	-	354	59	311
2038년	-	216	216	34	354	-	354	56	138
2039년	-	38	38	6	354	-	354	53	317
2040년	-	52	52	7	354	-	354	50	303
2041년	-	38	38	5	354	-	354	47	317
2042년	-	46	46	6	354	-	354	44	308
2043년	-	69	69	8	354	-	354	42	285
2044년	-	37	37	4	354	-	354	39	317
2045년	-	76	76	8	354	-	354	37	279
2046년	-	37	37	4	354	-	354	35	317
2047년	-	39	39	4	354	-	354	33	315

주1)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주2) 현재가치는 세전 실질수익을 5.99%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산정

## 2. 세후기준

(단위 : 억원)

년 도	현 금 유 출				현 금 유 입				순현금흐름 (⑦=⑥-③)
	총민간 사업비 ①	운영 비용 ②	현 금 유출계 (③=①+②)	현재 가치	본사업 수 입 ④	기타 ⑤	현 금 유입계 (⑥=④+⑤)	현재 가치	
합 계	3,753	2,663	6,415	2,989	10,760	-	10,760	2,637	4,345
2012년	199	-	199	147	-	-	-	-	(199)
2013년	370	-	370	258	-	-	-	-	(370)
2014년	851	-	851	564	-	-	-	-	(851)
2015년	824	-	824	518	-	-	-	-	(824)
2016년	816	-	816	487	-	-	-	-	(816)
2017년	693	-	693	392	-	-	-	-	(693)
2018년	-	43	43	23	347	-	347	174	304
2019년	-	38	38	19	350	-	350	166	312
2020년	-	41	41	20	353	-	353	158	312
2021년	-	40	40	18	356	-	356	150	317
2022년	-	45	45	20	359	-	359	143	314
2023년	-	44	44	18	362	-	362	136	318
2024년	-	80	80	32	365	-	365	129	285
2025년	-	39	39	15	368	-	368	123	329
2026년	-	41	41	14	371	-	371	117	330
2027년	-	59	59	20	370	-	370	110	310
2028년	-	101	101	32	369	-	369	104	268
2029년	-	57	57	17	368	-	368	97	310
2030년	-	75	75	21	366	-	366	92	291
2031년	-	110	110	30	365	-	365	86	255
2032년	-	84	84	22	363	-	363	81	279
2033년	-	96	96	23	361	-	361	76	265
2034년	-	81	81	19	359	-	359	71	277
2035년	-	90	90	20	356	-	356	67	266
2036년	-	151	151	32	354	-	354	63	203
2037년	-	85	85	17	354	-	354	59	269
2038년	-	271	271	51	354	-	354	56	83
2039년	-	63	63	11	354	-	354	53	291
2040년	-	110	110	19	354	-	354	50	244
2041년	-	94	94	15	354	-	354	47	261
2042년	-	106	106	16	354	-	354	44	248
2043년	-	128	128	19	354	-	354	42	226
2044년	-	91	91	12	354	-	354	39	263
2045년	-	137	137	18	354	-	354	37	217
2046년	-	99	99	12	354	-	354	35	256
2047년	-	160	160	19	354	-	354	33	194

주1)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주2) 현재가치는 세후 실질수익율 5.39%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산정

주3) 운영비용은 법인세 포함 금액임

별표 11

해지시 지급금

I.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라 함)

②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민간투자자금’ 이라 함)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 다만, 후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금의 미지급이자, 자본금, 미지급배당금은 해지시지급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상각비 = 민간투자자금 × 상각율
- 상각률 = 1 / 무상사용기간
- 잔존가액 = 0

II.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건설기간 중

i)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과 ii) ‘경상사업수익률’ 을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의 투입 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경상사업 수익률’ 이란 본 협약 제46조(사업수익률)에 정한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에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산정한 비율을 의미함

[경상사업수익률 산정 방식]

$$\{(1 + \text{사업수익률}) \times (1 + \text{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1$$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 (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이다.(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 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1 - 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잔여운영기간비율\}$$

1. ‘민간투자자금’ 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

[주무관청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상각비 = 민간투자자금 × 상각율
- 상각률 = 1 / 무상사용기간
- 잔존가액 = 0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연도별 추정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별표 10(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세전기준))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추정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left(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3}{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2}{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1}{6} \right)$$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통행료수입의 합}}{\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통행료수입의 합}}$$

### III.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 ① 건설기간 중

i)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과 ii) ‘표준차입이자율’ 을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표준차입이자율이란 국고채(5년 만기) 유통수익률의 연도별 평균값에 2퍼센트(2%)를 합산한 이율을 의미함.

####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 (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시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1 - 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잔여운영기간비율\}$$

1. ‘민간투자자금’ 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상각비 = 민간투자자금 × 상각율
- 상각률 = 1 / 무상사용기간
- 잔존가액 = 0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 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별표 10(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세전기준))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 이때, 미래기대수익의 현가는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 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지 사유별로 본 협약 제 60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분담 비율을 적용함.

[추정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left(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3}{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2}{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1}{6} \right)$$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통행료수입의 합}}{\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통행료수입의 합}}$$

#### IV.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 ① 건설기간 중

i)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와 ii) ‘표준차입이자율’ 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이율에 의하여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 (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이다.(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시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text{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1 - \text{잔여운영기간비율})\} + \{(2)\text{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text{잔여운영기간비율}\}$$

1. ‘민간투자자금’ 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상각비 = 민간투자자금 × 상각율
- 상각률 = 1 / 무상사용기간
- 잔존가액 = 0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 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별표 10(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세전기준))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 이때, 미래기대수익의 현가는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 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지 사유별로 본 협약 제 60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분담 비율을 적용함.

[추정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left(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3}{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2}{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1}{6} \right)$$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통행료수입의 합}}{\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통행료수입의 합}}$$



### 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

#### 1. 운영설비

① 통행료징수시스템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연수	수량	단가	교체율	교체액	운영 27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고
<b>1. TCS</b>						<b>535</b>		
<b>(1)영업소 설비</b>						<b>204.0</b>		
영업소부문								
주전산기	7	1	108	50%	54	54	운영 34년차	
중계서버 및 보안모듈	7	1	152	50%	76	76	운영 34년차	
DB 및 TOOL	7	1	48	50%	24	24	운영 34년차	
방화벽 등	7	1	59	50%	29	29	운영 34년차	
TCS운영단말기&프린터	7	1	4	50%	2	2	운영 34년차	
네트워크 설비	7	1	6	50%	3	3	운영 34년차	
무정전 전원장치	7	1	31	50%	16	16	운영 34년차	
<b>(2)현장설비</b>						<b>331</b>		
부스설비								
요금터미널	7	4	30	60%	72	72	운영 34년차	
교통카드리더	7	4	11	60%	26	26	운영 34년차	
영수증발행기	7	4	7	60%	17	17	운영 34년차	
부스	7	4	26	60%	63	63	운영 34년차	
차로설비								
차종분류장치	7	4	37	60%	89	89	운영 34년차	
네트워크 설비	7	1	6	60%	4	4	운영 34년차	
차종 및 요금표시기	7	4	7	60%	17	17	운영 34년차	
신호등	7	4	1	60%	3	3	운영 34년차	
차량감지장치	7	4	17	60%	40	40	운영 34년차	

- 표계속

구 분	내용 연수	수량	단가	교체율	교체액	운영 27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 고
<b>2. ETCS</b>						<b>515</b>		
<b>(1)영업소 설비</b>						<b>3.3</b>		
영업소부문								
	ETCS 운영단말기	7	1	2	50%	1	1	운영 34년차
	충전단말기	7	1	2	50%	1	1	운영 34년차
	충전용 운영 PC	7	1	1	50%	0	0	운영 34년차
	충전영수증 발행기	7	1	1	50%	0	0	운영 34년차
	잔액조회기	7	1	1	50%	0	0	운영 34년차
<b>(2)현장설비</b>						<b>511</b>		
차로설비								
	안테나 (IR/RF)	7	8	20	60%	98	98	운영 34년차
	센트리(1, 2)	7	4	54	60%	130	130	운영 34년차
	차중분류장치	7	4	37	60%	89	89	운영 34년차
	운전자표시기	7	4	8	60%	19	19	운영 34년차
	차량감지장치 (CD기)	7	4	30	60%	72	72	운영 34년차
	통합형 차로제어기	7	4	42	60%	101	101	운영 34년차
	신호등 (LCS)	7	4	1	60%	3	3	운영 34년차
<b>3. 도주차량 촬영시스템설비</b>						<b>147</b>		
<b>(1)영업소</b>						<b>147</b>		
차로설비								
	영상서버 (S/W 포함)	7	1	13	50%	7	7	운영 34년차
	영상프린터	7	1	5	50%	2	2	운영 34년차
차선설비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등	7	8	29	60%	138	138	운영 34년차
<b>총 계</b>						<b>1,197</b>		

주) 2011년 4월 기준단가이며, 각 설비별 세부 구성내역은 부속서류 참조

주) 운영설비 장비에 대하여 인계 시점에 생산되어지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

② 교통관리시스템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용연수	수량	단가	교체율	교체액	운영 27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 고
<b>1.현장설비</b>						<b>2,678</b>		
신호제어 시스템	7	1	60	50%	30	30	운영 34년차	
영상유고 시스템	7	1	786	50%	393	393	운영 34년차	
터널진입차단막	7	3	96	60%	173	173	운영 34년차	
VMS(본선 진입용)	7	3	88	60%	158	158	운영 34년차	
VMS(터널내)	7	3	44	50%	67	67	운영 34년차	
RMS 설비	7	1	60	60%	36	36	운영 34년차	
LCS 설비	7	36	14	50%	259	259	운영 34년차	
VDS 설비	7	40	17	60%	403	403	운영 34년차	
CCTV 터널내	7	48	20	50%	490	490	운영 34년차	
CCTV 옥외용	7	3	42	60%	76	76	운영 34년차	
CCTV 건물용	7	3	11	60%	19	19	운영 34년차	
비상전화 터널내	7	171	7	50%	575	575	운영 34년차	
<b>2. 센터설비</b>						<b>902</b>		
센터설비	7	1	1,804	50%	902	902	운영 34년차	
<b>3. 광전송장비</b>						<b>482</b>		
광전송장비	7	1	963	50%	482	482	운영 34년차	
<b>총 계</b>						<b>4,061</b>		

주) 2011년 4월 기준단가이며, 각 설비별 세부 구성내역은 부속서류 참조

주) 운영설비 장비에 대하여 인계 시점에 생산되어지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

③ 유지관리장비

(단위:백만원)

구 분	내용연수	수량	단가	교체율	교체액	운영 21년차	운영 25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 고
<b>1.차량운반구</b>							<b>225</b>		
쏘렌토	6	1	23	100%	23		23	운영 31년차	
봉고Ⅲ	6	3	12	100%	36		36	운영 31년차	
청소차량(신정개발)	6	1	86	100%	86		86	운영 31년차	
소형미분무 소화장비	6	2	30	100%	60		60	운영 31년차	
살포기	6	1	9	100%	9		9	운영 31년차	
제설기	6	2	6	100%	12		12	운영 31년차	
<b>2.장비 및 공구</b>						<b>89</b>			
점검장비	10	1	60	100%	60	60		운영 31년차	
공구류	10	1	26	100%	26	26		운영 31년차	
응급의료장비	10	1	1	100%	1	1		운영 31년차	
소방안전장비	10	1	2	100%	2	2		운영 31년차	
제설장비	5	1	0	100%	0	0		운영 31년차	
<b>총 계</b>						<b>89</b>	<b>225</b>		

주) 2011년 4월 기준단가이며, 각 설비별 세부 구성내역은 부속서류 참조

주) 운영설비 장비에 대하여 인계 시점에 생산되어지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

2. 집기비품 대체비

(단위:백만원)

구 분	산정내역	단가	내용 연수	운영 24년차	운영 25년차	운영 27년차	운영 30년차	차기 교체시기
차량운반구								
그랜저	대표이사용	35.88	6년		1대			운영31년차
쏘렌토	업무용	22.70	6년		1대			운영31년차
집기비품								
책 상								
임원용	임원당 1개	0.35	8년			1개		운영35년차
팀장용	팀장당 1개	0.19	8년	1개		2개		운영32년차 1개 운영35년차 2개
직원용	일반 직원당 1개, 영업	0.12	8년	2개		4개		운영32년차 2개 운영35년차 4개
의 자								
임원용	임원당 1개	0.16	6년		1개			운영31년차
팀장용	팀장당 1개	0.10	6년		2개		1개	운영31년차 2개 운영36년차 1개
직원용	일반 직원당 1개, 영업	0.07	6년		4개		2개	운영31년차 4개 운영36년차 2개
책 장								
임원용	임원당 1개(원목)	0.21	8년			1개		운영35년차
직원용	팀장당 1개	0.11	8년	1개		2개		운영32년차 1개 운영35년차 2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대형(10인용)	대회의실용 1개	0.09	8년			1개		운영35년차
소형(6인용)	임원 및 팀당 1개	0.08	8년	1개		3개		운영32년차 1개 운영35년차 3개
대형회의용 의자	대회의실용 12개	0.08	8년			12개		운영35년차
소형회의용 의자	임원 및 팀당 6개	0.06	8년	6개		18개		운영32년차 6개 운영35년차 18개
소파 및 탁자								
사장실 소파	사장실 (세트당7개)+쇼파	0.10	8년			7개		운영35년차
사장실 테이블	사장실 1개	0.11	8년			1개		운영35년차
일반 소파	임원 및 팀당 1개	0.10	8년	1개		3개		운영32년차 1개 운영35년차 3개
일반 테이블	임원 및 팀당 1개	0.10	8년	1개		3개		운영32년차 1개 운영35년차 3개
사무용품								
캐비닛(5단)	임원 및 팀당 1개	0.18	6년		3개		1개	운영31년차 3개 운영36년차 1개
사물함	6개	0.19	6년		6개			운영31년차
화일박스	팀당 1개	0.15	6년		2개		1개	운영31년차 2개 운영36년차 1개

구 분	산정내역	단가	내용 연수	운영 24년차	운영 25년차	운영 27년차	운영 30년차	차기 교체시기
	도면함	1개	0.58	6년		1개		운영31년차
	월중행사관	임원 및 팀당 1개	0.07	6년		3개	1개	운영31년차 3개 운영36년차 1개
	게시관	사장실	0.07	6년		1개		운영31년차
	화이트보드	사장실1개 회의실1개	0.09	6년		2개		운영31년차
	복사기	전체2대	1.42	6년		2개		운영31년차
	키폰 (시스템포함)	팀당 1대	1.25	6년		2개	1개	운영31년차 2개 운영36년차 1개
	전화기	임·직원당 1대	0.03	6년		7개	3개	운영31년차 7개 운영36년차 2개
	FAX	팀당 1대	0.34	6년		2개	1개	운영31년차 2개 운영36년차 1개
	FAX 테이블	팀당 1대	0.11	6년		2개	1개	운영31년차 2개 운영36년차 1개
	금고	1개	1.44	6년		1개		운영31년차
	분말소화기	15개	0.02	6년		15개		운영31년차
	지폐계수기	3개	0.43	6년		3개		운영31년차
	주화계수기	2개	0.64	6년		2개		운영31년차
전산용품								
	PC	임·직원당 1대+2대	0.82	5년			12개	운영35년차
	프린터(흑백)	팀당 1대	1.01	5년			3개	운영35년차
	프린터(컬러)	관리팀 1대	1.24	5년			1개	운영35년차
	MS-office 프로그램	팀당 1개	0.35	5년			3개	운영35년차
	한글프로그램	팀당 1개	0.18	5년			3개	운영35년차
	스캐너	관리팀 1대	0.58	6년		1개		운영31년차
	TV	임원실, 영업소, 회의실	0.76	6년		3개		운영31년차
	빔프로젝터	시설팀 1대	1.16	6년		1개		운영31년차
	에어컨	2개	1.15	6년		2개		운영31년차
	진공청소기	2개	0.13	6년		2개		운영31년차
	전자레인지	1개	0.13	6년		1개		운영31년차
	디지털카메라	팀당 1대	0.44	6년		2개	1개	운영31년차 2개 운영36년차 1개
	냉온수기	2개	1.55	6년		2개		운영31년차
	세탁기	1개	0.51	6년		1개		운영31년차
	침대	갱의실, 당직실	0.23	6년		2개		운영31년차
	화장대	여갱의실1개	0.74	6년		1개		운영31년차
	소형냉장고	사장실 1대	0.16	6년		1개		운영31년차
	일반냉장고	식당 1대	0.48	6년		1개		운영31년차

주) 집기비품에 대하여 인계 시점에 생산되어지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

별표 13

## 재무모델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전자파일을 CD-ROM으로 별첨함.

**서 부 간 선 지 하 도 로**

**민 간 투 자 사 업**

**실 시 협 약**

**2015. 3. 11**

**서 을 특 별 시**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 [ 목 차 ]

<b>제 1 장 총 칙</b> .....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	2
제 4 조 (협약의 해석) .....	11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	12
<b>제 2 장 기본 약정</b> .....	12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2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13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14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14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14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	15
<b>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b> .....	15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15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	15
<b>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b> .....	17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17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17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18
<b>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b> .....	18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	18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	19
제 19 조 (공사비) .....	19
제 20 조 (공사기간) .....	20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20
제 22 조 (공정관리) .....	20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21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21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22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	22
제 27 조 (문화재) .....	23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	23



제 29 조 (지체상금) .....	24
제 30 조 (보험가입) .....	24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	25
제 32 조 (기성검사) .....	26
제 33 조 (민원처리) .....	26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27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등) .....	27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등) .....	28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28
제 38 조 (조기준공) .....	29
제 39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30
<b>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b> .....	<b>30</b>
제 40 조 (운영비용) .....	30
제 41 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	31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31
제 43 조 (운영실적의 제출) .....	32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32
제 45 조 (경미한 사업) .....	33
<b>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b> .....	<b>33</b>
제 46 조 (사업수익률) .....	33
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	33
제 48 조 (통행료의 징수) .....	34
제 49 조 (통행료의 정산) .....	35
<b>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b> .....	<b>35</b>
제 50 조 (재정지원) .....	35
제 51 조 (행정적 지원) .....	36
제 52 조 (사업부지의 제공) .....	37
제 53 조 (보상업무) .....	38
제 54 조 (초과 통행료 수입 환수) .....	38
제 55 조 (수요위험의 처리) .....	39
<b>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b> .....	<b>40</b>
제 56 조 (위험배분의 원칙) .....	41
제 57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41
제 58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	42
제 59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42
제 60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43

<b>제 10 장</b>	<b>협약의 종료</b>	<b>44</b>
제 61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44
제 62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44
제 63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46
제 64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47
제 65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48
제 66 조	(매수청구권)	48
제 67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49
<b>제 11 장</b>	<b>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b>	<b>49</b>
제 68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49
제 69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50
제 70 조	(출자지분의 변경)	50
제 71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51
제 72 조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의 보고)	52
제 73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52
<b>제 12 장</b>	<b>분쟁의 해결</b>	<b>52</b>
제 74 조	(분쟁의 해결)	52
제 75 조	(중 재)	53
<b>제 13 장</b>	<b>기타 사항</b>	<b>53</b>
제 76 조	(협약의 변경)	53
제 77 조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권)	54
제 78 조	(협약의 수익자)	54
제 79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55
제 80 조	(일부무효)	55
제 81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55
제 82 조	(비밀유지)	55
제 83 조	(통지)	56
제 84 조	(언어)	57
제 85 조	(준거법)	57
제 86 조	(협약의 효력)	57

## [ 별 표 ]

[별표 1] 출자자 구성 .....	58
[별표 2]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59
[별표 3]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	60
[별표 4]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	61
[별표 5] 보 험 내 역 .....	62
[별표 6] 추정교통량 .....	64
[별표 7] 추정통행료수입 .....	65
[별표 7-2] 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추정 교통량 .....	66
[별표 8] 운영비용 .....	67
[별표 9]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	69
[별표 10] 해지시 지급금 .....	71
[별표 11] 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 .....	77
[별표 12] 재무모델 .....	81

## 전 문

서울특별시(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는 BTO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를 2009년 12월 31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10년 6월 14일 (가칭)서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차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구간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 주요시설 :
  - 가. 터널 7,840m
  - 나. 지하차도 2,490m
  - 다. 영업소 1개소
4. 제 원 :
  - 가. 10.33km(왕복4차로), 설계속도 80km/h

##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용으로 충당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월: 어느 역월의 특정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설기간: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대한민국 법률 제12579호 건설기술진흥법을 말한다.

4. 건설보조금: 제50조(재정지원)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건설이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6. 경미한 사업: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 및 본 협약 제45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7. 계열회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사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공사기간: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공사비: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1. 공사착수일: 제21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2. 관계기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3.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5. 교통량: 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총량을 말한다.
1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한민국 법률 제1201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말한다.
17.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8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18. 기본재무모델: 본 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9. 기준이자율: 그 산정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신용등급의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잔존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0. 기준재무모델: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제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

한다.

21. 기준통행료: <별표7>(추정통행료수입)에 정한 기준통행료를 말한다.
22. 담보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3.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4. 문화재: 대한민국 법률 제12692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5. 물가변동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0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별표 12>(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단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 준공시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26.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법률 제1224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27.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35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2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29. 발굴조사: 대한민국 법률 제 1269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시행 결과,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0. 법령: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31. 법령 등: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한다.
32. 보조금: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하나로서 법령 등 및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33. 본 도로: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로서 제3차 제안공고에서 특정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부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구간 중 터널, Box 및 U-type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10.33km의 도로시설을 말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등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34. 본 사업: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5. 본 사업부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36. 본 사업수입: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료수입과 기타 수입을 말한다.
37. 본 사업시설: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시설(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8. 본 협약: 본 실시협약을 말한다.
39. 분기: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0. 불가항력 사유: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5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41. 비교재무모델: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42. 사업제안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5월 3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43. 사업기간: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4. 사업수익률: 본 협약 제46조(사업수익률)에서 정한 세전 실질수익률을 말한다.
45. 사업시행자: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칭)서서울 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46.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7. 사업이행보증: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48.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한다.
49. 설계감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각 호의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0. 설계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협약 제35조(공사책임감리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51.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52.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2007년 7월 3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53. 시공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54. 실시계획: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한다.
55.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지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및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8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56.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57. 운영개시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라 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58.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59. 운영연도: 운영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연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60. 위험물: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동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의미한다.
61. 유지관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62. 인·허가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기타 관계기관, 기타 제반공급을 제공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63. 일 또는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한다.
64. 자(者):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65. 자금재조달(Refinancing):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본다. 단,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출자지분 변경 이외의 자금재조달행위가 없는 경우를 말함)은 자금재조달 대상에서 제외한다.
66. 자금차입: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7. 자금차입계약: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 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68. 자본금: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69. 재무모델: <별표 12>(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
70. 제반공급: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71. 제3자 제안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2197호(2009. 12. 3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말한다.
72. 제세공과금: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73. 준공: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74.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착수일의 연기 또는 공사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시 그 연기된 공사착수일 또는 변경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75. 준공일: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76. 준공전 사용인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77. 준공확인필증: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78. 지방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1179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79. 지장물: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80. 채권금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81. 총건설사업비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주무관청부담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82. 총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별표 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다.
83.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84. 총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별표 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85. 최초통행료: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말한다.
86. 추정 통행료수입: <별표7>(추정 통행료수입)에 명시된 특정 운영연도 통행료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87. 출자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70조(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88. 출자예정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

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89. 통신감리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협약 제35조(공사책임감리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통신감리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90.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시설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를 말한다.
91. 통행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말한다.
92. 해지일: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 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93. 협약당사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94. 환수기준 통행료수입: <별표7>(추정 통행료수입)에 명시되어 있는 각 운영연도의 추정 통행료수입(해당 년도의 1월 31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함)의 100%를 말한다.

#### 제 4 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본 협약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등”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

는 사항”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또는 별표가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또는 별표를 의미한다.
-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자,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⑧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⑨ 본 협약상 기간의 계산은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 1. 민간투자법
  - 2. 민간투자법 시행령
  - 3. 제3자 제안공고
  -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제 2 장 기본 약정**

####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

행자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 2. 본 사업부지 내에 서울특별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및 통행료의 부과 또는 징수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시까지 대출약정 체결에 의한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 등 본 협약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소유로 하며, 본 협약 종료시에는 제61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및 제63조(협약해지시의 효과)에 따라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등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0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금 5,199.61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 1,351.49억원 및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 28.39억원을 제외한 금 3,819.73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한국도로공사의 설계기준 포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

감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이 증감되는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가 적용되어(위 한시적 규정이 연장되지 못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본 사업시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7.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② 설계감리계약, 통신감리계약 및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된 금액이 본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 등의 이유로 실정 보고하여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금액을 최종 합산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되 실시협약에서 정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
- ④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본 협약 제5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하되,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별표 4>(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조정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통행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

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장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본 사업시설 건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업시행법인의 자기자본은 총민간투자비의 최소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15% 이상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별표 3> (약정투자금 일정)와 같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3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제1항의 자기자본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의 자기자본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최초 금융약정 이후 자금재조달시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100분의 70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후순위채의 조달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표 3>(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에 제3자 제안공고(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제안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제안서는 본 협약 체결 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초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 **제 19 조 (공사비)**

공사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금 4,584.06억원으로 한다.

## 제 20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 ②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보고서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22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11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

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조치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나 지장물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제5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 27 조 (문화재)

-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등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정산하여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처리한다. 다만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었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제5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문화재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제5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④ 문화재의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제5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건설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건설사업비로 본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 **제 30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별표5>(보험내역)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사업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익월 10일 이내)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제5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제 32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3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훼손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 ②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 ④ 시공 및 운영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등)**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등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 설계감리자 및 통신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각 감리자와 관련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공사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설계감리자 및 통신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각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 설계감리자 및 통신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를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를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감리자는 제31조(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른 검사, 제32조(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36조(예비준공검사 등)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제9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90일전까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

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을 위반한 점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여야 한다.

### 제 38 조 (조기준공)

- ① 협약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준공”) 준공일로부터 당초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주무관청은 조기준공의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시점을 앞당기거나(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이 앞당겨진 만큼 종료시점 역시 앞당겨짐)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기준공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통행료 징수, 수수료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39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전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전 사용인가를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며, 이 경우 수입 및 비용의 처리는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일부가 준공(부분준공)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 40 조 (운영비용)

-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금 1,815.85억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8>(운영비용)과 같다.
- ② 협약당사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5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별표8>(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시 법령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여부를 고려한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행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1 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동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등의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거나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적용될 규정(교통부속시설을 포함,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규정, 홍지문 터널 안전점검 편람, 유지보수작업 매뉴얼 등)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그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한다. 또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전 운영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입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등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입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 **제 43 조 (운영실적의 제출)**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주무관청에게 본 도로에 대한 전년도 교통량 현황 및 통행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9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 등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제 45 조 (경미한 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 **제 46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89%(세후 4.99%)로 하되, 제41조(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 ① 본 사업의 최초통행료는 사업시행자가 <별표7>(추정 통행료수입)에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 말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별표3>(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른 투입일정과 실제 투입일정이 차

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투입일정을 반영하여 최초통행료를 산정한다. 이 때, 실제 투입일정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는 시점을 말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최초통행료의 결정을 위하여 운영개시일 5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통행료
  - 2. 통행료산출 기초자료
  - 3. 통행료 징수방법
  - 4.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 5.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등
  - 6.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직전 연도 통행료에 직전 연도 통행료 산정 기준일로부터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 관청에 매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

#### 제 48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

는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②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한 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불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무관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통행료에 추가하여 유료도로법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

#### 제 49 조 (통행료의 정산)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가 고속도로 등 다른 유료도로와 접속되어 연계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교통관리체계, 통행료징수방식 등을 연계도로와 동등 수준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무관청에서 통행료 체계의 연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통행료는 협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본 도로와 연계된 도로구간과 통행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 등 연계도로의 운영권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통행료 징수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한다.

###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 50 조 (재정지원)

- ① 본 협약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351.49억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별표4>(건설보조금 지급일정)과 같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의한 건설보조금을 분기별로 <별표 4>(건설보조금 지급일

정)이 정한 일정에 따르되 공사수행 누계 실적공정률(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누계 실적공정의 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2007년 7월 31일부터 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실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누계 실적공정이 누계 계획공정에 미달하여 예정된 건설보조금의 지급을 유보한 경우, 미달된 공정이 만회되었음이 확인된 분기의 건설보조금 지급시 유보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제22조(공정관리)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적공정률과 관계 없이 당해 분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건설보조금 전액(전분기미지급액+금분기지급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유보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 51 조 (행정적 지원)

- ①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포함)는 주무관청이 추진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 제 52 조 (사업부지의 제공)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보상 일정 및 부지의 인도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부지를, 이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이의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본 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동안 제세공과금 및 담보권의 부담 없이 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 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등이 없었던 경우 또는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본 사업부지를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제 53 조 (보상업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의 토지 등(토지, 물건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에 위탁하기로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54 조 (초과 통행료 수입 환수)**

- ① 각 운영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수입이, (가) 해당 연도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그 초과분(초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제외)을 공유하며, (나)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i)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00% 초과 120% 이하인 부분(해당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제외)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공유하고 (ii)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제외)은 주무관청에게 환급하되,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충당
  - 2. 통행료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단축
- ② 제1항에 의한 초과 통행료수입 환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된 운영수입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환수금액을 확정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동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주무관청에 환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환수금액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55 조 (수요위험의 처리)**

- ①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검토 보고서(2013.6.3) 상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의 시행이 본 시설의 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시설의 준공예정일 1년 전에 그 시점까지의 주무관청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수요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별표 7-2>(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추정 교통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통행료 수입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금 지급 또는 통행료 조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등으로 반영한다. 다만, 교통수요 재검증을 통해 산출한 교통량이 <별표 7-2> 상의 일반도로화시 추정교통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검증 교통량이 서부간선도로 준치시 추정교통량 이상인 경우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시 추정수입과 재검증 추정수입의 차액
  2. 재검증 교통량이 서부간선도로 준치시 추정교통량 미만일 경우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시 추정수입과 서부간선도로 준치시 추정수입의 차액
- ③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경쟁 도로 건설 배제를 요청할 수 없다. 단, 본 협약 체결 시 교통량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준공 및 입주완료된 이후에는, 협약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통행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등으로 본 협약에 반영하기로 한다.

##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제 56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 제 57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7.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3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 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 58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포함한다.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단, 주무관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에도 보상업무 관련하여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5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의무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제 59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 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통행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착수가 방해를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복구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용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⑥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 60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를 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 발생으로 인한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의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제 10 장 협약의 종료

### 제 61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3년,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11>(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 제 62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제5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제57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는 이로 인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운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8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58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9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



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69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 63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① 제62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 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62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한 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단,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상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점 이후에 수리 또는 보수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수리 또는 보수 범위에서 제외하되, 운영개시일로부터 협약해지일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제 64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0> (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표10>(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 12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 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해지의 효력발생일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의 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다.
4. 제63조(협약해지시의 효과) 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대수선 비용 중 사업시행자가 미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 **제 65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4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 ③ 협약당사자는 해지시지급금 시기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66 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 이라고 한다)은,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67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조달**

**제 68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이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권리 및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 제 69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70 조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출자자(이하 예정출자자를 포함한다)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별표1>(출자자 구성)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이하 예정출자지분 포함한다)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또는 제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71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정부보조금 제외)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자금재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변경 약정 또는 금융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제6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5호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을 재산정하여 실시협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금재조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 ⑧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2조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 내용 및 절차 등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본 협약 체결 이후 개정되거나 대체하는 계획을 포함)에 따른다.

### 제 73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측정은 자금재조달 승인시점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 제 12 장 분쟁의 해결

### 제 74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민간투자법 제44조의3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75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④ 제75조(중재)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

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상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 협약 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⑤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 75 조 (중 재)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② 중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며,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상사중재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제 13 장 기타 사항

### 제 76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⑥ 협약당사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 2(사업시행조건 조정)(본 협약 체결 이후 개정되거나 대체하는 계획을 포함)에서 정하는 사유의 발생 시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시기, 절차 및 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7조(주무관청의 시정요구권)**

-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사전승인없이 집행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안과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78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79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 **제 80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81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 **제 82 조 (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제 83 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수신 :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전화 : 02-2133-8073      팩스 : 02-2133-0764

E-mail : kjungsik@seoul.go.kr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여의도동 대영빌딩 341호)

수신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전화 : 02-786-9105      팩스 : 02-786-9109

E-mail : ldk922@empas.com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84 조 (언어)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모든 의사교환은 한국어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영문본 또는 한글을 제외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본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 85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 제 86 조 (협약의 효력)

- ①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한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②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 표 이 사

이 영 태 (인)

[별표 1] 출자자 구성

(단위 : 억원)

출 자 자	지 분 율	금 액	비 고
(가칭) 한국도로인프라 사모특별자산집합투자신탁	90.00%	752.20	재무적출자자
현대건설(주)	3.80%	31.76	건설출자자
지에스건설(주)	3.59%	30.00	"
(주)포스코건설	0.90%	7.52	"
두산건설(주)	0.81%	6.77	"
(주)케이씨씨건설	0.45%	3.76	"
일신건설(주)	0.27%	2.25	"
신동아종합건설(주)	0.18%	1.50	"
계	100.00%	835.78	

주1) 경상가격 기준(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4.0% 적용하여 산정)

[별표 2]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조사비	6.30	6.30	-	-	-	-	-
2.설계비	146.07	146.07	-	-	-	-	-
3.공사비	4,584.06	-	247.54	1,227.15	1,423.35	870.05	815.96
4.보상비	28.39	-	28.39	-	-	-	-
5.부대비	272.98	26.47	74.57	67.39	47.08	29.57	27.90
6.운영설비비	115.55	4.17	-	-	-	-	111.39
7.제세공과금	0.11	0.11	-	-	-	-	-
8.영업준비금	46.15	4.41	9.17	7.56	6.75	6.75	11.52
총사업비	5,199.61	187.52	359.67	1,302.11	1,477.18	906.37	966.76
건설보조금	1,351.49	-	-	324.49	454.26	290.57	282.16
보 상 비	28.39	-	28.39	-	-	-	-
총민간사업비	3,819.73	187.52	331.28	977.62	1,022.92	615.80	684.60

주)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별표 3]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재정지원금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주주차입금	일반차입금		
2013년	1/4분기	0.00	0.00	0.00	0.00	0.00	0.00
	2/4분기	0.00	0.00	0.00	0.00	0.00	0.00
	3/4분기	7.00	7.00	7.00	0.00	0.00	0.00
	4/4분기	219.80	219.80	219.80	0.00	0.00	0.00
	소계	226.80	226.80	226.80	0.00	0.00	0.00
2014년	1/4분기	158.32	123.64	123.64	0.00	0.00	34.68
	2/4분기	52.07	52.07	52.07	0.00	0.00	0.00
	3/4분기	126.02	126.02	126.02	0.00	0.00	0.00
	4/4분기	109.14	109.14	109.14	0.00	0.00	0.00
	소계	445.55	410.87	410.87	0.00	0.00	34.68
2015년	1/4분기	243.33	243.33	198.11	45.22	0.00	0.00
	2/4분기	298.82	211.02	0.00	211.02	0.00	87.80
	3/4분기	480.85	371.37	0.00	22.35	326.67	131.83
	4/4분기	679.85	477.90	0.00	0.00	477.90	201.94
	소계	1,702.85	1,281.27	198.11	278.59	804.57	421.58
2016년	1/4분기	712.22	499.97	0.00	0.00	499.97	212.25
	2/4분기	634.88	446.12	0.00	0.00	446.12	188.77
	3/4분기	405.59	288.06	0.00	0.00	288.06	117.53
	4/4분기	313.81	225.39	0.00	0.00	225.39	88.42
	소계	2,066.51	1,459.53	0.00	0.00	1,459.53	606.98
2017년	1/4분기	258.27	187.33	0.00	0.00	187.33	70.94
	2/4분기	308.42	221.31	0.00	0.00	221.31	87.11
	3/4분기	392.32	277.89	0.00	0.00	277.89	114.43
	4/4분기	452.11	318.31	0.00	0.00	318.31	133.81
	소계	1,411.13	1,004.84	0.00	0.00	1,004.84	406.29
2018년	1/4분기	426.23	300.74	0.00	0.00	300.74	125.50
	2/4분기	395.64	280.44	0.00	0.00	280.44	115.21
	3/4분기	291.54	211.28	0.00	0.00	211.28	80.26
	4/4분기	483.63	396.08	0.00	0.00	396.08	87.55
	소계	1,597.04	1,188.53	0.00	0.00	1,188.53	408.51
합 계	7,449.88	5,571.84	835.78	278.59	4,457.47	1,878.04	

주1) 경상가격 기준(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4.0% 적용하여 산정)

주2) 약정투자금 투입은 실제공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3) 총투자비 및 재정지원금은 보상비 포함 금액임

[별표 4]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건설보조금		보상비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2013년	1/4분기	0.00	0.00	0.00	0.00
	2/4분기	0.00	0.00	0.00	0.00
	3/4분기	0.00	0.00	0.00	0.00
	4/4분기	0.00	0.00	0.00	0.00
	소 계	0.00	0.00	0.00	0.00
2014년	1/4분기	0.00	0.00	28.39	34.68
	2/4분기	0.00	0.00	0.00	0.00
	3/4분기	0.00	0.00	0.00	0.00
	4/4분기	0.00	0.00	0.00	0.00
	소 계	0.00	0.00	28.39	34.68
2015년	1/4분기	0.00	0.00	0.00	0.00
	2/4분기	68.43	87.80	0.00	0.00
	3/4분기	101.74	131.83	0.00	0.00
	4/4분기	154.33	201.94	0.00	0.00
	소 계	324.49	421.58	0.00	0.00
2016년	1/4분기	160.62	212.25	0.00	0.00
	2/4분기	141.45	188.77	0.00	0.00
	3/4분기	87.21	117.53	0.00	0.00
	4/4분기	64.97	88.42	0.00	0.00
	소 계	454.26	606.98	0.00	0.00
2017년	1/4분기	51.62	70.94	0.00	0.00
	2/4분기	62.77	87.11	0.00	0.00
	3/4분기	81.65	114.43	0.00	0.00
	4/4분기	94.54	133.81	0.00	0.00
	소 계	290.57	406.29	0.00	0.00
2018년	1/4분기	87.80	125.50	0.00	0.00
	2/4분기	79.82	115.21	0.00	0.00
	3/4분기	55.07	80.26	0.00	0.00
	4/4분기	59.48	87.55	0.00	0.00
	소 계	282.16	408.51	0.00	0.00
합 계		1,351.49	1,843.36	28.39	34.68

주1)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이며, 경상금액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4.0% 적용

주2) 실제 건설보조금 지급시 해당시점까지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가산하여 건설보조금을 지급함



[별표 5] 보 험 내 역

1. 건설기간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포함) 2) 예정이익상실보험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보험 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본공사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 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입는 각종 재정적 손실 담보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인직원의 재해보상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재해 : 화재, 폭발, 도난 등 - 자연재해 : 비, 홍수, 바람, 폭풍, 지진, 해일 등 - 기술적원인 재해 : 사태, 붕괴, 미숙련, 시공결함 등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적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담보지역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공사기간 담보	
부보금액	1) 건설공사보험 : 공사비, 운영설비비(유지관리 장비 제외) 2) 예정이익상실보험 : 운영초기 12개월간 고정비 + 지급이자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건설기간 중 법인의 인건비	

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령을 따르기로 함

## 2. 운영기간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완성공사물보험 (C.C.A.R) 2) 영업배상책임보험 (C.G.L) 3) 기업휴지보험 (BI)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EL)	
보험 목적물	1) 완성공사물보험 : 완성공사물+운영설비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C.G.L)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BI)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인직원 재해보상	
보상내용	1) 완성공사물보험 - 인위적 재해 : 화재, 폭발, 도난 등 - 자연재해 : 비, 홍수, 바람, 폭풍, 지진, 해일 등 - 기술적 원인 재해 : 사태, 붕괴, 미숙련, 시공결함 등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 배상책임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BI)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적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등	
담보지역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운영 전기간	
부보금액	1) 완성공사물보험 : 공사비, 운영설비비(유지관리 장비 제외) 2)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 10억원 (한 사고당 및 총 보상한도) 3) 기업휴지보험 : 고정비(인건비+경비+유지관리비)와 지급이자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운영기간중 법인의 인건비	

[별표 6] 추정교통량

(단위 : 대/일)

년도	추정교통량	년도	추정교통량
2019년	53,189	2034년	60,817
2020년	55,539	2035년	61,094
2021년	57,889	2036년	61,372
2022년	58,108	2037년	61,372
2023년	58,328	2038년	61,372
2024년	58,547	2039년	61,372
2025년	58,767	2040년	61,372
2026년	58,985	2041년	61,372
2027년	59,184	2042년	61,372
2028년	59,383	2043년	61,372
2029년	59,582	2044년	61,372
2030년	59,781	2045년	61,372
2031년	59,983	2046년	61,372
2032년	60,261	2047년	61,372
2033년	60,539	2048년	61,372

[별표 7] 추정통행료수입

(단위 : 억원, 부가세제외)

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불변수입	경상수입		불변수입	경상수입
2019년	330.97	525.53	2035년	380.17	1,130.60
2020년	345.60	570.69	2036년	381.89	1,181.15
2021년	360.22	618.63	2037년	381.89	1,228.40
2022년	361.58	645.82	2038년	381.89	1,277.54
2023년	362.95	674.19	2039년	381.89	1,328.64
2024년	364.31	703.79	2040년	381.89	1,381.78
2025년	365.68	734.69	2041년	381.89	1,437.05
2026년	367.04	766.92	2042년	381.89	1,494.54
2027년	368.28	800.28	2043년	381.89	1,554.32
2028년	369.52	835.10	2044년	381.89	1,616.49
2029년	370.76	871.41	2045년	381.89	1,681.15
2030년	372.00	909.30	2046년	381.89	1,748.40
2031년	373.25	948.85	2047년	381.89	1,818.33
2032년	374.98	991.38	2048년	381.89	1,891.07
2033년	376.71	1,035.79	합 계	11,186.99	33,483.98
2034년	378.44	1,082.17			

- 주) 1.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임  
 2. 통행료는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1,974원(VAT포함)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최초통행료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시 결정됨.  
 3. 면제 및 할인차량을 고려한 감면을 5.0%을 반영한 통행료수입임.  
 4. 국비지원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경우 통행료는 변경 가능함.

[별표 7-2] 민자적격성조사 재검증 추정 교통량

구분	적격성 재검증		차 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서부간선도로 존치	
	추정교통량(대/일)(A)	추정교통량(대/일)(B)	A - B
2019년	46,177	36,479	9,698
2020년	46,313	36,464	9,849
2021년	46,449	36,450	9,999
2022년	46,611	36,663	9,948
2023년	46,774	36,878	9,896
2024년	46,937	37,094	9,843
2025년	47,101	37,311	9,790
2026년	47,265	37,529	9,736
2027년	47,357	37,684	9,673
2028년	47,450	37,839	9,611
2029년	47,542	37,995	9,547
2030년	47,635	38,152	9,483
2031년	47,728	38,309	9,419
2032년	47,565	38,095	9,470
2033년	47,402	37,883	9,519
2034년	47,240	37,671	9,569
2035년	47,079	37,461	9,618
2036년	46,918	37,252	9,666
2037년	46,918	37,252	9,666
2038년	46,918	37,252	9,666
2039년	46,918	37,252	9,666
2040년	46,918	37,252	9,666
2041년	46,918	37,252	9,666
2042년	46,918	37,252	9,666
2043년	46,918	37,252	9,666
2044년	46,918	37,252	9,666
2045년	46,918	37,252	9,666
2046년	46,918	37,252	9,666
2047년	46,918	37,252	9,666
2048년	46,918	37,252	9,666
30년평균/합계	47,019	37,341	9,678

주) 본 추정교통량은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2014년 적격성조사 재검증 보고서상의 교통수요 예측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 교통수요임.

[별표 8] 운영비용

(단위 : 억원)

년도	법인세제외 운영비용	법인세	계	년도	법인세제외 운영비용	법인세	계
2019년	48.86	-	48.86	2035년	46.82	58.97	105.79
2020년	48.29	-	48.29	2036년	59.70	62.13	121.82
2021년	54.63	3.68	58.31	2037년	49.38	62.62	112.00
2022년	47.75	16.26	64.00	2038년	111.63	63.14	174.77
2023년	47.94	17.13	65.06	2039년	47.39	42.63	90.02
2024년	61.46	19.59	81.05	2040년	90.94	72.46	163.40
2025년	50.01	21.92	71.93	2041년	46.44	62.84	109.28
2026년	47.11	26.49	73.61	2042년	86.11	66.72	152.83
2027년	47.87	31.58	79.45	2043년	51.40	56.98	108.38
2028년	59.83	33.92	93.75	2044년	45.41	68.65	114.06
2029년	85.49	33.53	119.02	2045년	45.56	68.10	113.66
2030년	76.48	41.61	118.08	2046년	61.74	68.02	129.76
2031년	49.78	38.13	87.91	2047년	47.03	63.29	110.32
2032년	55.52	48.61	104.12	2048년	104.74	91.79	196.54
2033년	86.64	48.31	134.95	합 계	1,815.85	1,330.26	3,146.11
2034년	53.90	41.16	95.06				

주)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 항목별 운영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1.인건비	231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2.제경비	414	17	18	20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3.유지보수비	514	4	5	9	9	9	10	9	9	10	20	10	26	10	16	48	16	9	10	11	73	9	17	10	36	13	9	9	24	11	53	
4.전력비	3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유형자산 채투자비	159	2					13	3			1	38	13	2	1	1			13	2	1	1	38		13	2				1		15
6.각종수수료	10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7.보험료	95	5	5	5	5	4	4	4	4	4	4	4	3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합 계	1,816	49	48	55	48	48	61	50	47	48	60	85	76	50	56	87	54	47	60	49	112	47	91	46	86	51	45	46	62	47	105	

주)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법인세비용 제외

[별표 9]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1. 세전기준

(단위 : 억원)

년 도	현금 유출				현금 유입				순현금흐름 (7)=⑥-③
	총사업비 ①	운영 비용 ②	현금 유출계 (③=①+②)	현재 가치	본사업 수입 ④	재정 지원금 ⑤	현금 유입계 (⑥=④+⑤)	현재가치	
합 계	5,199.61	1,815.85	7,015.46	3,452.36	11,186.99	1,379.88	12,566.87	3,452.36	5,551.41
2013년	187.52	-	187.52	129.86	-	-	-	-	-187.52
2014년	359.67	-	359.67	235.21	-	28.39	28.39	18.56	-331.28
2015년	1,302.11	-	1,302.11	804.13	-	324.49	324.49	200.39	-977.61
2016년	1,477.18	-	1,477.18	861.48	-	454.26	454.26	264.92	-1,022.91
2017년	906.37	-	906.37	499.17	-	290.57	290.57	160.03	-615.80
2018년	966.76	-	966.76	502.80	-	282.16	282.16	146.75	-684.60
2019년	-	48.86	48.86	24.00	330.97	-	330.97	162.55	282.11
2020년	-	48.29	48.29	22.40	345.60	-	345.60	160.29	297.31
2021년	-	54.63	54.63	23.93	360.22	-	360.22	157.77	305.59
2022년	-	47.75	47.75	19.75	361.58	-	361.58	149.56	313.84
2023년	-	47.94	47.94	18.72	362.95	-	362.95	141.77	315.01
2024년	-	61.46	61.46	22.67	364.31	-	364.31	134.38	302.86
2025년	-	50.01	50.01	17.42	365.68	-	365.68	127.38	315.66
2026년	-	47.11	47.11	15.50	367.04	-	367.04	120.73	319.93
2027년	-	47.87	47.87	14.87	368.28	-	368.28	114.40	320.41
2028년	-	59.83	59.83	17.55	369.52	-	369.52	108.40	309.69
2029년	-	85.49	85.49	23.68	370.76	-	370.76	102.71	285.27
2030년	-	76.48	76.48	20.01	372.00	-	372.00	97.31	295.52
2031년	-	49.78	49.78	12.30	373.25	-	373.25	92.21	323.46
2032년	-	55.52	55.52	12.95	374.98	-	374.98	87.48	319.46
2033년	-	86.64	86.64	19.09	376.71	-	376.71	82.99	290.06
2034년	-	53.90	53.90	11.21	378.44	-	378.44	78.73	324.54
2035년	-	46.82	46.82	9.20	380.17	-	380.17	74.69	333.35
2036년	-	59.70	59.70	11.08	381.89	-	381.89	70.85	322.19
2037년	-	49.38	49.38	8.65	381.89	-	381.89	66.91	332.51
2038년	-	111.63	111.63	18.47	381.89	-	381.89	63.19	270.26
2039년	-	47.39	47.39	7.40	381.89	-	381.89	59.67	334.50
2040년	-	90.94	90.94	13.42	381.89	-	381.89	56.35	290.95
2041년	-	46.44	46.44	6.47	381.89	-	381.89	53.21	335.44
2042년	-	86.11	86.11	11.33	381.89	-	381.89	50.25	295.78
2043년	-	51.40	51.40	6.39	381.89	-	381.89	47.45	330.49
2044년	-	45.41	45.41	5.33	381.89	-	381.89	44.81	336.48
2045년	-	45.56	45.56	5.05	381.89	-	381.89	42.32	336.33
2046년	-	61.74	61.74	6.46	381.89	-	381.89	39.96	320.15
2047년	-	47.03	47.03	4.65	381.89	-	381.89	37.74	334.86
2048년	-	104.74	104.74	9.78	381.89	-	381.89	35.64	277.14

주1)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주2) 현재가치는 세전실질수익률 5.89%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산정



## 2. 세후기준

(단위 : 억원)

년 도	현금 유출				현금 유입				순현금흐름 (⑦=⑥-③)
	총사업비 ①	운영 비용 ②	현금 유출계 (③=①+②)	현재 가치	본사업 수입 ④	재정 지원금 ⑤	현금 유입계 (⑥=④+⑤)	현재가치	
합 계	5,199.61	3,146.11	8,345.72	4,110.55	11,186.99	1,379.88	12,566.87	4,110.55	4,221.16
2013년	187.52	-	187.52	137.20	-	-	-	-	-187.52
2014년	359.67	-	359.67	250.64	-	28.39	28.39	19.78	-331.28
2015년	1,302.11	-	1,302.11	864.25	-	324.49	324.49	215.38	-977.61
2016년	1,477.18	-	1,477.18	933.85	-	454.26	454.26	287.18	-1,022.91
2017년	906.37	-	906.37	545.76	-	290.57	290.57	174.96	-615.80
2018년	966.76	-	966.76	554.45	-	282.16	282.16	161.83	-684.60
2019년	-	48.86	48.86	26.69	330.97	-	330.97	180.80	282.11
2020년	-	48.29	48.29	25.13	345.60	-	345.60	179.81	297.31
2021년	-	58.31	58.31	28.89	360.22	-	360.22	178.51	301.91
2022년	-	64.00	64.00	30.21	361.58	-	361.58	170.67	297.58
2023년	-	65.06	65.06	29.25	362.95	-	362.95	163.17	297.88
2024년	-	81.05	81.05	34.71	364.31	-	364.31	156.00	283.26
2025년	-	71.93	71.93	29.34	365.68	-	365.68	149.14	293.75
2026년	-	73.61	73.61	28.59	367.04	-	367.04	142.58	293.43
2027년	-	79.45	79.45	29.40	368.28	-	368.28	136.26	288.83
2028년	-	93.75	93.75	33.04	369.52	-	369.52	130.22	275.76
2029년	-	119.02	119.02	39.95	370.76	-	370.76	124.45	251.74
2030년	-	118.08	118.08	37.75	372.00	-	372.00	118.93	253.91
2031년	-	87.91	87.91	26.77	373.25	-	373.25	113.66	285.34
2032년	-	104.12	104.12	30.20	374.98	-	374.98	108.76	270.85
2033년	-	134.95	134.95	37.28	376.71	-	376.71	104.07	241.75
2034년	-	95.06	95.06	25.01	378.44	-	378.44	99.57	283.38
2035년	-	105.79	105.79	26.51	380.17	-	380.17	95.27	274.38
2036년	-	121.82	121.82	29.08	381.89	-	381.89	91.16	260.07
2037년	-	112.00	112.00	25.46	381.89	-	381.89	86.82	269.89
2038년	-	174.77	174.77	37.85	381.89	-	381.89	82.70	207.12
2039년	-	90.02	90.02	18.57	381.89	-	381.89	78.77	291.87
2040년	-	163.40	163.40	32.10	381.89	-	381.89	75.02	218.49
2041년	-	109.28	109.28	20.45	381.89	-	381.89	71.46	272.61
2042년	-	152.83	152.83	27.24	381.89	-	381.89	68.06	229.06
2043년	-	108.38	108.38	18.40	381.89	-	381.89	64.83	273.51
2044년	-	114.06	114.06	18.44	381.89	-	381.89	61.74	267.83
2045년	-	113.66	113.66	17.50	381.89	-	381.89	58.81	268.23
2046년	-	129.76	129.76	19.03	381.89	-	381.89	56.01	252.13
2047년	-	110.32	110.32	15.41	381.89	-	381.89	53.35	271.56
2048년	-	196.54	196.54	26.15	381.89	-	381.89	50.82	185.35

주1)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주2) 현재가치는 세후실질수익률 4.99%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산정

주3) 운영비용은 법인세 포함 금액임

## [별표 10] 해지시 지급금

### I.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 ①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기투입 민간투자자자금’ 라 함)

#### ②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민간투자자자금’ 이라 함)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 다만, 후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금의 미지급이자, 자본금, 미지급배당금은 해지시지급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상각비 = 민간투자자자금 × 상각율
- 상각율 = (1/무상사용기간) × (연도별 무상사용월수/12)
- 잔존가액 = 0

### II.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 ① 건설기간 중

- i) ‘기투입 민간투자자자금’ 과 ii) ‘경상사업수익률’ 을 ‘기투입 민간투자자자금’ 의 실제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경상사업수익률’ 이란 본 협약 제46조(사업수익률)에 정한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에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산정한 비율을 의미함

[경상사업수익률 산정 방식]

$$\{(1 + \text{사업수익률}) \times (1 + \text{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1$$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 (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 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이때, (2)호에 의하여 미래기대수익 산정 시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 수입」은 본 협약 제54조에 따른 서울시 환수금을 제외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민간투자자금’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

[주무관청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상각비 = 민간투자자금 × 상각율
- 상각율 = (1/무상사용기간) × (연도별 무상사용월수/12)
- 잔존가액 = 0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별표 9(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세전기준))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추정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left(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3}{6} \right) + \\
\left( \frac{\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2}{6} \right) + \\
\left( \frac{\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1}{6} \right) \\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통행료수입의 합}}{\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통행료수입의 합}}$$

### III.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 ① 건설기간 중

i)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과 ii) ‘표준차입이자율’ 을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표준차입이자율이란 국고채(5년 만기) 유통수익률의 연도별 평균값을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퍼센트(2%)를 합산한 이율을 의미함

####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 (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시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text{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1 - \text{잔여운영기간비율})\} + \\
\{(2)\text{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text{잔여운영기간비율}\}$$

1. ‘민간투자자금’ 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상각비 = 민간투자자금 × 상각율
- 상각율 = (1/무상사용기간) × (연도별 무상사용월수/12)
- 잔존가액 = 0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통행료 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별표 9(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세전 기준))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 이때 미래기대수익의 현가는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 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지 사유별로 본 협약 제 60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분담 비율을 적용함.

[추정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left(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3}{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2}{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1}{6} \right)$$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통행료수입의 합}}{\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통행료수입의 합}}$$

IV.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① 건설기간 중

- i)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와 ii) ‘표준차입이자율’ 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 이율에 의하여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 (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 (2호

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시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1 - 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잔여운영기간비율\}$$

1. ‘민간투자자금’ 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상각비 = 민간투자자금 × 상각율
- 상각율 = (1/무상사용기간) × (연도별 무상사용월수/12)
- 잔존가액 = 0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 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별표 9(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세전기준))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 이때 미래기대수익의 현가는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 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지 사유별로 본 협약 제 60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의 분담 비율을 적용함.

[추정통행료수입 대비 실제통행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left(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3}{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2}{6} \right) +$$

$$\left( \frac{\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통행료 수입}}{\text{해지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right) \times \left( \frac{1}{6} \right)$$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통행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frac{\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통행료수입의 합}}{\text{해지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통행료수입의 합}}$$

[별표 11] 운영 종료 후 인계목록

1. 운영설비

① 요금징수시스템 (단위:백만원)

구분	내용 연수	수 량	단 가	교체 율	교체 액	운영 22년차	운영 28년차	운영 30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 고
1. TCS설비						113	126			
차종분류장치	11	4	27	60%	66	66			운영33년차	
차종분류장치(경차분류)	11	4	12	60%	30	30			운영33년차	
네트워크장비(캐비넷포함)	11	2	4	60%	5	5			운영33년차	
차종및요금표시기	11	4	5	60%	12	12			운영33년차	
전자카드통합형 요금터미널	7	6	22	60%	78		78		운영35년차	
전자지불카드 안테나	7	6	8	60%	28		28		운영35년차	
영수증발행기	7	6	5	60%	19		19		운영35년차	
2. ETCS차로설비						211		28		
안테나	11	2	19	60%	23	23			운영33년차	
젠트리1	15	2	17	60%	21			21	운영45년차	
젠트리2	15	2	6	60%	7			7	운영45년차	
전광판(젠트리1상단)	11	2	15	60%	19	19			운영33년차	
차종분류장치	11	2	32	60%	39	39			운영33년차	
차장감지장치	11	2	15	60%	18	18			운영33년차	
운전자표시기	11	2	6	60%	7	7			운영33년차	
발진감지장치	11	2	24	60%	29	29			운영33년차	
통합차로제어기	11	2	31	60%	37	37			운영33년차	
안전바(차단기)	11	2	17	60%	20	20			운영33년차	
안전바-CCTV	11	2	2	60%	2	2			운영33년차	
안전바-인터폰	11	2	1	60%	1	1			운영33년차	
안전바-인터폰(모국)	11	1	2	60%	1	1			운영33년차	
안전바-녹화장치	11	1	5	60%	3	3			운영33년차	
안전바-차단발진(CD)	11	2	10	60%	12	12			운영33년차	
안전바-무선개폐스위치	11	2	0	60%	0	0			운영33년차	
안전바-유선개폐스위치	11	1	0	60%	0	0			운영33년차	



구분	내용 연수	수 량	단 가	교체 율	교체 액	운영 22년차	운영 28년차	운영 30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 고
3. 영업소설비								197		
	영업소서버	6	1	52	60%	31		31	운영36년차	
	운영단말기	6	1	2	60%	1		1	운영36년차	
	프린터	6	1	2	60%	1		1	운영36년차	
	네트워크설비	6	2	4	60%	5		5	운영36년차	
	RDBMS/UI REPORT TOOL	6	1	35	60%	21		21	운영36년차	
	중계시스템	6	2	37	60%	44		44	운영36년차	
	보안모듈	6	2	15	60%	18		18	운영36년차	
	방화벽	6	2	23	60%	28		28	운영36년차	
	라우터	6	2	3	60%	4		4	운영36년차	
	전자카드충전기	6	1	2	60%	1		1	운영36년차	
	충전영수증발행기	6	1	1	60%	0		0	운영36년차	
	연계서버	6	1	37	60%	22		22	운영36년차	
	VPN장비	6	1	10	60%	6		6	운영36년차	
	무정전전원장치 (UPS,15KVA)	6	1	23	60%	14		14	운영36년차	
4. 도주/과적촬영장치				60%		101		7		
	차로설비	11	8	21	60%	101	101		운영33년차	
	영업소설비	6	1	12	60%	7		7	운영36년차	
5. 부대설비				60%		69		61		
	부스(분전반/단자반부착)	11	6	18	60%	66	66		운영33년차	
	신호등	11	6	1	60%	3	3		운영33년차	
	충격완화설비(TCS용)	15	6	15	60%	54		54	운영45년차	
	요금표지판	15	6	2	60%	7		7	운영45년차	
합계						494	126	293		

주) 2007년 7월 기준단가이며 적용률 적용된 단가임, 각 설비별 세부 구성내역은 부속서류 참조

주) 운영설비 장비에 대하여 인계 시점에 생산되어지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

주) 운영기간중 전차로 ETCS전환시 추가되는 ETCS차로 설비 일체 인계

② 교통관리시스템

구분	내용 연수	수 량	단 가	교 체 율	교 체 액	운영 22년차	운영 30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 고
1. 현장설비						1,798			
	도로전광표지	11	6	108	60%	387	387	운영33년차	
	VDS	11	32	12	60%	235	235	운영33년차	
	CCTV(토공구간)	11	2	33	60%	39	39	운영33년차	
	CCTV(터널구간)	11	45	15	60%	400	400	운영33년차	
	비상전화	11	88	5	60%	255	255	운영33년차	
	LCS(편도2차로)	11	43	11	60%	273	273	운영33년차	
	QWS	11	5	32	60%	96	96	운영33년차	
	터널진입차단	11	2	94	60%	113	113	운영33년차	
2. 센터설비				60%			540		
	주전산서버외	6	1	350	60%	210		210	운영36년차
	DLP Cube	6	6	32	60%	116		116	운영36년차
	Wall Controller	6	1	24	60%	14		14	운영36년차
	CCTV전용모니터	6	18	1	60%	7		7	운영36년차
	VIDEO Matrix	6	1	28	60%	17		17	운영36년차
	RGB Matrix	6	1	9	60%	5		5	운영36년차
	SDU	6	2	3	60%	3		3	운영36년차
	VDA	6	8	0	60%	2		2	운영36년차
	DVR	6	4	5	60%	13		13	운영36년차
	19" RACK	6	3	1	60%	2		2	운영36년차
	문자발생기	6	3	11	60%	20		20	운영36년차
	센터네트워크시스템	6	1	219	60%	131		131	운영36년차
3. 영상유고감지장비				60%			399		
	영상유고감지장비	6	1	664	60%	399		399	운영36년차
4. 광통신설비				60%		404			
	전송장비	11	1	674	60%	404		404	운영33년차
합계						2,202	939		

주) 2007년 7월 기준단가이며 적용률 적용된 단가임, 각 설비별 세부 구성내역은 부속서류 참조

주) 운영설비 장비에 대하여 인계 시점에 생산되어지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

③ 유지관리 차량 및 장비 (단위:백만원)

구 분	내용 연수	수 량	단가	교체율	교체액	운영 22년차	운영 30년차	차기 교체시기	비 1고
1.차량운반구						1,070	104		
도로순찰차	6	3	24	100%	73		73	운영 36년차	
유지보수차량	6	1	31	100%	31		31	운영 36년차	
도로청소차	11	1	130	100%	130	130		운영 33년차	
터널청소차	11	1	197	100%	197	197		운영 33년차	
부착식차량용전광판	11	5	1	100%	4	4		운영 33년차	
소형소방자동차	11	5	148	100%	738	738		운영 33년차	
2.장비 및 공구							154		
점검장비	10	1	116	100%	116		116	운영 40년차	
공구류	10	1	27	100%	27		27	운영 40년차	
응급의료장비	10	1	6	100%	6		6	운영 40년차	
소방안전장비	10	1	5	100%	5		5	운영 40년차	
합 계						1,070	258		

주) 2007년 7월 기준단가이며 적용률 적용된 단가임, 각 설비별 세부 구성내역은 부속서류 참조

주) 운영설비 장비에 대하여 인계 시점에 생산되어지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

2. 집기비품

운영 종료 및 인계 시점에 사업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일체

## [별표 12] 재무모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전자파일을 CD-ROM으로 별첨함.